

방송통신위원회 2008 연차보고서



발 간 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서 방송과 통신, 그리고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융합’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방송과 통신의 정책적 융합과 더불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의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데 힘써 왔습니다. IPTV 법제화를 마무리 짓고 IPTV 상용화 시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화와 결합 상품 같은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는 국민 부담을 많이 덜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쳐 IT 강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향후 10년 간 세계 인터넷 경제를 이끌어 갈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정책목표를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 통신 강국 구현’에 두고 ‘글로벌 방송통신 중심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산업을 혁신하고 통신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목표와 성과를 정리해 연차보고서로 펴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Contents

목 차

I.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II. 방송통신 정책 환경

- | | |
|---------------------------------------|----|
|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 13 |
| 2. 방송의 산업·경제적 역할 대두 | 15 |
| 3. 시장 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증대 | 17 |
| 4. 방송통신 환경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위협 증가 | 18 |

III. 2008년도 정책 목표 및 주요 성과

- | | |
|---|----|
| 제 1 절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 24 |
| 1.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제도적 기반 조성 | 24 |
| 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 24 |
| 나.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 마련 | 25 |
| 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체계 구축 | 26 |
| 라. 방송통신 부문 연구개발(R&D) 추진체계 재정립 | 27 |
| 2.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 29 |
| 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 활성화.... | 29 |
| 나.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 32 |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34
가. 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34
나.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35
4.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38
가. 2008 OECD IT 장관회의 개최	38
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40
다.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47
제 2 절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	51
1.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51
가. 방송시장 소유·경영규제 개선	51
나. DMB 활성화	55
다.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58
2.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59
가. 공익채널 설정 및 관리	59
나.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61
3. 방송의 다양성 확대	62
가. 신규 영어 FM 방송 도입	62
나.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65
4.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67
가.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경쟁체제 도입	67
나. 방송심의 제도 개선	69
5. 방송 품질 제고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70
가. 방송편성 의무비율 준수여부 감독	70
나. 효과적인 방송평가제 운영	71
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시행	72

제 3 절 이용자 편의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74

1.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74	74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시행 74	74
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추진 78	78
2.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80	80
가.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 추진 80	80
나.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추진 83	83
다.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84	84
라.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접속료 산정 86	86
3.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87	87
가. 휴대인터넷(WiBro) 87	87
나. 3G 서비스 89	89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91	91
가. 전파자원의 이용 활성화 91	91
나. 주파수 공급 확대 93	93
다.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95	95
라. 전파이용 기술 연구 및 개발 96	96
5.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97	97
가.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97	97
나. 무선국 운영 규제 완화 99	99
다.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의 개선 100	100

제 4 절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 102

1. 인터넷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102	102
가. 인터넷 침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 제고 102	102
나.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108	108
다.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113	113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115
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115
나. 인터넷 이용 활성화 지원.....	119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121
가.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	121
나.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125
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128
라.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	133
4.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136
가.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136
나.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	139
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녹색 방송통신 추진.....	142

IV. 향후 과제

1. 신성장 동력인 미디어 서비스 육성.....	147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투자 촉진.....	150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제고.....	153
4.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확대.....	156

부 록

1.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	161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164
3.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현황.....	165
4. 방송 및 통신 관련 주요 통계.....	166
5. 2008년도 규제개혁 과제 및 정부입법 추진 현황.....	172
6. 2008년도 회계 결산.....	174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176
8.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186
9.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행사.....	192

Contents

표 목 차

〈표 I - 1〉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9
〈표 I - 2〉 주요 유관 기관별 기능	10
〈표 II - 1〉 주요국의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기관 유형	14
〈표 II - 2〉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16
〈표 III - 1〉 분야별 상정처리 내역	25
〈표 III - 2〉 2009년 방송통신 연구개발 예산(안)	28
〈표 III - 3〉 2008년 공공·민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내역	31
〈표 III - 4〉 전 세계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전망(2006~2012)	32
〈표 III - 5〉 주요 해외국가와의 보급률 및 인지율 비교(2008)	35
〈표 III - 6〉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 명단	36
〈표 III - 7〉 2008년 로드쇼 개최 현황	41
〈표 III - 8〉 2008년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 현황	41
〈표 III - 9〉 2008년 해외 견본시장 참가 및 TV 쇼케이스 개최현황	42
〈표 III - 10〉 방송통신 통상포럼 추진 결과	44
〈표 III - 11〉 국가별 방송통신 정보 세부 내용	45
〈표 III - 12〉 북경 방송통신 홍보·체험관 현황	47
〈표 III - 13〉 연도별 개최 현황	49
〈표 III - 14〉 2008년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요	50
〈표 III - 15〉 신문 및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51
〈표 III - 16〉 방송법상 매체별 소유제한 규정 현황	52
〈표 III - 17〉 신문법의 소유제한 규정	52
〈표 III - 18〉 방송법상 매체별 경영규제 규정 현황	53

〈표 III-19〉 방송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 관련 개정안	53
〈표 III-20〉 방송법 시행령 SO 겸영 관련 개정안	54
〈표 III-21〉 현행 및 개정안 비교	55
〈표 III-22〉 지상파 DMB·위성 DMB 현황	56
〈표 III-23〉 DMB 사업자 손익 현황	56
〈표 III-24〉 DMB 정책연구반 회차별 안건 및 주요 논의사항	57
〈표 III-25〉 위성 DMB의 채널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	58
〈표 III-26〉 공익성 방송 부문 변천 과정	59
〈표 III-27〉 2009년도 공익성 방송 분야	60
〈표 III-28〉 2009년도 부문별 공익채널 선정 결과	60
〈표 III-29〉 5개 홈쇼핑사에 대한 (舊)방송위원회의 권고사항	61
〈표 III-30〉 중소기업 기준 변경 사항	62
〈표 III-31〉 신규 영어 FM 방송 도입 현황	64
〈표 III-32〉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 추이	65
〈표 III-33〉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의 직무	65
〈표 III-34〉 지역방송 대표단체	66
〈표 III-35〉 해외 미디어렙 현황	68
〈표 III-36〉 방송광고 자율심의 현황	70
〈표 III-37〉 과태료 및 시정명령 세부 내역	71
〈표 III-38〉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방법 및 내용	71
〈표 III-39〉 매체에 따른 방송평가 영역별 배점	72
〈표 III-40〉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구분	72
〈표 III-41〉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 명단	73
〈표 III-42〉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효과	76
〈표 III-43〉 상호접속료 개정 주요내용	87
〈표 III-44〉 Mobile WiMAX와 WiBro 비교	88
〈표 III-45〉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	94

〈표 III-46〉 EMC 기술지원 관련 성과	97
〈표 III-47〉 OECD 주요 국가별 주파수 경매제 도입현황	98
〈표 III-48〉 해킹·바이러스 신고 현황	103
〈표 III-49〉 위기경보 수준	104
〈표 III-50〉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	105
〈표 III-51〉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BcN 포함)	116
〈표 III-52〉 연도별 BcN 보급 목표	117
〈표 III-53〉 3단계 BcN 시범사업 1차년도(2008년) 컨소시엄 구성 현황	118
〈표 III-54〉 국내 4대 포털사의 일평균 방문자수	119
〈표 III-55〉 2008년도 이용자 피해 예방 추진 현황	122
〈표 III-56〉 5대 통신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개선내용	123
〈표 III-57〉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기술적 평가 종합 결과	124
〈표 III-58〉 2008년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 추진 실적	127
〈표 III-59〉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과징금) 현황	128
〈표 III-60〉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	129
〈표 III-61〉 재정사건 평균 처리일수 현황	130
〈표 III-62〉 재정사건 처리건수 현황	130
〈표 III-63〉 2008년 방송분쟁 조정 현황	131
〈표 III-64〉 방송통신 시장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135
〈표 III-65〉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현황	136
〈표 III-66〉 연도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 현황	137
〈표 III-67〉 방송 소외계층 지원 현황(2008년 기준)	140
〈표 III-68〉 2008년도 방송 소외계층 및 미디어 교육 지원 현황	141
〈표 III-69〉 2008년도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 성과	142
〈표 III-70〉 방송통신 분야 전력 소비량 현황(2005~2007)	143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I - 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7
(그림 II - 1)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변화	13
(그림 III - 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	23
(그림 III - 2) 방송통신 콘텐츠 종합적 진흥계획	33
(그림 III - 3)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74
(그림 III - 4) 망보유 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간 판매방식 비교	81
(그림 III - 5)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개정	86
(그림 III - 6) 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 확보 방안	93
(그림 III - 7) 우리나라 TV 방송 주파수 대역 이용계획	93
(그림 III - 8)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 개선방안	101
(그림 III - 9)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103
(그림 III - 10) 개인정보 상담·신고 접수 현황	109
(그림 III - 11)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변화 추이	109
(그림 III - 12) 구글(Google)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점검 실적	111
(그림 III - 13)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114
(그림 III - 14) 국내 4대 포털사의 매출 추이	120
(그림 III - 15) 방송통신 민원 통합처리 시스템	132
(그림 III - 16) 통신 분야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144
(그림 III - 17) 방송 분야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144



I.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I.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현황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라 방송, 통신 및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급진전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입하고 CATV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규제기구와 규제틀(Framework)의 타당성이 약화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원화된 과거의 정부조직체계는 결과적으로 정책갈등 및 중복규제 등을 초래하여 방송통신 서비스의 발전 등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 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7년 1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에 국회는 2007년 1월 방송통신구조개편특별위원회(방통특위)를 구성하여 방송통신 기구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8년 1월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정부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식(2008. 3. 26)

법안을 일부 수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며 동 법안은 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이 갖는 의미는 첫째, 방송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 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둘째,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셋째,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송, 통신 및 융합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에 대한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 독립기구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객관성과 정당성을 보다 공고히 담보 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국민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개혁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는 물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품격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상임위

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¹⁾,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제기구의 특성에 맞춰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취임식(2008. 3. 26)

1.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 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 3인의 상임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2인은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10.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윤용·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 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률은 15개로서 다음과 같다(소관 법률의 세부 내용은 <부록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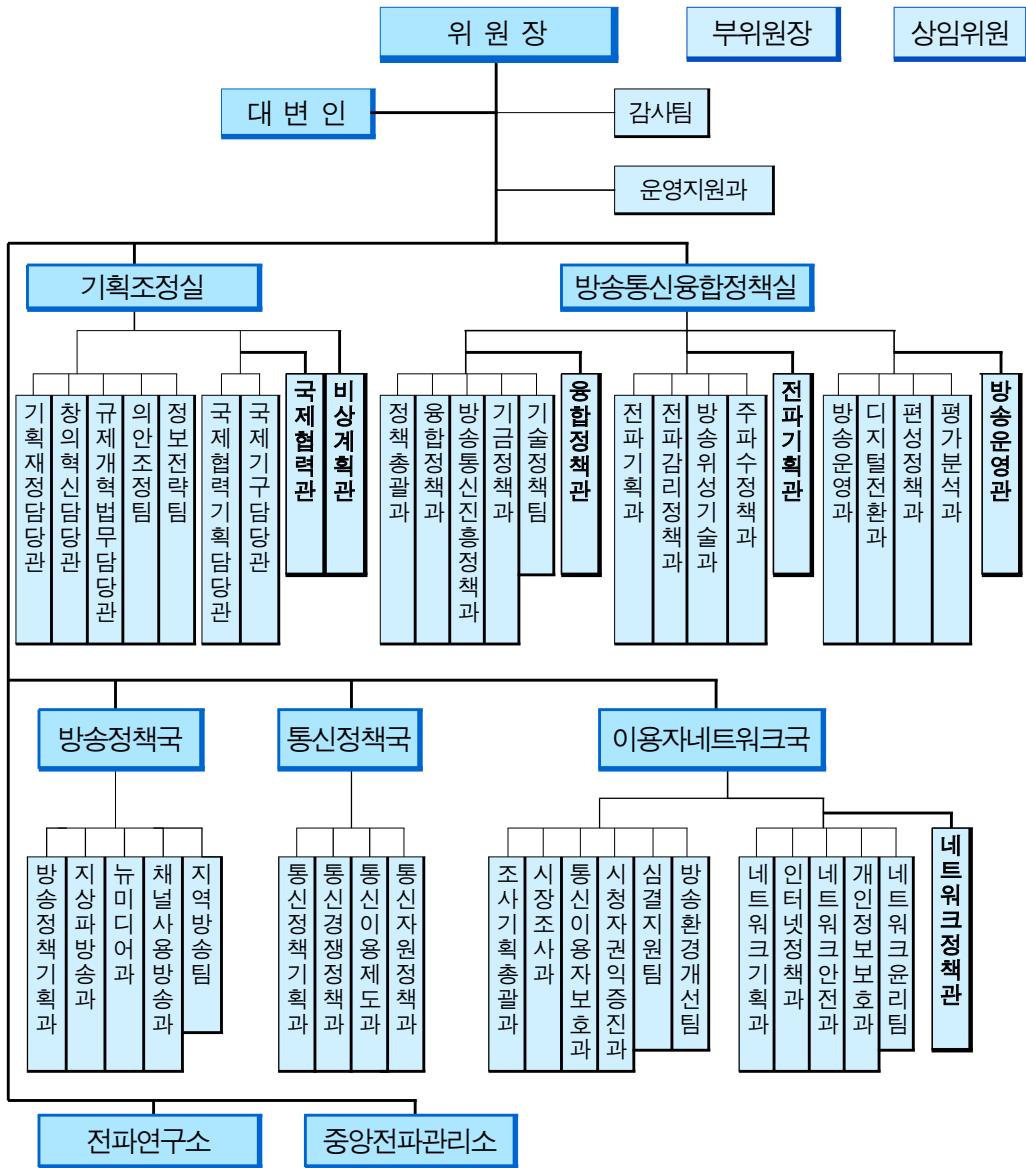
- 융합분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 방송분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 통신분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 전파분야: 전파법 1개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은 2실 3국 7관 34과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조직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부서별 업무 분장의 세부 내용은 〈부록 1〉 참조).

- (1) 기획조정실: 정책 및 예산·결산의 종합·조정, 대국회 업무, 조직 관리, 규제 개혁·법무, 정보화, 비상계획,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통상 대응
- (2)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 융합 정책, 융합 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주파수 관리, 무선국 허가·검사 정책, 전파 감시,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송 편성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
- (3) 방송정책국: 방송정책 수립 및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지상파·유선·채널 사용 방송 관련 인·허가, 지역방송 균형발전 지원
- (4) 통신정책국: 통신정책 수립 및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통신사업자 인·허가, 이동 전화 이용제도
- (5) 이용자네트워크국: 광대역통합망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방송통신망 안전성 제고,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37억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743억원, 기금 2,394억원이며,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2,61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24억원이다. 또한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839억원, 기본경비 237억 원, 주요 사업비 3,446억원 및 보전지출 615억원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역은 〈표 I-1〉과 같다.

또한 2009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36억원으로 2008년에 비하여 13.6%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일반회계 2,912억원, 혁신도시특별회계 11억원, 기금 2,913억원으로서 기금 부문이 2008년 대비 21.7% 증액되었다.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2,85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83억원이며, 기능별로는 인건비 896억원, 기본경비 167억원, 주요사업비 3,513억 원, 내부거래 300억원, 보전지출 960억원으로서 내부거래가 300억원 순증되었다.

〈표 I-1〉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08	'09	증 감	증감률
총계 <예산 + 기금>		5,137	5,836	699	13.6%
재원별	□ 예산	2,743	2,923	180	6.6%
	○ 일반회계	2,743	2,912	169	6.2%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1	11	순증
	□ 기금	2,394	2,913	519	21.7%
	○ 방송발전기금	2,394	2,913	519	21.7%
	※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방통위 소관	(2,512)	(2,809)	(297)	(11.8%)
분야별	□ 통신분야	2,613	2,853	240	9.2%
	□ 문화 및 관광분야	2,524	2,983	459	18.2%
기능별	□ 인건비	839	896	57	6.8%
	□ 기본경비	237	167	△70	△29.5%
	□ 주요사업비	3,446	3,513	67	1.9%
	○ 방송통신 융합 촉진과 디지털 전환	635	949	314	49.4%
	○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	976	882	△94	△9.6%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	600	589	△11	△1.8%
	○ 이용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248	243	△5	△2%
	○ 전파방송산업 여건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774	595	△179	△23.1%
	○ 기타 행정 지원	213	255	42	19.7%
	□ 내부거래(회계간·기금간 전출금 등)	—	300	300	순증
	□ 보전지출(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	615	960	345	56.1%

주: 타 부처 소관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사업 내역

— 정보통신진흥기금(지식경제부 소관): 2008년 2,512억원 → 2009년 2,809억원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유관 기관과 주요 유관 기관별 기능은 〈표 I-2〉와 같다(유관 기관 현황 및 기능은 〈부록 3〉 참조).

〈표 I-2〉 주요 유관 기관별 기능

기관명	대표자	주요기능
한국방송공사	이병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수행 등
한국교육방송공사	구관서	교육·지식·정보·문화·교양 분야 방송 콘텐츠 제공 및 교육 방송에 관한 연구개발 등
방송문화진흥회	이옥경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황중연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 확립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제도·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승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등
한국전파진흥원	정진우	전파의 효율적 관리, 전파이용 활성화 등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공석	정보통신 국제협력 활동 및 해외진출 지원



II.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2. 방송의 산업·경제적 역할 대두
3. 시장 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증대
4. 방송통신 환경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위협 증가

II. 방송통신 정책 환경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기술의 발전, 전송망 고도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디지털 광대역망을 통하여 방송 및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그림 II-1]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변화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산업 영역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융합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 각각 ‘콘텐츠⇒서비스⇒네트워크’의 가치사슬이 존재했으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가치사슬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이원화된 규제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맞추어 정책 및 규제기관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주요국의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기관 유형

유형별 분류		국가	구분	정책기관	규제기관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 통합 여부	방송기능 및 통신기능 통합 여부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기관: 분리 규제기관: 통합 	영국	방송	문화미디어체육부	Ofcom (BBC: BBC 경영위원회(Trust))
			통신	통신사업부	
		캐나다	방송	문화부	CRTC
			통신	산업부	
	분리	프랑스	방송	문화통신부	CSA
			통신	경제재정산업부	ARCEP
		독일	방송	주 수상회의	공영방송: 방송평의회 민영방송: 주 미디어 관리청
			통신	연방경제노동성	연방통신우정청
	통합	이탈리아	방송	정보통신부	통신규제청
			통신		
		호주	방송	통신정보기술	통신방송청
			통신	문화부	
통합	통합	미국	방송	연방통신위원회	
			통신		
		일본	방송	총무성	
			통신		

출처: 김성태 외(2006),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연구” 재정리

또한,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와 방송 관련 시장의 확대,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등장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 규제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수평적 규제체계의 확립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고 CATV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는 등 방송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위성 DMB 및 지상파 DMB의 상용화, 그리고 2006년 TV 포털을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와 UCC (User Created Contents)로 대표되는 콘텐츠 등의 출현으로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기술

과 서비스 그리고 규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대응은 규제기관, 규제대상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규제기관 측면에서는 2008년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이원화된 규제기관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또한 규제대상 측면에 있어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기기산업의 상호 연계성이 점차 증대되는 것에 비하여 규제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 정부 부처 간 영역구분에 따른 마찰과 사업자들의 행정절차 중복에 따른 불편함 증대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 경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가치사슬이 더욱 복잡·다양해지면서 시장 지배력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 방송의 산업·경제적 역할 대두

방송은 우리에게 공공의 서비스로만 인식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관점과 의미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희소한 전파자원을 이용하여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이 특정한 사익에 지배되지 않고 일반적 사회이익 내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즉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기 시작되면서 공익성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측면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자가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방송과 통신은 디지털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한 신규서비스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같은 무료서비스와 경쟁하는 매체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환경이 조성된 것 또한 이제는 더 이상 공익적인 관점에서만 방송시장을 바라볼 수 없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표 II-2〉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가입자(단자수 기준)		
	2006. 12	2007. 12	2008. 6
종합유선방송	14,067,681	14,533,965	14,749,097
중계유선방송	172,877	200,220	202,418
일반위성방송	1,949,191	2,151,882	2,260,071
유료방송 전체	16,189,749	16,886,067	17,211,586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08. 12), 20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이러한 디지털화와 다채널화, 다매체화로 인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는 더 이상 방송과 통신을 이분법적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하거나 경쟁적 시장 환경을 외면한 공익적인 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방송 전체를 공익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유료방송의 존재를 외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도입,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경쟁 촉진 등이 새로운 방송정책 및 규제의 아젠다로서 등장하고 있다. 즉 공익개념과 시장경쟁 개념이 조화되는 방송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융합환경에 부응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새로운 법제도적인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방송과 통신 모두 이제는 각각의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어우러져 함께 존재하며 때로는 경쟁 속에서 발전적인 형태로 거듭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화, 방송통신의 융합은 방송서비스와 콘텐츠의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생산자를 양산하였다. 수십 개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의 등장은 다양한 콘텐츠 공급자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방송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초창기 국영방송으로 시작한 한국방송공사의 단독 방송체제에서 민영방송이 허가되었고 방송기술의 발달로 인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등장,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DMB와 IPTV의 등장은 방송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급격한 증가는 방송이 단순한 공공서비스 역할을 넘어 수많은 경제주체들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산업군으로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방송산업 사업자 수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44개, 유선방송 사업자 218개, 위성방송 사업자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8개, 전광판방송 사업자 34개 등 과거에 비해 엄청난 양적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수는 2만 9천여명이며 방송시장 규모는 10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향후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 시장 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증대

시장 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 자율의 경쟁유인을 제고하되, 경쟁력 있는 후발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요금 인하,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는 개별 통신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후발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시장집중은 완화되었으나 사업자간 적극적 요금경쟁이 둔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인터넷 전화 확산으로 시장간 경계가 무너지고 결합판매와 M&A 등으로 이종 영역 간 교차진입이 확산되고 있다. 개별 서비스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결합서비스나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배적 사업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상호진입과 결합판매 및 요금경쟁

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으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완화, 인가 대상 이용요금 인하시 신고제 적용 등은 이러한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들이 이러한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여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사후규제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율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전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히려 사후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규제 완화 및 방송통신 융합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금지행위)의 유형을 보완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통신시장에서의 시장 친화적 경쟁 활성화 정책과는 달리, 방송시장은 지금까지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시장에 경쟁 요소의 도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 역시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방송의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 안전장치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4. 방송통신 환경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위협 증가

최근 방송통신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나고 관련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통신 이용환경의 조성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이용환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 위험에 대응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함께 시청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송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조치들이 취해진 배경에는 우선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해킹사고는 총 15,940건으로 2007년의 21,732건에 비해 26.7% 감소하였으나 웹·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총 8,469건으로 2007년의 5,996건에 비해 4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사고의 내용에 있어서도 악성코드 유포, 웹 해킹 및 무선 랜 해킹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금전적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분산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코드의 신·변종 출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DDoS 공격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침해사고에 대한 국가 간 대응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경제적 이익 취득을 위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오·남용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상담과 신고 접수 건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고의 특징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고의 원인이 관리 소홀이나 내부자의 고의적 행위 등과 같은 관리적인 형태에서 해킹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포털, P2P(Peer to Peer)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육설과 비방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음란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포털 등의 관리의무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 스팸은 타 매체와 비교하면 즉시성이 강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스파머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법률

의 예외조항을 악용하거나 명의 도용, 발신번호 위·변조 및 회신번호 차신 전환 등은 밀하고 교묘한 발송기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인터넷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이용 활성화 측면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부터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러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다 전송속도가 50배 이상 빠른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IPTV와 인터넷 영상전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고도화 노력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낳았으나, BcN 서비스의 사업기간, 이종망간 상호운용성과 같은 통합 측면, 속도·해상도 등의 품질 측면 그리고 농어촌 등 낙후 지역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향후 방송통신과 유무선 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와 신규 융합서비스 출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터넷의 이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3,500만명(6세이상 기준 77%)으로 네덜란드(91%)와 노르웨이(83%)에 이어 세계 5위의 수준(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기준, 도시국가 제외)에 있으며,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하루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터넷 주소와 관련해서는, 2008년 9월 말 현재 국제 인터넷 주소할당 기구(ICANN)로부터 6,611만개의 인터넷주소를 확보하여 이중에서 74.1%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주소 자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는 2013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III. 2008년도 정책 목표 및 주요 성과

제1절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1.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제도적 기반 조성
2.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4.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제2절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

1.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2.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3. 방송의 다양성 확대
4.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5. 방송 품질 제고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3절 이용자 편의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1.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3.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5.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제4절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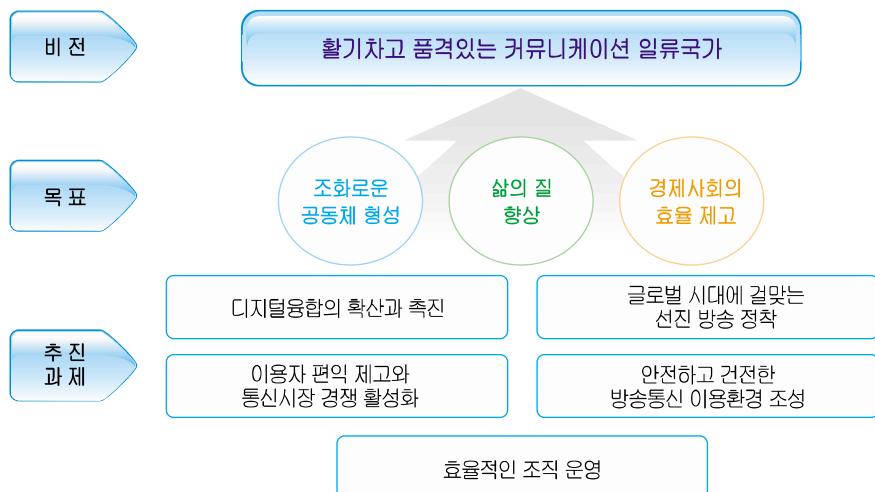
1. 인터넷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4.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III. 2008년도 정책 목표 및 주요 성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을 통하여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 이용자 편의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 5가지의 우선적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III-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



제1절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1.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제도적 기반 조성

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 방송통신 융합 환경의 도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등 미디어 가치사슬의 전 부문에서 융합이 급진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있던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방송과 통신부문을 아우르는 융합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규제틀과 정부조직 구조로는 방송통신 서비스 산업의 진흥, 이용자 편의 증대 등 융합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더욱이, 방송과 통신시장의 포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통합기구 및 통합된 규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통신산업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 시장포화에 따라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 확대, 서비스의 품질 및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시장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방송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위성방송, 위성 DMB 등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등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이러한 배경에서 방송과 통신의 기구 통합에 관한 논의는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어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거쳐 2007년 국회 특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2008년 2월 26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3월 26일에는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송도균 부위원장과 이경자, 이병기, 형태근 상임위원이 임명되어 방송통신위

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56차례(2008년 48차례, 2009년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326건의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사안별 사전검토를 전담하고, 그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표 III-1〉 분야별 상정처리 내역

(단위: 건)

구 분	융합/공통	방송	전파/통신	소 계
의결안건	36	153	93	282
보고안건	12	15	17	44
합계(비율)	48(14.7%)	168(51.5%)	110(33.8%)	326(100%)

나.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 마련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준의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관련 법체계는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전기통신으로,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다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나타나는 서비스들을 서로 다른 법으로 규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과 통신 관련 법체계는 관련 부처 업무의 혼선과 함께, 이해 상충에 따른 부처 간 마찰의 소지도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이 조문별로 담당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물론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처 간에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비효율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첫해에 방송과 통신의 통합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방송과 통신 부문의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되,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 기본계획,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8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안)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술기준,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8장 48조와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체계 구축

현재 방송통신 부문의 기금은 재원과 용도가 분리되어 있어 방송과 통신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방송통신 부문의 재원이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분리되어 그 용도가 각각 방송과 정보통신으로 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의 통합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송통신의 재정을 통합할 필요성은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사업 부문에서 조성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통신 관련 제조업 중심의 상용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프라 구축, 디지털방송 전환,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 보상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방송발전기금의 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하였다. 즉 2008년도에 방송콘텐츠 활성화, 시청자복지 증진, 방송기반 강화, 방송교류협력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었던 체계를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 방송진흥 기반 구축, 방송인프라 개선,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촉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주파수 활용 여건 조성 및 방송통신의 해외진출에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에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 운용)과 정보통신진흥기금(지식경제부 운용)에 각각 배분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크게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사업,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사업,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사업,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 방송통신 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출현 가능한 신규 융합 서비스의 적기 도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지원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 콘텐츠-서비스-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선순환 매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지원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부문의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 부문의 공공성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재정 지원체계와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의 정수체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 방송통신 부문 연구개발(R&D) 추진체계 재정립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방송통신 연구개발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과 지식경제부의 IT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로 분리되어 추진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정책이 서비스의 도입, 상용화 및 산업화 단계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추진·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IT 부문이 새로이 도약하고 발전할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IT 생태계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기기(HW)는 물론 인프라(Network)의 동반발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IT 생태계 전반에 걸친 발전을 촉발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융합 인프라, 차세대 이동통신, 전파·위성 등 방송통신 부문의 핵심적인 원천·요소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부문은 성과 위주의 상용화와 관련된 제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치중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부문에서는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I-2〉 2009년 방송통신 연구개발 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액
○ 정보통신산업 원천기술 개발	1,931	1,838	△93
－ 전파·방송위성 등 기술 개발	380	247	△133
－ 이동통신·BcN·방송 등 기술 개발	(1,551)	(1,591)	(40)
○ 정보통신산업 진흥	229	654	425
－ 표준 개발 지원 등	105 (79)	540 (233)	435 (154)
－ 표준화 활동 지원	124	114	△10
○ 방송통신 진흥 기반 조성	352	317	△35
－ 공공서비스 활성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 정책연구 등	247	228	△19
－ 전파자원 개발 및 관리	52	27	△25
－ 방송통신 기술인력 양성	53	62	9
합 계	2,512 (1,630)	2,809 (1,824)	297 (194)

주: ()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공동사업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파와 위성 그리고 방송 등과 관련된 고유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으로 추진하되, 서비스와 관련 기기 간의 연계 부문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발굴·활성화 등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기획, 관리, 평가 및 연구개발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발전 추세를 전망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기술 수요를 발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 자문회의’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방송통신 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방송통신 중장기 연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부문별 연구개발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장기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 활성화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양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이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2007년 12월말 IPTV의 도입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9일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협회, 단체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08년 8월 12일에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2008년 8월 26일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

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 기준'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31일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동 법에 따라 IPTV 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08년 8월 26일부터 언제든지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등록·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IPTV 제공 사업자는 8월 28일과 8월 29일 양일간 최초 허가신청이 이루어지고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 IPTV 상용서비스 출범식(2008. 12. 12)

이에 따라 오픈아이피티브이,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KT 등 4개 허가신청법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동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9월 8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신규 허가 대상법인으로서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 그리고, KT 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의무전송 채널²⁾을 중심으로 시험서비스와 품질점검을 거

2) 의무전송 채널: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보도전문 채널(YTN, MBN), 공공 채널(KTV, NATV, OUN), 종교채널

처 KT는 2008년 11월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은 2009년 1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한편, IPTV 상용서비스의 출범에 맞추어 정부와 민간의 교량 역할을 할 한국디지털 미디어산업협회가 2008년 10월에 설립되었고, 2008년 12월 12일에는 “Power on IPTV, Power up Korea”를 슬로건으로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제공사업자의 상용서비스 개시와 병행하여 IPTV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교육, 공공정보, 민원처리 등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2008년 7월 31일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하여 방송통신 융합 공공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KT 컨소시엄과 LG데이콤 컨소시엄 및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총 30억원의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IPTV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3〉 2008년 공공·민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내역

구 분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KT 컨소시엄	○ 국가기록원의 다시 보는 대한뉴스 서비스 ○ 강원도청의 그린마켓, 도정안내, 민원안내 등 ○ 대전 시립합창단의 멀티앵글 오페스트라 서비스	전국민 지자체 주민 전국민
LG데이콤 컨소시엄	○ 대구시청,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 지자체의 민원안내, 공지사항 등	지자체 주민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	○ 서울/경기/충북/충남 지방교육청의 공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제공	지방 교육청 학생/교원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맞춤형 IPTV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인터넷 망을 50Mbps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저소득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교육서비스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 학교에 IPTV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IPTV 공부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PTV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도록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무선 환경의 개방형 IPTV 기술 개발과 IPTV 융합서비스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IPTV 플랫폼 개발 등 기술 개발과 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 광대역 서비스 보편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장과 압축·저장·전송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방송통신 네트워크가 고도화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콘텐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주문형, 쌍방형 콘텐츠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됨은 물론, 콘텐츠의 제작 등을 통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수단으로서 방송통신에 대한 수요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PTV, 디지털 TV 등 세계 주요 방송통신의 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13.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표 III-4〉 전 세계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전망(2006~2012)

(단위: 백만불)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성장률
전 체	115,925	131,620	149,575	172,773	195,272	221,552	246,776	13.4%
DTV	66,325	76,100	86,418	99,091	109,400	122,006	133,997	12.0%
IPTV	2,113	3,495	6,096	11,354	17,375	24,611	31,396	55.1%
DVD	41,692	45,191	48,749	52,648	57,449	62,519	67,599	8.4%
애니메이션	5,795	6,834	8,312	9,680	11,048	12,416	13,784	15.1%

출처: PWC(2007), MRG(2007), Screen Digest(2007), Digital Vector(2007), KIPA(2007)

우리나라의 경우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활용에 이르는 방송통신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에 있어 선순환적 발전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우선 콘텐츠 제작 부문이 영세함으로 인해 투자유인이 크지 않은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함께 유통·인력·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또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콘텐츠 부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지상파, 케이블, 위성, 독립제작사 등 방송 콘텐츠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사업에 139억원, 프로그램 제작비 용자사업에 5억원, 협업 방송인과 방송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연수교육 및 대학 실습장비 지원에 16억원,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활성화 및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 정체성 제고를 위한 외국 소재 한국어 방송사 지원사업에 20억원, 그리고 콘텐츠 관련 국제교류 행사에 25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방송 콘텐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방송 콘텐츠 진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 콘텐츠의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요약하면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방송통신 콘텐츠 종합적 진흥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제작사가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방송 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웹서버와 저장장치, 콘텐츠 검색·조회·열람 시스템, 스트리밍 기능 등이 포함된 기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5년간 15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방송 콘텐츠 유통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비즈니스, 인력 양성 등 서비스 전반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방송 콘텐츠 클러스터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구축하여 HD급 고품질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은 물론 수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제공될 수 없는 공공·공익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13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36억원이 증액된 1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방송통신 콘텐츠의 시장 동향, 인력수요 전망을 기초로 종합적인 방송통신 콘텐츠 인력양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방송통신 콘텐츠의 진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가. 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송신 등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만 방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융합 환경하에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고화질 및 고음질 등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의 복지가 향상되고 방송기기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방송 강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국가적인 중요 과제로 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나라도 2001년 10월 수도권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개시한 이후 2006년 7월부터 전국방송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디지털 TV 수신기기 보급률은 38.7%,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34.9%로서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표 III-5〉 주요 해외국가와의 보급률 및 인지율 비교(2008)

(단위: %)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디지털 TV 수신기기 보급률	38.7	43.7	87.9	—
디지털전환 인지율	34.9	92.2	89.0	92.0

나.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이에 따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모아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라 함)에 따라 2008년 7월,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은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시행령 제4조),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5조~제10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시행령 제11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DTV-Korea와 공동으로 TV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 4개사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의 비전 및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8월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하여 디지털 전환 안내책자와 팜플렛을 각각 40만부씩 제작, 전국에 배포하여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디지털 TV 시청방법 등 디지털 전환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2008년 11월 아날로그 TV 수상기와 모니터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와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 위원 위촉(2008. 12. 4)

그리고 2008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방송사·가전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 20명으로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구성 명단은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 명단

구 분	이 름	현 직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부부처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이병우	환경부 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실무위원회 위원장)
방송사업자	이병순	KBS 사장
	엄기영	MBC 사장
	하금렬	SBS 사장
	구관서	EBS 사장
	김윤영	한국지역방송협회 공동대표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산업계	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
	남용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소비자단체	김천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학계/연구계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간사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관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는 2008년 12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추진과제를 보고 받고 향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2월 10일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대한 실무협의를 위해 디지털 방송 활성화 실무 추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 국민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 위원회 제1차 회의(2008. 12. 4)

또한, 디지털 방송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 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방송사, 종합유선사업자(SO), 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대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2008년 융자규모는 총 140억원으로 티브로드 수원방송 등 8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하였다³⁾.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수입 디지털 TV

3) 대출금리는 전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0.5%p(변동)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고, 1개사당 한도 내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 전체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을 통해 디지털 전환 재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12월 완료 예정이던 감면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방안, 대국민 홍보 방안, 디지털 전환 재원의 조달방안 등 주요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TV 공익광고, 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인 2012년까지 전략적으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되 향후 디지털 전환 현황, 방송사의 경영 개선,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융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입 디지털 방송 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4.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가. 2008 OECD IT 장관회의 개최

1) 2008 OECD IT 장관회의 의미

“인터넷 경제의 미래(Future of Internet Economy)”를 주제로 2008년 6월 17일~18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OECD IT 장관회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특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로서 인터넷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디지털 세상의 창조, 신뢰, 융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슬로건으로 하는 동 회의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보건,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경제, 사회 인프라로서 21세기 인터넷의 역할을 논의하고 성장과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2008. 6. 17)

2) 주요 논의내용 및 서울선언문 채택

경제 성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인터넷의 활용 촉진, 인터넷의 활용 능력 향상,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 마련 등을 통하여 인터넷 경제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였다.

또한 융합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잘 살려 경쟁 시장을 촉진하고, 시장 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익명성 등 인터넷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인터넷의 악의적 이용 및 남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 보안을 위한 콘텐츠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OECD IT 장관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서울선언문은 OECD 30개 회원국과 9개의 비회원국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선언문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 비전과 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고, 인터넷의 발전·활용 및 적용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증진하며, 신뢰성 및 보안을 강화하여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선언하였다(세부 내용은 <부록 8> 참조).

아울러 장관회의 개최기간 동안 국내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대표 및 민간 참석자간에 협력의장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의 장 및 프랑스 등 10개국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지는 등 총 24회의 회담을 가졌으며, 타 부처들도 정부관계자 및 기업의 CEO 등과 16회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OECD IT 장관회의 참가국 및 주요 기업, 우리나라 민간기업 및 기관들도 양자회의를 포함하여 활발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IT 장관회의의 유치 및 준비 과정에서 IT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월드 IT 쇼)를 공식 부대행사로 연계 개최하여 주요 외빈에게 한국의 첨단 IT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강국 KOREA’라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IT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1) 방송통신 전략품목 해외진출 지원

WiBro, IPTV 등의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정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WiBro, IPTV 등의 서비스를 진출 유망국가에서 시연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방송통신 융합 로드쇼’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Pilot Program)을 실시하였다.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총 8회의 방송통신 융합 로드쇼를 개최하여 WiBro, DMB, IPTV 등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기술이 경쟁국 보다 한발 앞서 외국에서 채택되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4) WiBro 세계 가입자수는 2012년 1억 3천만명(WiMAX Forum '08. 8), IPTV는 2012년 9천만명(MRG, '08. 3), Mobile TV(DMB 포함)는 2010년 4억 8천만명(Gartner, '08. 3) 예상됨

〈표 III-7〉 2008년 로드쇼 개최 현황

개최국가	기 간	부 문
태국	3. 19~20	WiBro(시연버스 운행)
태국 (APEC TELMIN 장관회의 연계)	4. 24	WiBro, IPTV
한국 (OECD IT 장관회담 연계)	6. 17~18	WiBro, IPTV, NGN, 이통솔루션 등
터키	7. 1	WiBro, IPTV, 전파관리시스템
우즈베키스탄	10. 17	WiBro, IPTV 등
브루나이	11. 6	WiBro, 정보보호 등
프랑스	11. 19	모바일, 브로드밴드, 방송콘텐츠 등
일본	12. 17	IPTV

로드쇼 등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기술에 관심을 보인 외국 기업과 타당성 조사 2회 및 시범사업 3회를 추진하였다. WiBro 부문은 태국, 터키, 브루나이, IPTV 부문은 베트남, 전파관리시스템은 인도네시아에서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외국 사업자가 WiBro, IPTV, DMB 등을 도입함에 따른 비용 및 수익성, 과급효과 분석 등 영향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서 WiBro, IPTV, DMB 등의 장비 테스트 및 애플리케이션 연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장비 도입을 지원하였다.

〈표 III-8〉 2008년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 현황

세부사업	국가	협력대상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터키	터키 WiBro 도입 협력사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파관리시스템 현대화 협력사업
시범사업 (Pilot Program)	태국	태국 WiBro 기술테스트 협력사업
	베트남	베트남 IPTV 기술테스트 협력사업
	브루나이	브루나이 WiBro 기술테스트 협력사업

향후 WiBro, IPTV 등 우리의 첨단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와 장비, 그리고 관련 솔루션 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이나 미래의 교역 확대국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로드쇼 및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2) 방송 콘텐츠 신시장 개척 지원

최근 한류의 주요 확산지역인 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자국문화 보호주의 정책 등으로 방송 콘텐츠의 해외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송 콘텐츠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드라마 위주의 장르를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 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동, 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 쇼케이스(showcase, 특별 홍보행사)를 실시하여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아시아 지역에 구축된 ‘한류(韓流)’가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외 방송통신 정책기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 간 협력활동을 강화하였다.

〈표 III-9〉 2008년 해외 견본시장 참가 및 TV 쇼케이스 개최현황

행사명	국가명	추진 내용
MIPTV/Milia 2008	프랑스 칸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총 78개 업체 응모 ◦ DMB 쇼케이스: 실시간 교통정보, 긴급경보, 전자프로그램 안내, 수신체환시스템 등 전시
DISCOP 2008	헝가리 부다페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방송사 참여, 콘텐츠 수출 상담회 실시 ◦ 방송사별 각 5~10여편/170건 수출 상담 지원
베트남 쇼케이스	베트남 호치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개 방송사 참여 ◦ 방송사별 각 5~10여편의 드라마 등 출품, 수출 상담 지원
MIPCOM 2008	프랑스 칸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3대 방송 콘텐츠 견본시장에 25개국 120여명의 바이어를 초대하여 Asia Networking 세션을 개최, 한국 방송 및 융합 서비스의 최신 현황을 소개
두바이 MMS 2008	UAE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견본시장 참가를 통해 국내 방송 콘텐츠를 홍보, 판매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의 한류진출 기반 마련

프랑스 MIPTV 2008 참가(4월), 형가리 DISCOP 2008 참가(6월), 베트남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6월), 프랑스 MIPCOM 2008 참가(10월), 두바이 MMS 2008 참가(11월)를 통해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홍보, 방송 콘텐츠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방송 콘텐츠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미주, 중동, 중남미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상·하반기에 걸쳐 총 6회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와 아울러 주요 수출 유망국가와 정부 간 고위급 회담, 정책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 등 정부 간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MIPTV/Milia 2008의 우리나라 DMB 쇼케이스 전경(2008. 4. 7)

3) 방송통신 부문 통상협상 대응

WTO, FTA 등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을 통한 전 세계적인 시장개방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부문에 있어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통상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 부문의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WTO, FTA 협정의 이행 여부,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조사·분석하여 “통신 서비스 통상환경 보고서”를 작성하고, FTA 상대국의 방송통신 시장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를 조사하여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방송통신 통상포럼의 구성 및 운영(총 10회 개최)을 통하여 통상관련 이슈별 국제동향 등을 분석·공유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III-10〉 방송통신 통상포럼 추진 결과

구분	일시	주제/발표자
제1회	'08. 1. 22(화)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과 통상정책 방향 (발표자: 외교통상부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
제2회	'08. 2. 26(화)	방송통신 융합 규제정책—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최근 동향 (발표자: 중앙전파관리소 민원기 소장)
제3회	'08. 5. 27(화)	방송통신분야 FTA 체결현황과 향후 연구방향 (발표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석 국제협력기획담당관)
제4회	'08. 6. 24(화)	중국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과 방송산업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 (발표자: SK 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 손혁 전략연구팀장)
제5회	'08. 7. 22(화)	방통융합의 정책과제와 시사점—주요국의 이행 사례 (발표자: 중앙대학교 김원식 교수)
제6회	'08. 8. 26(화)	방송영상산업의 전망 및 현황 (발표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최영호 부원장)
제7회	'08. 9. 23(화)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IPTV 비즈니스 모델 (발표자: 이지씨앤씨 조영민 부사장)
제8회	'08. 10. 28(화)	WiBro 현황 및 해외진출 방안 (발표자: 호서대학교 조상섭 교수)
제9회	'08. 11. 25(화)	오바마 당선과 미국의 통상정책: 한미 FTA 비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자: KIEP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제10회	'08. 12. 22(월)	'08년 방송통신 통상 평가 및 '09년 정책방향 (발표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석 국제협력기획담당관)

2008년, 캐나다·EU·멕시코·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UAE의 6개국으로 구성)·인도와 11회에 걸쳐 FTA 협상을 실시하였다. 캐나다와는 2008년 3월에 제13차 협상을 실시하였고, EU와는 2008년 3월과 8월에 두 차례의 회기 간 협상, 5월에 제7차 협상, 8월에 제2차 확대수석 대표회의를 실시하였다. 멕시코와는 2008년 6월에 제2차 협상을 실시하였고, GCC와는 2008년 7월에 제1차 협

상을 실시하였다. 인도와의 FTA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라고 불리는데 2008년에 3차례의 본 협상을 실시(5월, 7월, 9월)하였고, 마지막 제12차 협상에서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그리고 2009년 FTA 본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는 호주·뉴질랜드와 예비협의를 각 2회 개최하였다(한-뉴질랜드 FTA 예비협의: 9월 및 11월, 한-호주 FTA 예비협의: 10월 및 12월)

4) 주요국의 방송통신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기술·정책·시장 동향정보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규제정책 및 경쟁기업의 기술개발 동향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중소기업·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하는 등 방송통신 산업의 수출을 위한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국의 방송통신 정책, 법·제도, 산업현황, 기술동향 등에 대하여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1〉 국가별 방송통신 정보 세부 내용

구분	구성	세부 내용
방송통신 산업현황	방송통신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 개요
	방송통신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범제도 ○ 방송통신 주요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현황
	방송통신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시장 규모 및 전망 ○ 유무선 통신, 인터넷/브로드밴드, TV/Cable, IPTV 등 가입자
	방송통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시장현황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현황: TV/Cable, 인터넷/브로드밴드, WiBro · DMB · IPTV 등 방송통신 및 관련 산업 현황 ○ 기타 방송통신 및 관련 융합산업 현황
	방송통신 부문 진출·협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 협력 현황, 국내기업 진출현황
방송통신 동향	주요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최신동향, 기술개발 동향 및 정책 소개
일반 약황	일반 약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요, 정치·경제현황, 한국과의 관계, 주요 이슈

이와 함께 미국의 FCC, 영국의 Ofcom 등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 기관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여 해외 진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송통신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 추세에 맞추어 정보 콘텐츠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관련 기술, 시장, 정책 등 전문적인 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 유망국가의 정책, 시장 및 동향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5) 방송통신 해외 홍보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관련 서비스의 국제표준 채택 등을 위해 해외 홍보용 영상물·발간물의 제작 활용 및 상설·비상설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와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있다.

2008년 11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기술 서비스별 정책, 산업 현황과 강점 부문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하는 방송통신 해외 홍보 책자를 영·중·불·서·아랍 5개 국어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방송통신 융합 신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민간홍보관 등을 안내하는 방송통신 체험 안내지도를 영·중·일 3개 국어로 병기하여 제작하고, 영·중·불·서·아랍 5개 국어로 방송통신 해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 산업 현황과 비전을 소재로 한 방송통신 해외 홍보 방송(국제방송재단의 ‘방송통신 컨버전스가 온다’, 충주 문화방송의 ‘인터넷 유토피아를 가다’)의 제작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2008년 12월 해외에 방송 되었다(중국 여행위성 TV 2회, 월드(위성)채널 4회, 아랍(위성)채널 4회). 그리고 방송통신 해외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조선일보와 싱가풀 IFA(In Focus Asia)와의 ‘아시아의 유비쿼터스—미래의 건설’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북경 올림픽 개최기간에 맞추어 주중 북경문화원 내에 방송통신 홍보·체험관을 구축·운영하여 우리의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방송통신 선진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III-12〉 북경 방송통신 홍보·체험관 현황

구 분	내 용
홍보내용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 정책, 관련 산업현황을 홍보하는 홍보관 및 IPTV, u-Home, DMB 등의 서비스 체험관으로 구성
방문자수	일평균 202명(2008년 8월~12월까지 약 24,730여명 참관)

아울러 방송통신 정책·서비스·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술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방송통신 해외홍보 웹사이트(영문)'를 준비 중이다.

다.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1)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2008년 10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세계 표준화 총회(WTSA)에서 ITU의 표준분야 연구반의 의장단 선출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장 2명, 부의장 7명을 배출함으로써 ITU-T 분야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의 의장단 보유국이 되었으며, ITU 기구내에서 총 14명의 의장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8년 12월 열린 APT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파 연구소의 위규진 박사가 APT의 예산 및 재정을 심의·의결하는 관리위원회 의장에 선출됨으로써 APT내에서 5명의 의장단 보유국이 되었다. 또한 OECD 정보통신정책 위원회(ICCP)에서 부의장 4명을 2007년에 이어 연속하여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로써 방송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글로벌 IT 협력강화 및 인프라 구축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EU)과 첨단 IT 서비스·기술 공동연구, 표준화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송통신 서비스 및 IT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EU ICT간 교류와 협력 기반의 마련을 목표로 제1차 한-EU ICT 포럼을 개최하여(2008년 6월 16일~17일), 양국 국제 공동연구 상호 참여 및 기업 간 협력부문 도출 등 유럽 선진국의 IT 연구개발 정책 및 전략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IT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동 행사에는 정부, 연구소, 산업체, 학계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포럼은 Technical Visits, 협력 워크샵 등으로 이루어졌다. 동 행사를 통해, 한-EU ICT 부문 과학기술인 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 연구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였으며 융합기술, 보안 부문 등에 대해 추가 협력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양국 협력 체계 관련 공조 공동 연구프로그램, 연구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정책도 공유하였다.

그리고 한·호·뉴 브로드밴드 회의(KANZ Broadband Summit)를 ‘New Service for the Digital Economy’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2008년 6월 19일~20일),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장관급 및 정부,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브로드밴드 관련 부문에서의 3국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3국 대표의 개막 연설 및 각국간 양자회담, 방송통신 관련 정책·기술·산업동향 등에 관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 교류 및 IT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응용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실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한·호·뉴 브로드밴드 회의(2008. 6. 19)

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별 협력체계 및 국가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8년 4월에는 MIP TV 2008 참가를 통한 마켓채널 발굴,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통신 개발센터를 방문(2008년 5월, 중국 북경)하고, 한·터키 ICT 협력단 파견을 통하여 협력 세미나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2008년 5월)하였다.

동남아 지역 통신 부문 협력 확대(2008년 7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ASEAN+KOREA TELMIN 및 TELSOM 참가(2008년 8월, 인도네시아 발리), UAE 방송협력 협정 협의 및 브루나이 차관급 회의(2008년 11월, UAE, 브루나이), 태국 통신위원회 방문단 협력(2008년 11월, 한국), 헝가리와의 방송통신 협력에 관한 MOU 체결 기반 조성(2008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3)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내 IT 정책 및 기술의 전파,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적 이니셔티브 확보 등을 위해 해외 각국의 정보통신 부문 장·차관급 인사를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에는 방송통신 융합의 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 부문 장차관급 회의('방송통신 장관회의',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를 개최하였다.

〈표 III-13〉 연도별 개최 현황

연도	행사명	행사주제
2005	World ICT Summit 2005	디지털 코리아의 경험
2006	World ICT Summit 2006	바람직한 미래 정보사회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2007	IT Ministerial Conference 2007	디지털 융합: 도전과 기회
2008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ummit 2008	모두를 위한 미래 정보사회를 위하여

2008년 10월 30일 개최된 방송통신 장관회의에는 9개국 방송통신 부문 장·차관(장

관급 5개국, 차관급 4개국)이 참석하여 각국의 방송통신 정책비전을 공유하였다. 본 회의 일정과는 별개로, 회의 개최를 전후하여 참석국가 중 4개국은 우리 위원회와 양자회담(위원장 1회, 상임위원 3회)을 가졌으며, 8개 참석국가는 국내 14개 기업·기관과 총 19회의 면담을 실시하여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도 국제적 방송통신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IT 전시관 방문도 행사 일정에 포함하여 참석국가들의 호응을 받았다.



▶ 제4차 방송통신 장관회의(2008. 10. 30)

〈표 III-14〉 2008년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요

- 일시: 2008년 10월 30일
- 참석자: 9개국 방송통신 부문 장·차관
 - 장관급(5개국): 한국, 파라과이, 터키, 패테말라, 캄보디아
 - 차관급(4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주요행사: 장관회의, 양자회담, 기업 및 기관 면담, IT 전시관 방문

본 회의를 통하여 참가 장·차관들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현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해당국가 진출과 정보통신 강국 및 방송통신 융합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

1.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가. 방송시장 소유·겸영규제 개선

현행 방송법은 신문 및 방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하고 있다. 즉, 〈표 III-15〉와 같이 설립목적, 방송내용, 기술사항 등의 매체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진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신문 및 방송사업을 위한 시작단계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표 III-15〉 신문 및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구분	신문사업	방송사업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 방송 ⁵⁾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PP)	
설립방법	등록	허가	허가	허가	승인	일반 PP

현행 방송법에서는 매체별로 소유제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 1인 지분 등의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법에 의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등에는 대기업, 외국자본 및 일간신문사의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비롯한 매체별 소유제한 규정 현황을 정리한 것은 〈표 III-16〉과 같다.

5) SO; System Operator

〈표 III-16〉 방송법상 매체별 소유제한 규정 현황

소유대상 소유주체	대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1인 지분
지상파방송 사업자	금지	금지	금지	30%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	49%	33%	—
위성방송 사업자	49%	33%	33%	—
IPTV 제공 사업자	—	49%	49%	—
일반 PP	—	49%	—	—
종합편성, 보도 PP	금지	금지	금지	30%
IPTV 콘텐츠 사업자(일반 PP)	—	49%	—	—
IPTV 콘텐츠 사업자 (종합편성, 보도 PP)	금지	금지	금지	—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	금지	—	—
전송망사업자	—	49%	—	—

주: KBS와 MBC는 방송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1인 지분 30% 제한 예외 적용

이밖에 언론기관에 대한 소유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있다. 신문법에서는 〈표 III-17〉과 같이 대기업 및 신문, 방송 사업자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표 III-17〉 신문법의 소유제한 규정

주체	대상	일간신문, 뉴스통신	종합편성, 보도 PP
일간신문, 뉴스통신	상호 겸영 금지	겸영 금지	
일간신문 · 뉴스통신 · 방송사업 50% 이상 소유자	50% 이상 소유 금지	—	
대기업(자산총액 3조원 이상)	50% 초과 소유 금지	—	

또한 방송법에는 매체별로 겸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II-18〉과 같다. 겸영규제 규정에 따르면 지상파(DMB 포함) 방송 사업자는 SO와의 겸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매체들도 주식보유 한도, 가입자 수와 같은 시장점유율 등으로 겸영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표 III-18〉 방송법상 매체별 경영규제 규정 현황

주체 대상	지상파	SO	위성	PP	전송망 사업자
지상파	○ 일방소유: 7% ○ 쌍방소유: 5% ○ 사업자수: 10% (DMB 제외)	금지	—	—	—
지상파 DMB	○ 권역별 사업자수: 3~5(1/3), 6이상(1/5)	금지	—	—	—
SO	금지	1/3(가입기구) 1/3(구역)	33%(주식)	1/3 (구역)	1/10 (구역)
위성	33%(주식)	—	33%(주식) 1개(사업자수)	—	—
PP	○ 텔레비전 · 라디오 · 데이터 PP별 각 3%(사업자수), 6개 미만	○ 텔레비전 · 라디오 · 데이터 PP별 각 1/5(사업자수)	○ 텔레비전 · 라디오 · 데이터 PP별 각 1/5(사업자수)	○ 33%(매출액, 홈쇼핑 제외)	—

주: 특정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는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 이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의 등장 등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 소유규제 등을 완화하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08년 하반기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상파 방송, 보도 ·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2002년 34개 → 2008년 57개)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다수의 기업들이 방송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었다.

〈표 III-19〉 방송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 관련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대기업 기준 완화	○ 자산총액 3조원 이상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다음으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간 겸영규제를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초과 금지’에서 전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가입가구 수 1/3 초과 금지’로 변경하고, 전국 77개 사업구역 수의 ‘1/5 초과 금지’를 ‘1/3 초과 금지’로 완화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채널사용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사업 겸영제한 기준도 사업구역 수 ‘1/5 초과 금지’에서 ‘1/3 초과 금지’로 동일하게 완화하였다(제4조 제3항 및 제4항).

〈표 III-20〉 방송법 시행령 SO 겸영 관련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SO 시장점유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SO 매출액 33/100 이하 ○ 전체 SO 구역 수 1/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SO 가입가구 수 1/3 이하 ○ 전체 SO 구역 수 1/3 이하
PP-SO 겸영	○ 전체 SO 구역 수 1/5 이하	○ 전체 SO 구역 수 1/3 이하

이는 전국 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등장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의원입법으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008년 12월 3일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2008년 12월 24일 허원제 의원 대표 발의)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채널의 최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의 한계를 종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이 지상파 방송(20%)과 종합편성(30%) 및 보도전문 채널(49%)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에 한하여 해당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경쟁매체인 IPTV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상파 방송과 SO의 겸영을 일정부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 진입규제의 점진적인 축소를 통해 규제체

제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미디어 간 인수·합병과 투자 유도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IPTV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현행 및 개정안 비교

소유주체 소유대상	대기업 (자산총액 10조원이상)	외국 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1인 지분
지상파	금지→20%	금지	금지→20%	30%→49%
종합편성PP	금지→30%	금지→20%	금지→30%	30%→49%
보도PP	금지→49%	금지→20%	금지→49%	30%→49%
위성	49%→제한 없음	33%→49%	33%→49%	제한 없음
SO	제한 없음	49%	33%→49%	제한 없음
IPTV제공사업자	제한 없음	49%	49%	제한 없음

나. DMB 활성화

2008년 10월 기준으로 DMB 이용자는 약 1,617만명으로 이 중 지상파 DMB 이용자가 1,448만명(단말기 판매 기준), 위성 DMB 가입자가 169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DMB 사업자의 누적 적자를 살펴보면 2007년 12월 기준으로 (주)YTN DMB는 139억원, 한국 DMB(주) 122억원, U1미디어(주) 156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위성 DMB (TU미디어)는 2007년 12월 기준으로 2,703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도권에 6개, 지역별 13개의 지상파 DMB 사업자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추가 서비스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방송광고에 의존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성 DMB는 비록 위성방송 사업자로 가입비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누적되는 손실은 커져 가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III-22〉 지상파 DMB · 위성 DMB 현황

(2008년 12월 8일 기준)

구분	지상파 DMB	위성 DMB
도입시기	2005년 12월	2005년 5월
사업자 지위	지상파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요금	무료	유료
운영재원	방송광고 매출액	월 요금(13,000원), 가입비(20,000원)
사업자수	수도권: 6개, 지역: 13개	1개(TU미디어)
주파수대역	VHF대역(CH 8, 12) 1.54MHz	S밴드(2.63~2.655GHz) 25MHz
기술방식	EUREKA-147/H.264/BSAC	SYSTEM E(CDMA)/MPEG-2 AAC+/H.264

〈표 III-23〉 DMB 사업자 손익 현황

(단위: 억원)

매체	사업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지상파 DMB	YTN DMB	당기순손익	△19	△64	△56
		누적손익	△19	△83	△139
	한국DMB	당기순손익	△16	△45	△61
		누적손익	△16	△61	△122
	U1미디어	당기순손익	△18	△81	△57
		누적손익	△18	△99	△156
위성 DMB	TU미디어	당기순손익	△965	△842	△748
		누적손익	△1,113	△1,955	△2,703

주: 지상파 DMB 사업자 중 지상파 3사 계열 DMB(KBS, MBC, SBS) 제외

1) DMB 활성화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 ·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DMB 정책연구반을 구성 · 운영하여 DMB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개인형 · 이동형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뉴비지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

〈표 III-24〉 DMB 정책연구반 회차별 안건 및 주요 논의사항

회차	일시	안건 및 주요 논의사항
제1차 회의	2008. 7. 3	○ 논의과제 및 방향 설정
제2차 회의	2008. 7. 24	○ 지상파 DMB 정책 방안 ○ 위성 DMB 활성화 방안
제3차 회의	2008. 8. 28	○ 활성화 과제별 추진 일정
제4차 회의	2008. 9. 17	○ 단말기 제조사 조청 의견 수렴
제5차 회의	2008. 10. 29	○ 지상파 DMB 광고 활성화 방안 ○ 신규 수익원 확보 방안

향후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게 되면 방송사업자는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콘텐츠 및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고, 단말기 및 부품 사업자는 단말기 판매 증가로 인해 산업 생산력이 증대되며, 이용자는 볼거리가 풍성해짐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 및 시청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의무편성 비율 적용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에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를 개정하여 지상파 DMB에 대한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및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의 적용을 2009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지상파 DMB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의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지상파 DMB 사업자는 콘텐츠 구매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

DMB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 하반기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성 DMB 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확대하였으며(제5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성 DMB 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직접사용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채널별로 각각 전체 운용채널의 10/100 이내로 하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의 전체 운용채널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

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제53조 제2항 제2호 나목).

〈표 III-25〉 위성 DMB의 채널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

구 분	기 준	개 정
위성 DMB TV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이상 ○ 전체 채널수의 1/2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이상 ○ 전체 채널수의 2/3 이하
위성 DMB 직접사용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운용채널의 10/100 이내 (TV/라디오 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1개 이내, TV 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 20/1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운용채널의 10/100 이내 (TV/라디오 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이내, TV/라디오 채널이 10~39개인 경우 각각 4개 이내)

다.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사업자들 사이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방송산업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시청자 피해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8월 SO와 PP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에는 PP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를 수신료 대비 25%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SO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정책적으로 실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O와 PP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을 선도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현황, 원인, 폐해 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SO의 재허가시 재허가 조건으로 PP 프로그램 사용 대가에 대한 의무 지급비율 25%를 명시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PP 수신료 배분기준 및 산정기준을 제출받아 수신료 배분비율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반을 설치·운영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2.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가.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유료방송의 공익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성 채널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익성 채널과 관련한 방송분야는 2005년 10개 분야에서 시작하여 2006년 8개 분야, 2007년에는 6개 분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16개, 2007년에는 12개의 채널이 선정되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공익채널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을 유보했다.

〈표 III-26〉 공익성 방송 부문 변천 과정

2005년	2006년	2007년
① 한국문화(한국어) ② 한국문화(영어) ③ 수능 교육 ④ 초·중등 교육 ⑤ 사회적 소수 대변 ⑥ 환경·자연 보호 ⑦ 어린이·청소년 ⑧ 과학·기술 ⑨ 순수예술·문화 ⑩ 역사·다큐	① 한국문화(영어) ② 시청자 참여 ③ 수능 교육 ④ 장애인 시청 지원 ⑤ 교육 ⑥ 환경·과학 ⑦ 순수예술 ⑧ 사회적 소수 대변	① 시청자 참여·사회적 소수 이익 대변 ②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③ 문화·예술 진흥 ④ 과학·기술 진흥 ⑤ 공교육 보완 ⑥ 사회교육 지원
16 채널	채널선정 유보	12 채널

200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공익성 방송 분야를 고시하였다.

〈표 III-27〉 2009년도 공익성 방송 분야

공익성 방송부문	전문편성내용
시청자 참여·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 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부문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육아·어린이 관련 정보, 노인복지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부문
문화·예술 진흥	○ 순수예술, 공연예술,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부문
과학·기술 진흥	○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 기계전자, 생명과학, 정보 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부문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부문
공교육 보완	○ 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부문
사회교육 지원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직업 교육 등 방송의 사회 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부문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신청에는 총 26개 채널이 접수되었다. 2008년 11월에 공익채널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표 III-28〉과 같이 공익채널을 선정하였다.

〈표 III-28〉 2009년도 부문별 공익채널 선정 결과

- 시청자 참여·사회적 소수이익 대변(2): 복지TV, 범률방송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2): 육아방송, 실버TV
- 문화·예술 진흥(2): 아리랑TV, 예당아트
- 과학·기술 진흥(1): 사이언스TV
- 공교육 보완(2): EBS플러스1, EBS플러스2
- 사회교육 지원(2): JEI English TV, JCBN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 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선정된 공익채널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여 공익채널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舊)방송위원회는 2007년 6월에 5개 TV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7개의 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사는 3년 간 이행계획(2007년~2009년)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다.

〈표 III-29〉 5개 홈쇼핑사에 대한 (舊)방송위원회의 권고사항

- ① 유망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 ②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 ③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 ④ 중소 납품업체 품질 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 · 시행
- ⑤ 중소 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 ⑥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 ⑦ 중소기업 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 주:
1. 판매수수료: 납품업체가 TV 홈쇼핑사에게 지급하는 판매대리 비용
 2. 송출수수료: TV 홈쇼핑사가 채널 송출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3. 직매입제도: TV 홈쇼핑사가 공급업체 상품소유권을 넘겨받아 책임지고 판매하는 방식
 4. 정액수수료제: 납품업체가 TV 홈쇼핑사에게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방송시간에 대한 일정금액을 고정비로 지불하는 방식

방송통신위원회가 2007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제품의 TV 홈쇼핑 편성과 매출 비중은 200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1촌 1명품’, ‘온라인 상담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대금 선지급 확대 및 지급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의 판로 ·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홈쇼핑 사업자간 중소기업 지원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준 등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소기업 육성의 취지와 목표를 정확히 측정하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조정하였다.

〈표 III-30〉 중소기업 기준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별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 기준에 맞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등
○ 홈쇼핑사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업자 대상	○ 홈쇼핑사에 납품한 상품의 제조업체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TV 홈쇼핑에 송출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준 변경에 따라 TV 홈쇼핑사가 다시 제출한 계획(2008, 2009년)에 대해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3. 방송의 다양성 확대

가. 신규 영어 FM 방송 도입

우리나라는 상주 외국인수 1백만명, 한 해 방문 외국인수 7백만명, 교역국가 수는 230여 국에 이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 위상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영어 라디오 방송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권역별 경제권 및 FTA 체결 등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의 진행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영어 FM 방송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규 영어 FM 방송은 가용주파수가 확보된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 우선 도입하되 주파수 확보여부에 따라 전국 광역시 단위까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영어 FM 방송 서비스가 공익서비스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심사 후 허가하기로 하였다.

방송국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선정된 사업주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다양한 기호와 정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뉴스, 토론, 음악, 오락, 정보제공 등 장르의 제한이 없는 종합편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업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한 것은 신규 영어 FM 방송의 도입 취지가 해당 지역 거주(방문) 외국인의 실질적인 수요 충족이며,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지자체라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영어 FM 방송이 국가재정의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도 지자체가 적격이라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 하에 2008년 7월 23일에 수도권 신규 영어 FM 방송을 허가하였고, 2008년 10월 24일에는 광주권, 2008년 12월 3일에는 부산권 신규 영어 FM 방송을 허가하였다.

수도권 신규 영어 FM 방송 사업자인 서울특별시는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 특집 시험방송을 거쳐 2008년 12월 1일에 본방송을 개시하였으며, 부산권 사업자인 (재)부산영어방송재단은 2009년 2월 27일에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광주권 사업자인 (재)광주영어방송재단은 2009년 4월 1일에 본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규 영어 FM 방송을 도입함으로써 광역시권에 거주(방문)하는 외국인은 국내 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영어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커뮤니티 기회가 확대되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제공됨으로써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31〉 신규 영어 FM 방송 도입 현황

구 분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사업자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재단
대표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배영길 부산시 행정부시장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채널명	tbs-eFM (Traffic Broadcasting System-English FM)	Busan-eFM (Busan-English FM)	GFN (Gwangju Foreigners Network)
주파수	101.3MHz	90.5MHz	98.7MHz
출력	1.0KW	1.0KW	1.0KW
방송국명	영어 FM 방송국	부산 영어 FM 방송국	광주 영어 FM 방송국
허가일자	2008년 7월 23일	2008년 12월 3일	2008년 10월 24일
방송구역	일원: 서울특별시 일부: 인천시, 경기도	일원: 부산광역시 일부: 김해시, 진해시	일원: 광주광역시 일부: 나주시, 9개군
1일 방송시간	20시간(2009년 기준) (06:00~익일 02:00)	21시간(2009년 기준) (05:00~익일 02:00)	21시간(2009년 기준) (05:00~익일 02:00)
개국일자	2008년 12월 1일	2009년 2월 27일	2009년 4월 1일 예정

2009년에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외에 주파수가 확보되는 광역시 단위까지 영어 FM 방송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수도권 영어 FM 방송 개국식(2008. 12. 1)

나.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유료방송(CATV, 위성방송)의 성장과 신규 경쟁미디어(DMB, IPTV)의 등장으로 인해 지역 방송사의 수익 증가율이 둔화되고 시청 점유율이 하락되는 등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표 III-32〉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방송광고 매출	5,704	5,587	5,543

이러한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방송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방송 정책방안 연구 수행, 지역방송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방송법 제42조의 2(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라 2008년 8월에 구성된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 평가한다. 방송법 제42조의 4에 명시된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의 〈표 III-33〉과 같다.

〈표 III-33〉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의 직무

○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 지역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 그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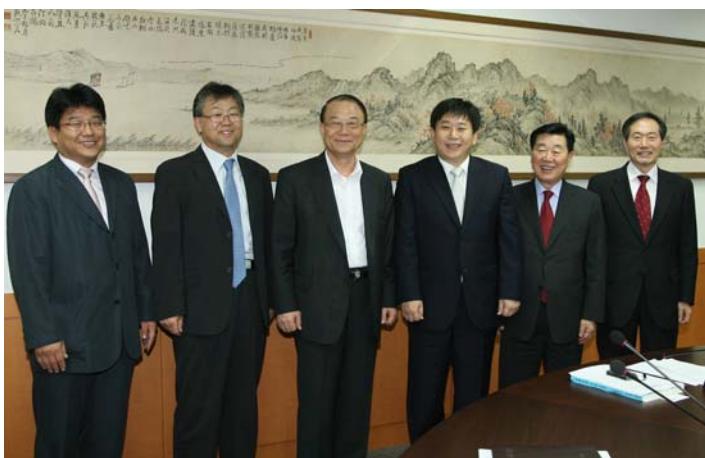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1기 위원으로는 위원장으로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되었고, 그 밖에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지역방송대표 단체가 추천한 한진만(한국방송

학회), 정재욱(한국지역방송협회), 양문석(방송균형발전연대) 위원이 위촉되었다. 지역 방송 대표단체는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1항에 의해 200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바 있으며 각 부문별 단체는 다음의 〈표 III-34〉와 같다.

〈표 III-34〉 지역방송 대표단체

사업자단체 부문	학술단체 부문	비영리 민간단체 부문
한국지역방송협회	한국방송학회	방송균형발전연대

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08-47호, 2008. 5. 19)



▶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 위원 위촉(2008. 7. 17)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는 2008년에 총 7회(정기 4회, 임시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방송 관련 현안⁶⁾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IPTV의 지역방송 재송신에 관한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의 건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여 IPTV의 지역방송 재송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짧은 운영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 방안, 방송 광고 판매제도 변화가 지역방송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지역방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

6) 편성규제 개선 관련 사항, SO 겸영규제 완화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관련 사항, SO 지역채널 보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IP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등

화의 상관성 연구 등 3가지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기존 논의와 관련업계 실태 분석 및 전문가 제안 등을 종합하여 지역방송 발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계획을 현안별로 마련하였다.

4.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가. 독점적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경쟁체제 도입

1980년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해 왔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 이후 광고시장에 방송의 상업화가 우려되고, 특히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며 가격규제를 통해 방송광고 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이 광고시장에서 광고주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고 독점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 광고 독점 판매 대행에 대해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09년 12월 31일 기한으로 방송광고 판매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기한 내에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의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해외 주요국의 방송광고 판매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공·민영 제도를 갖춘 국가의 경우 공영과 민영으로 미디어렙이 구분되어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직

접적으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

〈표 III-35〉 해외 미디어렙⁷⁾ 현황

국 가	미디어렙 운영 형태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 BBC: 광고 없음, CH4: 자체 판매 ○ 민영방송 CH3(ITV):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CH5: 자체 판매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 F2, F3, F5: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 민영방송 TF1 등: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 Netherland 1, 2, 3: 공영 미디어렙 (지상파는 모두 공영방송)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 NHK: 광고 없음 ○ 민영방송: 광고대행사와 방송사가 직접 거래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 PBS: 광고 없음 ○ 민영방송: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또는 자체 판매 형태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개선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받은 바 있다.

즉, 1사-1렙 이상의 미디어렙이 존재하는 완전경쟁 방안의 경우 경쟁효과 및 시장기능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신속한 광고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1개 공영 미디어렙 이외에 1개의 민영 미디어렙을 추가로 도입하는 제한경쟁 방안의 경우 단기적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완전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2009년 말까지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7)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광고판매대행회사

나. 방송심의 제도 개선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방송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심의 절차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방송심의 제재조치의 처분 절차를 개선하였다.

먼저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처분 요청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적시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제재조치 처분 시 중복적인 의견진술 절차를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 방송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 등 심의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송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년 6월 26일)에 따라 방송사업자, 광고주 등 민간 업계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유도하였고, 방송광고의 공정성·공공성의 확보, 불법·유해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방송광고 자체 심의 또는 외부 위탁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9년 1월 23일).

〈표 III-36〉 방송광고 자율심의 현황

자율심의기구	시행일자	심의대상
한국방송협회	2008. 11. 5	KBS, MBC 등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광고물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2008. 12. 1	구산홈쇼핑 등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회원사 광고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09. 1. 5	온미디어 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 광고물

5. 방송 품질 제고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가. 방송편성 의무비율 준수여부 감독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정서에 맞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장려하며, 국내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방송편성 의무비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과도하게 유통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온미디어, (주)챔프비전, (주)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주)대원방송에 대해 2007년 4분기 의무편성 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반복적 법령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7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및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2005년 1월 22일)에서 규정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방송편성 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세부 내역은 〈표 III-37〉과 같다.

〈표 III-37〉 과태료 및 시정명령 세부 내역

의안번호	법인명(채널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	시정명령
제2008-19-049호	(주)온미디어 (투니버스)	○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2,250만원	2008년 3분기내
제2008-19-050호	(주)챔프비전 (챔프)	○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2,250만원	2008년 3분기내
제2008-19-051호	(주)애니맥스브로드 캐스팅코리아 (애니맥스)	○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750만원	2008년 3분기내
제2008-19-052호	(주)대원방송 (애니박스)	○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375만원	2008년 3분기내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시청자에게 공표하고, 공표 후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표 III-38〉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방법 및 내용

- 공표일시: 해당 채널의 토요일(15:00~17:00), 일요일(08:00~10:00)에 각각 1회 이상
- 공표방법: 전체화면 1/8 크기로 화면하단에 흐르는 자막으로 회당 연속하여 2차례
- 공표내용: 저희 ○○○은 2007년 4분기에 일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나. 효과적인 방송평가제 운영

방송평가는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1년간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 등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매체별 배점은 〈표 III-39〉와 같이 구성된다. 지상파 TV 방송사업자는 900점, 여타 매체는 500점을 총점으로 방송평가 영역별 합산 점수를 활용한다. 이러한 방송평가 결과는 해당 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

인 심사에 반영되고 있으며 2008년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54개 사업자이며 그 구분은 〈표 III-40〉과 같다.

〈표 III-39〉 매체에 따른 방송평가 영역별 배점

평가대상 매체	방송평가 영역	내용	편성	운영	총점
지상파방송사업자(TV)	300	300	300	900	
지상파방송사업자(R)	250		250	500	
SO·위성방송사업자	200		300	500	
PP(보도부문)	250		250	500	
PP(홈쇼핑부문)	250		250	500	

〈표 III-40〉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구분

구분	합계	지상파방송	SO	위성방송	PP	
					보도	홈쇼핑
사업자수	154	43	103	1	2	5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정책과 방송평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방송평가 항목,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시행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국민관심 행사의 방송중계권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1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2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민관심 행사 고시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2008년 5월), 위원회 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를 구성하였다(2008년 6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위원회 위원 제외)이며 위촉한 위원은 다음의 〈표 III-41〉과 같다.

〈표 III-41〉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부문
위원장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학계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대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실장	체육계
	박형상	박형상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계
	하윤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언론·연구기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시청자단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8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 관심 행사로 동·하게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을 고시함으로써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 행사를 지상파 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방송중계권은 각 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부분적으로는 중첩되고 부분적으로는 경쟁하는 부분이지만, 방송중계권이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써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시청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취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 3 절 이용자 편의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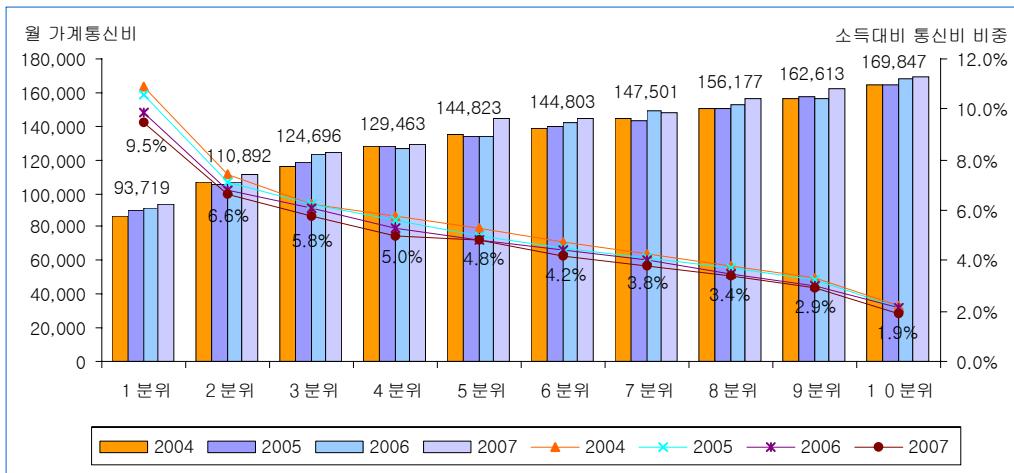
1.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시행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 대비 통신비의 비중은 9.5%로써 소득 상위 10% 가구(1.9%)에 비하여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가계통신비에서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소득층에 있어 통신비 중 이동전화 사용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III-3] 소득대비 가계통신비 비중(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출처: 통계청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전기, 가스, 의료서비스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

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히 독거 노인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도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한 이동전화는 이미 유선전화보다 더욱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이동전화를 비롯한 통신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그리고 중증 장애인과 근로 곤란자에 대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시내·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 번호안내 등으로 가입비를 면제하고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의 30~50% 수준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감면 대상자는 71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전체의 약 10% 수준인 7만 3천명에 불과하고 감면 금액도 불과 59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감면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활동 연령인 18세 이상과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금액이 59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3만원 이하로 이동통신비를 지불하는 소액 이용자이므로 일반가입자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하나인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저소득층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감면 대상을 기존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가구원까지로 확대하는 요금감면 정책을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차상위 계층은 생계형편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감면 대상자 수가 기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인 7만 3천여 명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약 155만명과 차상위 계층 약 270만명 등 총 최대 425만명으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의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감면 폭을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고 있던 기본료와 통화료의 35% 감면에서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로 편입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감면 폭과 같은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의 연간 59억원에서 최대 약 5,000억원으로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정책을 요약하면 〈표 III-42〉와 같다.

〈표 III-42〉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효과

- 대상범위: 기초생활 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에서
⇒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감면방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감면에서
⇒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유선전화 수준)
차상위 계층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현재의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으로 감면)
- * 월 최대 감면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21,500원, 차상위 계층 10,500원임
* 예상 감면자 수 = 감면대상자 × 이동전화보급율(90%)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합 계
감면대상자 수	155만명			270만명		425만명
예상 감면자 수	139만명			243만명		382만명
요금감면방법	가입비 면제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통화료 35%감면	—
예상 감면액(연간)	170억원	2,160억원	520억원	310억원	1,930억원	최대 약 5,000억원

8)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현재 영유아 보육비, 한부모 자녀 학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8월에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서비스가 이동전화 서비스는 물론 IMT-2000 서비스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도 1인당 기본료를 포함하여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고, 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제외한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혜택에 대한 신청절차는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함께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고 가구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해당 월의 이동전화 요금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이동통신사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시행과 함께 국가 지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중고 휴대폰을 무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 이와 같은 중고 휴대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동전화 요금 감면정책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상지원 사업에 있어 향후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 중고 휴대폰의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지정된 대리점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 중고 휴대폰에 대한 무상 지원을 시행하고 이러한 시범서비스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물량

으로는 약 13,000대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추진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 시장의 자연독점적 특성상 지배적 사업자의 수익률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1983년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경쟁 도입 이후에는 지배력 억제,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가격 인상·약탈적 가격인하·차별적 가격설정의 방지 등) 차원에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통신요금은 현재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가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가 대상은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출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SKT의 2G 이동전화가 인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최근 통신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함께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요금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는 달리 현재의 통신시장 구조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 인가제의 완전한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앞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참작하여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舊)정보통신부는 2007년에 소매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제17대 국회에서 도매제공(재판매)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후 2008년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제한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즉시 폐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특히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쟁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과 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비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통신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합판매의 인가와 관련하여 2008년 5월에는 지배적 사업자 의 결합상품 출시에 대한 요금적정성 심사의 면제기준을 요금할인율 10%에서 20%로 확대하여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할인혜택이 큰 유·무선 결합상품이 출시되었고,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약 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가 대상 통신요금인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도록 통신요금 인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유인정책은 통신요금을 무조건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사용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향후 사업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 즉 투자 유인도 가능한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통신요금의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계통신비의 절감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입안되었더라도 사전적 요금 규제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완화된 통신요금 인가제 및 통신요금 신고제의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은 물론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통신요금 규제의 기초가 되는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엄밀한 시장 획정 및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기초한 요금인가제 운영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것은 향후 점차 다변화, 복잡화되는 통신시장의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가.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 추진

1) 도매제공 현황

도매제공(재판매) 제도란 통신망과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기존의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매제공(재판매) 제도는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제한된 수의 사업자만이 주파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통신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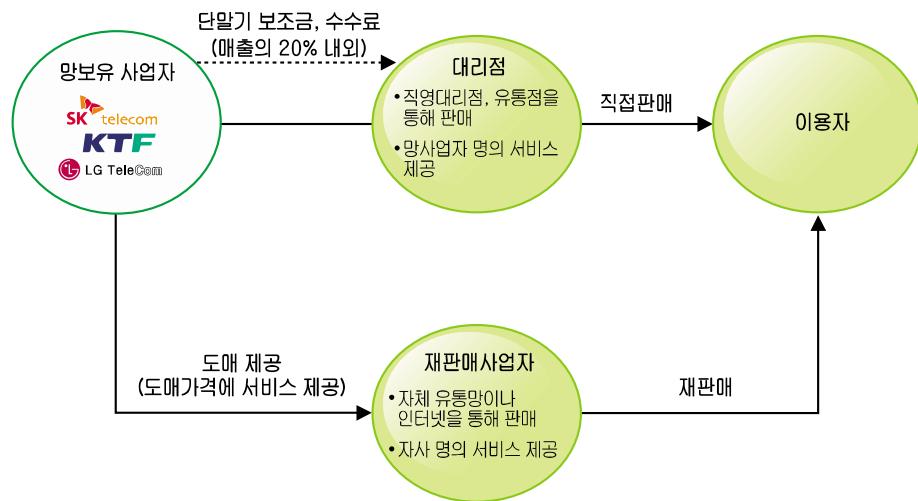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설비기반의 경쟁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어 재판매 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있어서는 KT를 비롯한 10여개의 재판매 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특수 관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한 도매 제공이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재판매 시장에 있어서의 통신서비스 판매방식을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준으로 통신망 보유 사업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III-4]와 같다.

이러한 판매방식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에서 재판매 사업자가 기존의 통신망 보유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수익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규 사업자가 지배적 통신망 보유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을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주파수나 설비의 활용 차원에서 재판매 시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통신망 보유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통신망과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III-4] 망보유 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간 판매방식 비교



2) 도매제공 제도 정책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도매제공(재판매) 정책방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1년에 걸친 연구와 전담반 운영 및 사회 각계 각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제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도매제공 대가는 사전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에 규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 기간통신서비스 중 전년도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무사업자로 지정
-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및 방법 고시: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도매제공 기준·사용기간·사용제한·거절사유 등을 규정
- 90일 이내 협정체결 의무화 및 협정 인가제도 도입: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재판매 사업자가 협정을 요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 신청
- 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사후 규제: 재판매 사업자는 협정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매 제공 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협정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정을 불이행하는 것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
- 도매제공 대가: 정부가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시장 자율을 원칙으로 함

이를 통하여 재판매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수가 증가함은 물론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은 물론 증권사와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 제공업자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통신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에 따른 여러 형태의 요금제도도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의 확장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재판매 사업자의 규모와 사업전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재판매 통신망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과금시스템의 개발 및 재판매 사업을 위한 유통 및 영업 조직 확충 등과 같이 재판매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 도매시장을 확정하고, 도매제공 대상 서비스 및 의무 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도매제공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및 방법 등 도매제공 기준에 관한 고시(안)를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협정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규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추진

인터넷 전화(VoIP) 번호이동성 제도란 시내전화 가입자가 인터넷 전화로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의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전화 이용이 증가하면, 기존의 유선전화 시장에 있어 음성서비스의 시장경쟁이 촉진되게 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터넷 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2007년 3월 15일 (舊) 정보통신부가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을 통하여 유선전화 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12월에 KT 등 11개 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약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2008년 6월에 10개 인터넷 전화 사업자는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0월 1일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고, 2008년 10월 31일부터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착신과금(080)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번호이동성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 시내전화 서비스에서 인터넷 전화 서비스까지 확대
- 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통신, 위치 변경 시 위치정보 등록, 정전 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의 홍보
- 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 시 통화권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즉, 인터넷 전화의 문제점 및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 문제, 정전 시 통화 불능, 통화권 이탈에 따른 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인터넷 전화의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화 위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KT 긴급통신 시스템에 위치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긴급구조기관에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으로 인해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위치정보를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오류로 인해 구조업무가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반드시 위치정보를 재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사업자에게 홍보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정전 시 통화 불능 문제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고시와 함께 이용약관에도 반영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화를 통화권에서 이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금 및 인식상의 혼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의 특성상 통화권 이탈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제도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통화권 준수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 시 070번호 대신 기존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 전화의 보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또한 음성서비스 관련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 전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유선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산업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전화는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저렴하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가 절감되게 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기존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체계는 세분화된 역무 분류에 기초하여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내전화,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등 개별 서비스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방송통신 서비스 융합 추세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업에 따른 허가심사기준이 서비스 제공 측면 이외에 기술개발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08년 5월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다시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일부조항 수정).

2008년 12월 8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2008년 12월 12일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그 결과 2009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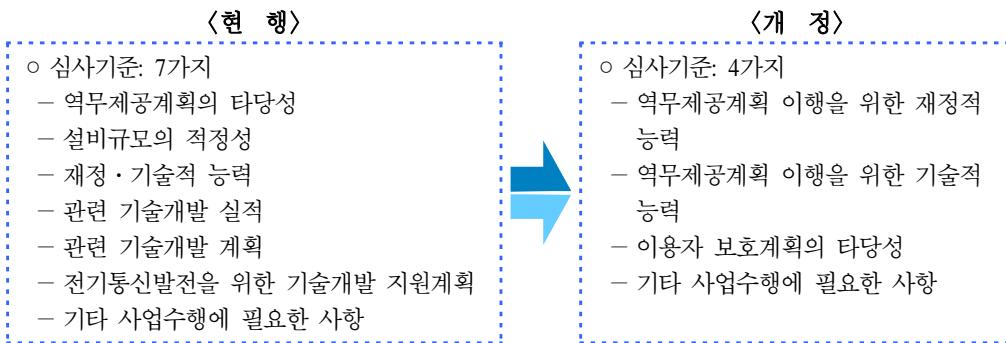
이에 앞서 2007년 12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송과 주파수 할당 및 회선설비 임대역무의 3가지로 단순화하였다.

이후 2008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3가지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통합 규정하고 단일허가(License)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무선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와는 별도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파수의 할당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라는 진입절차는 유지하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로 심사 기준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허가제도의 완화를 통하여 신규사업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신규 서비스가 쉽게 제공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관련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한 번의 허가로 다양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별도의 허가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대폭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III-5]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개정



라.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접속료 산정

상호접속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상호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에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접속을 원활히 하고 공정·타당한 상호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및 방법과 대가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특히, 유선전화망과 이동전화망의 상호접속료는 2년 단위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시장 경쟁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신규서비스의 활성화와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개선 전담반 논의를 진행하여, 2008년 11월 21일 상호접속료 제도개선에 관한 12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동 합의를 반영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27호, 2008년 1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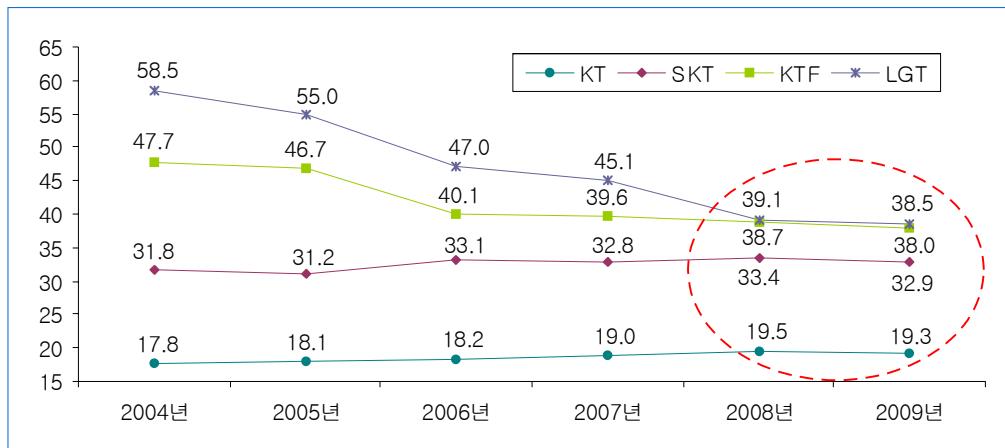
이번 개정은 BcN 등 차세대 유·무선망의 투자 촉진과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비자 이익의 증대를 위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유·

무선 전화망과 인터넷 전화망의 2008~2009년도 상호접속료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유선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를 감면토록 하고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도 강화함으로써 신규서비스인 인터넷전화의 수익성과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43〉 상호접속료 개정 주요내용

(단위: 원/분)

구 분	유선전화망 (KT 등)	이동전화망			인터넷전화망
		SKT	KTF	LGT	
기준	2007년	18.9849	32.7757	39.6049	45.1317
개정 내용	2008년	19.4850	33.4068	38.7062	39.0860
	2009년	19.3112	32.9318	37.9619	38.5302
					7.6674



3.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가. 휴대인터넷(WiBro)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는 이동 무선 광대역 데이터통신 서비스인 Mobile WiMAX 표준 동작모드의 한 가지로서 Mobile WiMAX의 한국 버전을 의미한다.

WiBro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결합, 통합 기반 접속망의 조성을 통해 유·무선 통합

을 본격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WiBro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4세대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와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가 넓고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저조한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과 LAN망 구축에 WiBro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및 관련 장비의 해외진출 전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WiBro의 기술적 특성

우리나라 WiBro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⁹⁾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내와 실외는 물론 이동 중 (120Km/h 이상)에 가입자당 최대 3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이론상 기지국 당 최대 전송용량은 38Mbps)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OFDMA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로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고속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Mobile WiMAX와 한국형 Mobile WiMAX인 WiBro를 비교하면 〈표 III-44〉와 같다.

〈표 III-44〉 Mobile WiMAX와 WiBro 비교

구 분	Mobile WiMAX(802.16e)	WiBro
주파수대역(GHz)	2.3, 2.5(미국), 3.5 등	2.3
채널대역폭(MHz)	3.5, 5, 7, 8.75, 10(미국) 등	8.75
다중접속 방식	OFDMA	OFDMA

2) WiBro 활성화 정책

WiBro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서비스 활성화는 다소 저조하여 가입자수가 19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WiBro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9)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무선 통신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우선 2008년 12월 WiBro에 010 번호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휴대인터넷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는 WiBro에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동전화, 시내전화 등 다른 통신망 가입자들과 음성통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WiBro 서비스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WiBro를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iBro 사업자는 이동전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들은 음성통화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번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8년에도 WiBro 서비스의 제공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T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22개 시 모두를 개통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총 28개 시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하였다. SKT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 전역에 대한 개통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42개 시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KT와 SKT가 2008년 WiBro망 구축 시 Wave 2¹⁰⁾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더욱 빠른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WiBro 음성통화 서비스의 본격적인 제공은 WiBro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개발은 물론 제조업체의 단말기 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등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9년 12월 경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3G 서비스

국내 이동통신 총 누적가입자 수가 4,56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G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650만명으로 비약적인 가입자 증가를 이루고 있다.

10) 와이브로 1단계 기술인 Wave 1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2배 이상 높은 기술(다운로드/업로드 속도가 Wave 1은 20M/5M, Wave 2는 40M/10M)

물론 여전히 총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36% 정도로서 CDMA 보다는 적은 규모이나 본격적인 3G 서비스가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초기 CDMA에 비하여 높은 가입자 증가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3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3G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제공하고, 기지국·중계기 등과 같은 망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실적을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를 독려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평가는 소비자 단체, 관련 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의 민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전국 180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측정을 2008년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3G 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정을 도심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 등의 외곽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옥내, KTX, 지하철 등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곳에 대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투자 독려로 인해 사업자들은 3G 설비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3G 서비스의 품질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SKT의 경우 중계기 설비는 2007년 옥내 중계기 29,320개에서 2008년 41,589개로, 옥외 중계기는 2007년 232,373개에서 2008년 257,680개로 증설되고, 기지국은 12,230개에서 12,820개로 확충되었다. KTF 중계기가 2007년 옥내 중계기 30,464개에서 2008년 38,363개로, 옥외 중계기는 2007년도 145,092개에서 2008년도 158,496개로 증설되었고, 기지국이 12,552개에서 12,665개로 확대되어 망 확충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도 2~3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의 서비스 외곽 지역에 대한 품질이 양호하게 측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서비스 음영 지역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3G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설정 해제, 이동전화 기기

의 위피탑재 의무화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즉, 그동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08년 7월부터 WCDMA 단말기에 대한 잠금설정(USIM¹¹⁾ Lock)을 해제하여 사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¹²⁾를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나 2009년 4월부터 위피 탑재 의무화를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 외국산 단말기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가. 전파자원의 이용 활성화

전파는 방송과 통신 이외에도 항공기 관리, 고층건물 관리, 실험용 등 일상생활과 전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면, 한정된 공공자원으로서 보유량 및 사용형태에 따라 국가 경제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간 혼신을 방지하고 주파수 이용의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의 국제 추세를 파악하고,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국내 입장을 반영하는 것 등도 전파이용 활성화의 중요한 분야이다. (舊)정보통신부는 전파이용의 보편화, 광대역화 등 전파이용의 증대에 대비하여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제분배 변경 시 주파수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2000년에는 주파수의 회수·재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
- 11)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범용 가입자 식별카드): 휴대폰 단말기 내부에 삽입되는 가입자 식별카드로 통화에 필요한 인증용 Key · 식별정보 · 주소록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음
- 12)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으로 PC 운영체계와 같이 휴대폰에 내장되어 각종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도입하고, 2005년에는 회수·재배치 절차, 손실보상 규정을 보완하는 등 회수·재배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800MHz 대역을 포함한 주요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채널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공공부문과 산업현장에서의 주파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1)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미래의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2008년 12월 24일).

일반적으로 800MHz 대역과 900MHz 대역 등 저주파수 대역은 전파 품질이 우수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특정 사업자만 800MHz 대역을 보유하고 있어 불공정경쟁의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는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통해 800MHz 대역의 셀룰러 주파수(50MHz)는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시 20MHz폭을 회수토록 하고, 공공용 및 FM방송 중계용 등으로 사용하는 900MHz 대역에서도 재배치를 통하여 20MHz폭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900MHz 대역의 FM 중계용 주파수를 1.7GHz 대역으로 이전하고, RFID¹³⁾, USN¹⁴⁾ 및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900MHz 대역 내에서 재배치함으로써 기존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미래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5GHz 대역, 3.4~3.6GHz 대역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회수하여 차세대 이동통신(IMT Advanced) 주파수 용도로 재배분하고, 2011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세대 PCS 용도의 1.8GHz 대역 60MHz 대역 폭은 우선 사업자에게 3G 이상의 용도로 재할당하기로 하였다.

13)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14)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모든 사물에 RFID를 부착해 인터넷에 연결하여 정보를 인식, 관리하는 네트워크

[그림 III-6] 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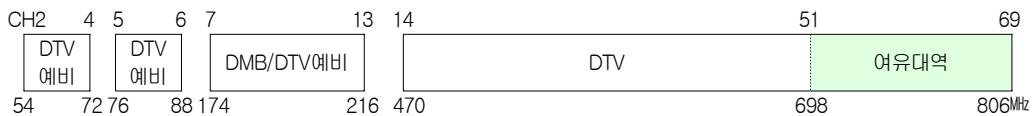


2)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채널배치 계획의 수립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날로그 TV 방송은 2012년 12월말까지 종료되고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TV 방송국의 송신 주파수에 대한 ‘디지털 TV 채널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2008년 12월 22일).

디지털 TV 채널배치 계획은 14~51번(38개 채널)을 DTV 주파수 대역으로 확정하고, 2~6번(5개 채널)은 DTV 예비용으로 확보하되 채널배치를 보류하며, 7~13번(7개 채널)은 지상파 DMB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역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DTV 예비용으로도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림 III-7] 우리나라 TV 방송 주파수 대역 이용계획



나. 주파수 공급 확대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방, 행정, 치안, 교통 등 일상 생활에서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전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파수 공급 및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항공, 항해 등의

분야에서도 전파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도의 주파수 공급은 국제적인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소출력 생활 밀접형 주파수의 신규 분배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하였다.

1) 소출력 생활 밀접형 주파수 신규 분배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건물 내 조명 제어, 자동문 센서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물체감지 센서용 주파수를 10GHz 대역에서 신규 분배하고 관련 무선설비용 기술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소출력 무선센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2008년 12월 29일). 특히, 10GHz 대역의 주파수 분배방안 마련 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는 무선기기 제조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결과에 따른 주파수 분배 개정

200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였으며(2008년 12월 31일)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45〉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

주파수 대역	현행 분배	개정 분배
7,100~7,200kHz	방송	아마추어, 고정, 이동
698~740MHz	방송	방송, 고정, 이동
960~1,164MHz	항공무선행	항공무선행, 항공이동(R)
5,091~5,150MHz	항공무선행	항공무선행, 항공이동
9,300~9,500MHz	무선행, 무선표정(2순위)	무선행, 지구탐사위성, 우주연구, 무선표정(1순위)

주: R(Regular)

다.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던 방송서비스가 디지털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단순 오디오 정보 외에 영상이 부가되어 보는 라디오로 발전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 시청자의 편의를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IPTV, DMB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등장하여 시청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 방송매체의 고유 기능인 정보 전달 기능이 향상된 이러한 다양한 방송 서비스는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방송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과 방문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이 국내문화 및 생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 문화 및 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008년 5월 수도권·부산권·광주권에 영어 FM 방송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우선 수도권·부산권·광주권을 중심으로 영어 FM 방송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시에 대해 2008년 7월 수도권 영어 FM 방송국 개설을 허가하였다. 서울시에 이어 2008년 10월 광주시 산하 광주영어방송재단에 광주 영어 FM 방송국(98.7MHz, 1KW)을 허가하였고, 2008년 12월 부산시 산하 부산영어방송재단에도 부산 영어 FM 방송국(90.5MHz, 1KW)을 허가하였다.

다음으로 2008년 8월 위성 DMB 서비스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오디오 신호에 보조 영상(슬라이드 이미지) 신호를 함께 전송하는 ‘비주얼라디오’ 서비스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의 단순한 목소리만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스튜디오 안의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시청자는 더욱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8년 8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수도권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던 고화질(HD; High Definition) 지상파 방송 재송신 서비스를 전국

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 및 전파법 제21조·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제16 위성방송국과 제17 위성방송국의 개설을 허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케이블 TV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 7월 상·하향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고 MPEG-4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HD 채널이 확대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그간 케이블 TV 방송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를 2년간 유예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케이블 방송사의 사업여건을 크게 제고시켰다.

라. 전파이용 기술 연구 및 개발

위성 관련기술은 방송, 통신, 기상,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미래 융합산업의 핵심기반 기술로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 IT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EMC¹⁵⁾ 설계 기술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위성통신 기술개발 추진

위성통신 기술은 미래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로서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여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통신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력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2008년에는 통신해양기상위성 통신탑제체의 통신중계시스템·안테나시스템·시험지구국·관제시스템 등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위성항법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위성신호감시국·지상국시스템·탐색구조단말기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 중소 IT 기업 EMC 기술개발 지원

중소 IT 기업에 대해 기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EMC 소재·부품산업의 동

15)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성): 주어진 전자파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자기가 내는 전자파 방해를 제한하여 다른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장비나 시스템의 능력

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EMC 기술 및 규격의 동향 파악, 의견 수렴 등을 위해 EMC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풀(pool)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외 더불어 중소 IT 기업의 EMC 기술 지원, 기술교육 실시, 전문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소 업체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III-46〉 EMC 기술지원 관련 성과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실적	전년 대비 상승률
기술 지원건수(건)	60	146	195	203	104%
제품개발 기간 단축율(%)	—	—	—	74	—
산업체 전문교육(명)	340	345	396	544	137%
정보DB 구축 및 정보 제공(건)	22,970	39,784	42,525	44,644	105%
수혜자의 경제적 효과(억원)	60	87	93	96	103%
국내기술 교류 및 협력(건)	—	26	38	42	111%

5.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가.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전파자원은 무선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거쳐서 주파수를 이용하게 된다. 희소한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주파수 할당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주파수 할당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당 신청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는 시장 기반의 할당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 요한 상황이다. 주파수 경매와 같은 시장 기반의 주파수 할당은 융합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행정적인 주파수 가치의 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원리를 반영하여 주파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파

수 이용권을 명확화하기 위한 전파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1)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마련

주파수를 신규로 할당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 시점의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경매)으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2009년 1월 20일 국회 제출).

이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간에 가격을 경쟁함으로써 주파수의 할당이 결정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주파수의 헐값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경쟁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할당 신청자는 최소 경쟁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경매 참여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상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도록 하였다.

〈표 III-47〉 OECD 주요 국가별 주파수 경매제 도입현황

국가	도입여부	비 고	국가	도입여부	비 고
미국	○	‘94년 PCS 경매시 도입	벨기에	○	‘01년 3G 주파수 경매
영국	○	‘00년 3G 주파수 경매	이탈리아	○	‘00년 3G 주파수 경매
호주	○	‘93년 PCS 경매시 도입	프랑스	○	규정 도입 후 경매 예정
독일	○	‘99년 2G 사업자 추가 선정시 도입	핀란드	○	규정 도입 후 경매 예정

주: OECD 국가(30개국) 중 경매제 미도입 국가로는 한국,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가 있음

2) 주파수 이용권 명확화 등 전파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개정(2008년 6월 13일)을 통해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양수·임차하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존가입자의 보호와 주파수의 독과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주파수 대가할당의 심사기준으로서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파수 할당대가의 반환과 관련하여 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할당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파수 이용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나. 무선국 운용 규제 완화

무선국은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와 함께 전파관리의 핵심요소이다. 2008년 12월말 현재 101만국(허가·신고대상에 한함)의 무선국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파 이용의 보편화로 무선국 관련 산업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비의 성능이 개선되어 수신기의 수신감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전파이용이 보편화 되어 무선국 수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무선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선국 허가·검사 등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파혼신에 대해서는 관리를 효율화시키는 등 무선국 관리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주파수 할당을 받은 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개선하였다. 대가할당 사업자의 경우 ‘신고’, 심사할당 사업자의 경우 ‘허가’ 제로 운영되던 기존의 절차를 ‘신고’ 제로 일원화하는 등 신고 대상 무선국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PCS¹⁶⁾, 지역 주파수 공용 통신(TRS) 등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의 개설 절차를 신고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국가·지역 간에 전파가 혼신·간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파수 공용 통신·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은 허가제를 유지하도록 했다(전파법 시행령 개정, 2008년 6월 20일). 또한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 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 이동국은 휴대용 무선기기의 경우 혼신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완화시키도록 하였다(전파법 시행령 개정, 2008년 12월 14일).

16)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개인이동통신): 1997년 도입된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방식으로 현재 국내는 KTF, LGT가 1.8GHz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임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내구성이 향상된 무선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허가 및 검사의 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방송국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무선국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전파법 시행령 개정, 2008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되는 무선국으로서 전파 혼신·간섭의 우려가 적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표본추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전파법 개정(안)에 마련하였다(전파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9년 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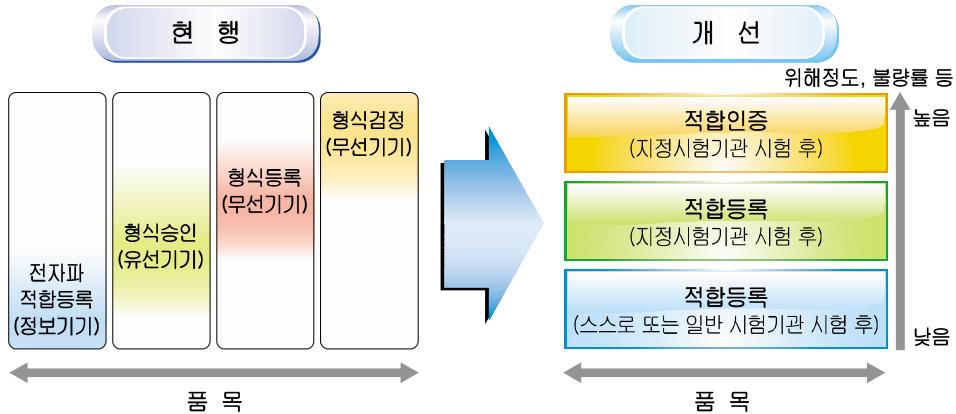
다.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의 개선

현재 대상기기의 용도에 따라 인증 유형을 분류하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일반 무선기기 형식등록, 인명안전 관련 무선기기 형식검정, 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등 의 4가지 적합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기의 성능·품질 향상,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다양한 융복합기기의 사용 증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시험·인증) 체계를 개선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 적합성 평가 관련 법체계 정비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식승인 관련 규정을 전파법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대상 기기의 용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적합성 평가체계를 위해정도, 불량률 및 인명안전 관련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인증유형을 재분류하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 1월 20일 국회 제출). 제조자가 스스로 제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등록의 경우 정부의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절차가 면제되어 적합성 평가기간은 최대 30일, 비용은 건당 70~180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8]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 개선방안



2) 잠정 인증제도 도입

또한 전파법 개정안은 적합성 평가기준(기술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에는 방송통신망 및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 인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잠정 인증을 받은 기기는 일정기간 동안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판매대수, 설치지역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잠정 인증한 기기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기준 또는 평가절차 등이 마련된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 등)를 받도록 하였다. 잠정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6개월~1년에서 1~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인증관련 법체계 정비

방송통신기기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적합성 평가체계를 시장친화적인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고 전기통신기본법상 인증 관련 규정을 전파법으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인증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하위 법령이나 고시에 분산되어 있던 운영지침, 수수료, 기술기준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나 실무담당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후관리 강화

적합성 평가절차 간소화, 잠정 인증제도 도입 등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 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일환으로 적합등록을 한 자에 대한 기술문서 보관 의무화, 방송통신기기 제조·수입자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기기 제출 요구, 부적합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화, 시험기관 3진 아웃제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조사 및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현장 출입권,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도 전파법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한편, 국내 기업의 칠레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기기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2008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로 변경하였다(2008년 7월).

제 4 절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

1. 인터넷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가. 인터넷 침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 제고

2008년 한 해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침해사고의 통계에 따르면 해킹사고는 총 15,940건으로서 2007년의 21,732건에 비해 26.7% 감소하였으나 웹·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총 8,469건으로서 2007년의 5,996건에 비해 4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발생하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특징은 악성코드 유포·웹 해킹·무선 랜 해킹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금전적인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DDoS)¹⁷⁾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코드의 신·변종 출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17)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여러 분산된 PC에서 특정시스템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트래픽을 전송하여 특정 시스템의 작동을 느리게 하거나 정지시키는 공격기법, 통상 DDoS 공격에는 BotNet(봇넷, 봇에 감염된 PC들의 네트워크)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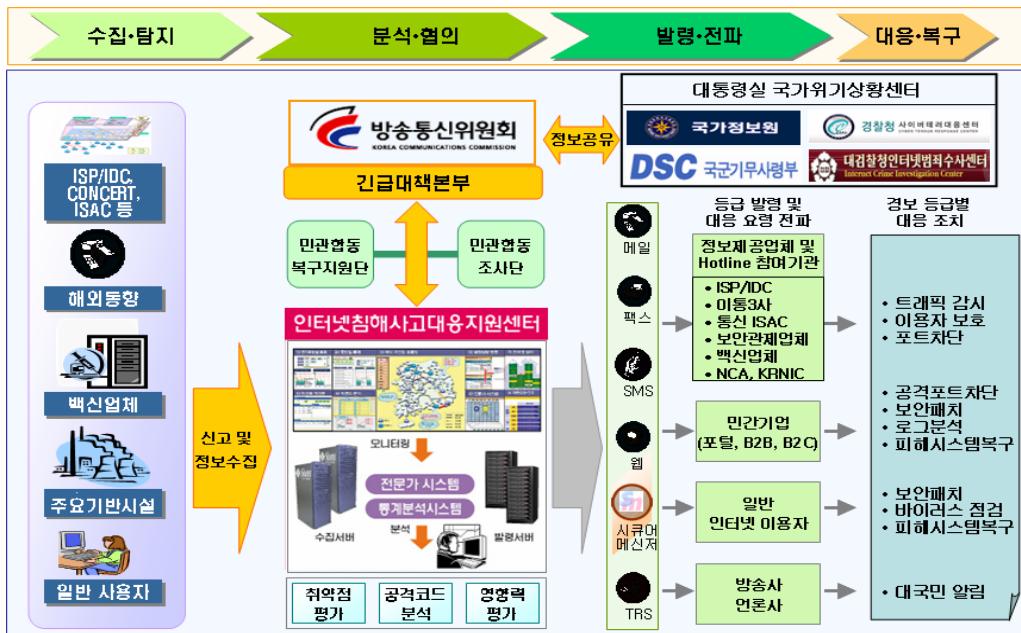
이다. 특히 DDoS 공격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표 III-48〉 해킹·바이러스 신고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웜·바이러스	16,093건	7,789건	5,996건	8,469건
해킹	33,633건	26,808건	21,732건	15,940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치된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를 통하여 국내 인터넷 상의 위협을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경찰 및 주요 통신사업자, 보안·백신업체 등 31개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림 III-9〕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이러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III-9]와 같다. 대응과정은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에서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탐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보 발령 및 대국민 안내를 하고 국가위기상황센터,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침해사고의 정도에 따라 긴급대책본부, 민관합동 조사단 및 민관합동 복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및 ‘사이버 안전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08년 10월)’을 근거로 하여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전(민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적용된다. 즉, 4단계로 구분한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는 바, 단계별 판단기준과 대응조치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면 〈표 III-49〉와 같다.

〈표 III-49〉 위기경보 수준

구분	판단 기준	대응 방향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가 높은 웜·바이러스, 취약점, 해킹기법 및 공격코드의 출현으로 인해 피해 가능성 증대 ○ 해외에서 침해사고가 확산되거나 일부가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 될 가능성 증대 ○ 국내 인터넷에 이상 트래픽의 발생 가능성 증대 	징후 감시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웜·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국지적 피해 발생 ○ 국지적인 인터넷 소통 장애가 나타나거나, 주요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매우 우려되는 경우 ○ ISP/IDC, 일반 사용자, 기업 등의 긴급 대응 및 보안 태세 강화가 필요 	보안 강화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ISP망 또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피해 발생 ○ 해킹 및 신종 위협으로 주요기업 및 포털, 연구소 등 민간부문에 중대한 피해 발생 ○ 웜·바이러스,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해 민간부문에 있어 다수 기업 및 이용자 등의 피해 발생 ○ 상황 해결을 위해 민·관 각 부문의 협조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 	긴급 대응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터넷 전 부문에 소통장애 발생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피해로 대국민 서비스 지장 발생 ○ 민간부분 전반에 대규모 침해사고 피해 발생 ○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전면 대응

1)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7월 22일에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보호, 유해정보 대응 및 정보보호 기반 조성의 4대 부문에서 50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8년 11월과 12월에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III-50〉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

분야	추진 전략	과제
침해 사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정보보호 예산 확대 등 22개
개인 정보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 구제 체계 정비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11개
유해 정보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 10개
기반 조성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정보보호 캠페인 등 7개

2)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 대응 강화 활동

국내 인터넷의 이상 징후는 154개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 및 집적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IDC) 등의 트래픽 및 공격 정보, 루트 도메인과 kr 도메인 등의 DNS 정보, 500여개 주요 홈페이지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를 통하여 국내 인터넷에 대한 위협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 이외에 국회의원 선거, 베이징 올림픽 등과 같은 주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웹 사이트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DDoS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연동망 구간 3곳에 DDoS 트래픽을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08년 12월에 구축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PC가 악성봇¹⁸⁾에 감염되지 않

18) 악성봇: 로봇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나 명령자의 명령에 의해 원격에서 제어되거나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코드이다. 운영 체계나 비밀 번호의 취약점 혹은 웜

도록 악성봇 명령·제어 서버를 차단(1,678개, 누적: 10,836개)하였고, 대학 및 공공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DNS 싱크홀¹⁹⁾을 적용하였다.

이 외에도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악성봇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허위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122개 제품에 대해 설치 시 동의 여부 및 이용약관 제공 유무 등 36개 항목을 점검하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ISP, IDC, 쇼핑몰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232개 업체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다.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0월에 LG파워콤, 삼성네트웍스, 세종텔레콤 등 신규로 지정하기로 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하여 지정대상 시설의 범위, 지정요건 및 절차, 자체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KT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3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중간 이행점검을 통해 2007년 7월에 수립된 각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중 2008년에 시행하기로 계획된 추진계획들의 이행 여부, 변경 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4) 신규서비스 보안대책 마련

VoIP, IPTV 등 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해킹의 대상과 위협이 더욱 증가할

바이러스의 백도어 등을 이용하여 전파되며, 주로 IRC 프로토콜을 이용한 연결을 통해 스팸 메일 전송이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에 악용되는 것을 나타냄

19) DNS 싱크홀: 공격자로부터 봇감염 PC들에게 하달하는 악의적인 명령을 차단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봇에 감염된 PC는 공격자로부터 명령을 전달받기 위해 공격자가 지정한 봇 명령/제어서버로의 자동연결을 시도하는데, 이때 실제 봇 명령/제어 서버의 IP주소가 아닌 제3의 다른 IP주소로 응답함으로써 공격자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에는 VoIP, 무선랜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침해대응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VoIP 보안통신/세션 제어 기술’ 등과 같은 3건의 기술을 산업체에게 이전하고 상용화를 통해 VoIP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5) 국내·외 침해사고 협력체계 구축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비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중소 IDC, 관제업체, SO 등 신규 사업자 55개를 추가하는 등 침해사고 정보수집 대상을 154 개 기관, 415개소로 확대하였고, 주요 침해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원인분석과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전문가 풀’을 재구성하여 제3기 전문가 풀을 85명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아·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호주와 함께 APEC-TEL에서 ‘VoIP Security Guideline’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KrCERT/CC²⁰⁾는 국가 대표 CERT로서 미국, 일본, 중국 및 호주 CERT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APCERT²¹⁾(아·태지역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8년에는 APCERT 회원국 13개 국가의 14개 CERT와 함께 국제 침해사고 공동 대응훈련에 참여하였다.

6)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소기업 등 보안 취약계층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웹 취약점 점검 서

20) KrCERT/CC(KOREA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의 침해사고 대응팀으로서 국내 전산망의 침해사고 대응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단일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조직, 1998년 국제침해사고대응기구(FIRST)에 한국대표로 가입

21) APCERT(Asia 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2003년에 아시아, 태평양 주변국의 CERT조직이 모여 결성한 침해사고협의체로서 한국은 KrCERT/CC와 SecurityMap Networks가 창립멤버로 활동하였음

비스 1,520건, 공개 웹방화벽 기술 지원 657건, PC 원격점검 서비스 1,492건 등을 시행하였다. 105개 중·소규모 IT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도 취약점 점검, 위험 관리, 보호대책 수립 등의 기술지원을 하였다.

또한 인포뱅크, KIS 정보통신 등 5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하였으며 후이즈, (주)컴투스 등 55개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보호대책 수립 등에 대한 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사업과 함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설정, DDoS 대응, 스팸 및 바이러스 대응 등과 관련하여 중·소규모 기업을 위한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가이드’를 2008년 10월에 개발하였다.

나.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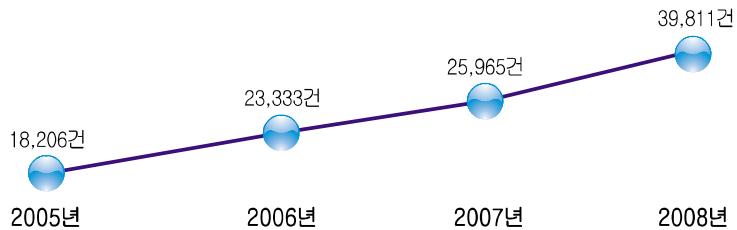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위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 및 오·남용 등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대형 통신사업자에서 600만 건에 해당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밖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웹사이트의 관리를 부주의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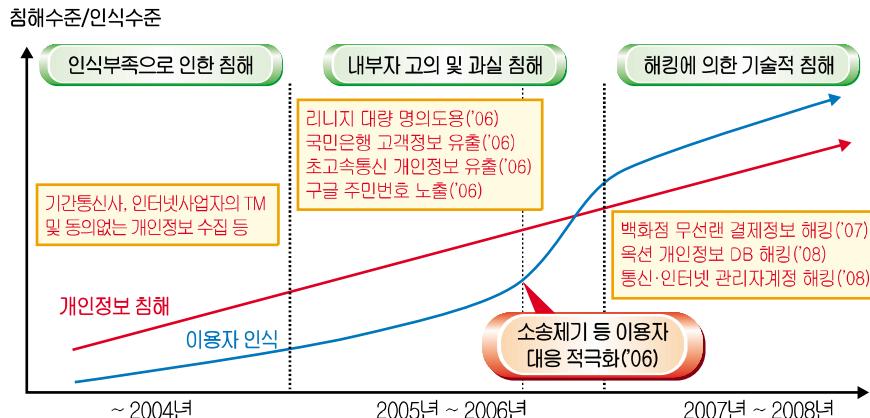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특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이 관리 소홀이나 내부자의 고의적 행위 등과 같은 관리적인 형태에서 해킹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에 의한 형태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연도별 증가추세와 개인정보 침해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I-10] 및 [그림 III-11]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그림 III-10] 개인정보 상담·신고 접수 현황



[그림 III-11]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변화 추이



1)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2008년 6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및 형별 강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 가입방법의 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가 높고 부당이득 취득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7가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매출액의 최대 1/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1천만원 이하)에서 형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누설한 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를 마련하였다.

한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이 방지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태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기술적 대응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DB 대량 보유 사업자 및 유출사고 발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5~7월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3개사, 9월에는 SO 및 포털 사업자 8개사 그리고 10~11월에는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08년 6월에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그리고 2008년 8월에는 KT 및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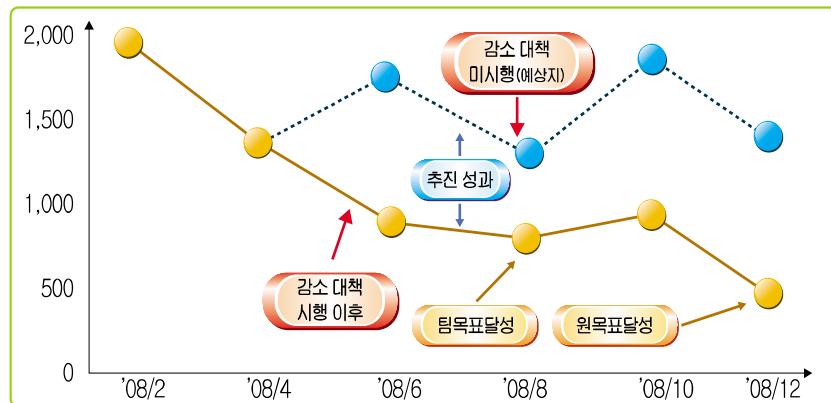
또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수 상위 웹사이트 2만여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17,869개 위반 사이트 중 56%에 해당하는 10,010개 사이트에 대해서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2008년 9월에는 한글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점검·삭제를 위하여 구글(Google)과 함께 3회에 걸쳐 핫라인을 운영하였으며 삭제기간, 삭제 요청 방법 등 6개 사항에 합의하였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 노출 원인 분석 및 컨설팅 500회, 노출업체 대상 예방 교육 200회를 실시하고 대량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삭제 확대 등을 통하여 일평균 노출건수를 2007년 12월 910건에서 2008년 12월에는 441건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국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중국어(중국, 대만) 및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격월로 구글을 검색하고, 2008년 8월 이

후에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구글을 점검하였다. 또한 CIIA(중국정보산업협회) 및 주요 3대 포털 사업자와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협조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일본 IPA(정보처리추진기구)와 핫라인 구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림 III-12) 구글(Google)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점검 실적
(단위: 건)



또한 전송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보안서버의 보급을 확대하였다. 향후에는 일 방문자 500명 이상의 웹사이트 3만여개 등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되 2009년 이후에는 이를 영세 쇼핑몰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안서버 보급대상이 2007년 21,083개에서 2008년에는 33,000개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50,000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3월에서 10월까지 일 방문자수 상위 기업 및 상장사 등 25,000개 국내 주요 사이트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여 계도하고, 2008년 6월에는 웹사이트의 개발 시 보안서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점검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인터넷상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i-PIN(internet-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i-PIN의 발급 단계를 6단계에서 4

단계로 축소하고, ‘i-PIN과 함께 하는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등을 시행하여 인터넷에서의 명의도용 방지를 추진하였다.

3)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6월에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기업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과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2008년 9월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연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총 195개 학교의 초·중·고생, 학부모, 교원, 공무원 등 112,788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5월에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계명을 제작하여 반상회 홍보자료로 배포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최한 건전 정보문화 캠페인을 통하여 수도권 외 4개 권역에 이를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5월에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5개 협회와 협력하여 총 3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보안뉴스 등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제공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에는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u-Clean Concert’ 행사를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전방위에 걸친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등 5개 협회와 협력하여,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전개하여 약 6백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개인위치정보 보호체계 합리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위치정보 보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통보 방법을 ‘즉시 통보’에서 ‘정보주체 선택’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위치정보 보호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위치정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5월, 11월)하였다.

다.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는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 매체로서의 기능을 넘어 커뮤니티 등을 통한 여론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쇼핑, 광고, 온라인뱅킹 등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이 일상화되고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국민생활의 중요한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활용이 증대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음란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거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욕설, 비방 등의 맷글을 게재하는 ‘악플’이 등장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전달되어 이용자 피해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과 발전은 우리사회 전반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익과 후생을 증진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가 진화하고 이용이 확대될수록 이에 수반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고 함)에 대한 유통질서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이용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여 3만여건의 음란성·사행성·폭력성 등 의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스팸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1인당 스팸 수신량이 2004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4배 이상 감소하였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인터넷 이용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 즉, 본인확인제, 임시조치 등 기존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포털 등의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용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그림 III-13]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1) 인터넷 이용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임시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제도 신설,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이용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는 불법 스팸 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화·팩스 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사전수신 동의제(Opt-in)의 예외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2)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정화 기능 제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자율적인 인터넷 정화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8년 6월~7월 포털 및 P2P 사업자 등의 자체 유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음란물 차단 시스템 도입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불법사이트의 운영이 국제화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도박·음란물 등 불법·유해 사이트의 국

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주요 ISP 사업자의 URL 차단장비 도입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 교재를 개발하고, 전국 240개 학교의 초·중학교 학생 9,600명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넷 윤리홍보 홈페이지(www.nethics.or.kr)를 구축하였다.

3)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9월 불법 스팸방지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또한 무선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란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과금 대행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토록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와 과금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지침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사업자 간에 협력체계도 강화토록 함으로써 무선인터넷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수사 및 단속 권한을 확보하는 등 악성 스팸머리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 및 수사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원링 스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링 스팸을 차단하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메일 스팸 차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매시간 스팸발송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배포하는 IP 기반의 등급별 차단 리스트인 ‘실시간 스팸 차단 리스트(RBL; Real-time Blocking List)’를 보급하는 한편 이메일 발신지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스팸을 차단하는 인증기술 중 ‘메일서버 등록제(SPF; Sender Policy Framework)’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기존의 초고속 정보통신망보다 50배 이상 빠른 BcN을 구축하여 IPTV, 인터넷 영상전화 및 신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I-51〉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BcN 포함)

(단위: 명)

구 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가입건수	1.4만	387만	1,041만	1,192만	1,404만	1,471만	1,548만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고도화 노력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성과를 낳았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익성이 부재하여 사업자들의 BcN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고, 인터넷 영상전화 등 BcN 서비스의 사업자간·이종망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속도·해상도 등의 품질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유무선 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와 신규 융합서비스 출현에 대비하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관련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BcN의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는 BcN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2008년 11월에 인터넷 영상전화 등 다양한 BcN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cN 서비스의 연동 규격을 제시하고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인터넷 영상전화 및 IPTV의 속도와 해상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 영상전화의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는 S/W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IPTV, WiBro 및 HSDPA²²⁾ 등과 같은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측정시스

22)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고속 하향 패킷 접속): WCDMA가 진화된 기술방식으로 고속이동(최대 시속 25km) 중에도 화상전화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템을 고도화시켰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농어촌 지역에 BcN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BcN의 가입자는 2008년 12월에 2,636만명(유선 962만 가구, 무선 1,674만 가입자)으로서 당초 목표인 2,130만 가입자를 초과하였다.

〈표 III-52〉 연도별 BcN 보급 목표

(단위: 만 가구)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가구수	701	920	1,100	1,200
무선 가입자수	563	1,210	1,730	2,300
합 계	1,264	2,130	2,830	3,500

2)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1월에는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2008~2012년) IPTV 등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간의 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추진전략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표준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BcN (50~100Mbps) 보다 전송속도가 10배나 빠른 네트워크를 통하여 3차원 영상회의 등 대용량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이 추진될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댁내까지 광케이블이 인입되는 ‘기가비트 PON(Passive Optical Network)’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가급 가입자망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케이블 DOCSIS²³⁾ 3.0, GE-PON²⁴⁾ 등의 기술을 이용하

제공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23) DOCSIS(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s): 종합 유선 방송(CATV)과 개인

여 약 200개의 시범가구를 대상으로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III-53〉 3단계 BcN 시범사업 1차년도(2008년) 컨소시엄 구성 현황

(단위: 원)

컨소시엄	주관사 (참여사수)	정부 출연금	민간출연금 (현금/현물)	주요내용
옥타브	KT(5개사)	9.6억	8.6억/29.6억	
유비넷	SKT(11개사)	9.1억	12.4억/93.6억	
광개토	LG네이콤(5개사)	8.7억	9.8억/26.3억	
케이블BcN	CJ케이블넷(9개사)	8.1억	5.3억/17.8억	
합 계	34개사	35.5억	36.1억/167.3억	핵심기술 확보 ○ 서비스 상호연동 ○ 이종망간 연동성 ○ 기가인터넷

2008년에는 BcN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신사업자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화 전담반을 운영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국내 4대 주요 IDC에 품질측정 시스템을 분산 배치하는 등 품질측정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이와 아울러 IPTV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속도·손실 등 품질 지표 및 기준, 품질측정 기법 등을 마련하는 등 BcN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3) 광대역 통합 연구개발망 및 All-IP 서비스 기반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91개 기관을 광대역 통합 연구개발망으로 상호 연계하고, 국내 6개 대도시 지역에 연구시험 환경을 구축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대역 통합 연구개발망을 APII²⁵⁾, TEIN²⁶⁾ 등의 국제 연구

용 컴퓨터(PC), 비즈니스 컴퓨터, 텔레비전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 신호를 제어하는 케이블 모뎀용 표준 인터페이스

- 24) GE-PON(Gigabit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광통신가입자망을 통해 기가비트 이더넷을 제공하는 FTTH 기술로 하나의 광통신망을 통해 일반 가입자에 수백 Mbps급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 25) 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한국과 일본이 공동체안한 APEC TEL의 주요 사업으로 한·일 및 아·태 지역간 연구망 관련 운영정책과 망 활용연구 수행
- 26)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아시아·유럽지역간의 국제연구개발망으로 2007

망과 연동함으로써 국제 공동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10월에는 All-IP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무선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유·무선 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IP-USN²⁷⁾의 통합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나. 인터넷 이용 활성화 지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2008년 말 현재 만 6세 이상 인구의 77.1%인 3,536만명이며, 국제 인터넷 주소할당 기구(ICANN)로부터 2008년 9월 말을 기준으로 6,611만개의 인터넷 주소를 확보하여 이중 74.1%를 사용 중이다.

인터넷 환경의 중심이 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는 별다른 규제 없이 하루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표 III-54〉와 [그림 III-14]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54〉 국내 4대 포털사의 일평균 방문자수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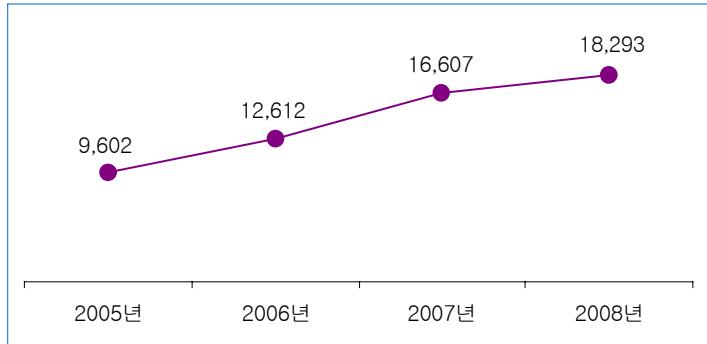
구 분	일평균 방문자수
NHN(네이버)	1,518
다음	1,209
SK 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사이월드)	1,583
KTH	300
합 계	4,610

출처: 매트릭스코퍼레이션(2008. 12)

년 1월부터 유럽의 GEANT와 아시아 10개국이 연결되어 IT 및 첨단 응용기술 활용연구, 관련 국제협력 등을 수행

- 27) IP-USN(Internet Protocol-Ubiqitous Sensor Network): USN 기술과 IP 기술을 접목시킨 방식으로 IP 인프라와 USN 인프라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센서 노드에 IP를 탑재하여 광범위한 확장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그림 III-14] 국내 4대 포털사의 매출 추이
(단위: 억원)



출처: 각사 IR(Investor Relation: 기업실적홍보) 자료 참조

한편 인터넷 주소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주소 자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IPv4)는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도 2013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접속이 이동통신사의 포털에만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늘어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인터넷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다음과 같은 제반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1) 인터넷 주소자원의 합리적 할당 및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에 인터넷 이용의 핵심인 인터넷 주소자원의 부적합한 활용을 방지하고, 인터넷 주소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한편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IPv6)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현 인터넷 주소자원의 수급 현황 및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 등을 고려한 인터넷 주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2) 무선인터넷 및 IPv6 활성화

국내 통신사업자의 IPv6 도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ISP 20개사의 백본망을 대상으로 IPv6 지원 통신장비 대수, IPv6 설정 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 9월과 10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인터넷의 품질 보장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15,069개 도메인 네임서버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무선인터넷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체계를 개선하고, 이동전화사와 CP간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유무선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데이터 요금 정액제 확대 등 이용자 위주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가.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통신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 유형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실조사 위주의 피해구제 방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해결이 미흡한 실정이다.

통신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후적 피해구제 위주로 이루어졌던 이용자 보호 활동에서 벗어나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주의보나 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다수의 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나 IPTV와 같은 신규서비스는 이용자가 신뢰성 있는 품질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정부 주도의 품질평가 추진이 필요하다. 그것은 초고속인터넷이 이미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하였고 방송통신·인터넷의 융합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품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품질보장 기준인 업체의 ‘최저 보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론상 최고속도가 실제 속도처럼 광고되고 있는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2008년에 취하였다.

1)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피해주의보 2건을 발령하였고 사업자 가이드라인 5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포털, 공공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98개 기관에 이용자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표 III-55〉 2008년도 이용자 피해 예방 추진 현황

(단위: 건)

구 분	건수	추진 내용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회원 가입 등을 이용한 휴대폰/ARS 소액결제 피해주의보(2월) ○ 이동전화 가입 시 ‘공짜 폰’ 피해주의보(9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할인금 반환 면제 가이드라인(1월) ○ 유·무선 전화결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7월)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게시 가이드라인(8월) ○ Pre-IPTV 콘텐츠 유료화 가이드라인(9월) ○ 초고속인터넷 경품 위약금 가이드라인(10월)
이용자 교육용 콘텐츠 보급	98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콘텐츠(11월) ○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12월)

한편 2008년 12월 5일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및 LG파워콤 등 5대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하였다. 불공정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혹은 전기통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과 같은 부당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 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내용은 〈표 III-56〉과 같다.

〈표 III-56〉 5대 통신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개선내용

구 분	문제점	개 선
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계시만으로 서비스의 일방적 중지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통지 방법을 추가하도록 개선
개인 정보	고객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의 불명확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조항 수정
자동 연장	약정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	약정계약 만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확대
계약 철회	이용계약의 철회사유 제한	이용계약 철회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
사업자 손해배상	게시물 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면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
위치기반 서비스 피해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 손해발생 시 책임범위 제한	사업자가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 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관할법원	관할법원 제한	관할법원 제한 삭제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관을 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의 속도, 지연시간, 손실률 등에 대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8년 6월 12일에 공개함으로써 사업자의 품질개선(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품질평가는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7개 사업자의 13개 상품을 대상으로 기술적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상품별 다운로드/업로드 평균속도는 광고된 최고속도의 75% 이상 수준이나 최저 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된 최고속도의 1%~10% 수준이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보통 이

상으로 밝혀져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대한 ‘최저 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주요 7개)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 보장속도를 최고속도의 5~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²⁸⁾.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용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7년도의 품질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2008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계획에 반영하였다²⁹⁾.

〈표 III-57〉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기술적 평가 종합 결과

서비스명	광고 최고속도 (Down/Up)	평균속도(Mbps)		지연시간 (ms)	손실률 (%)	광고최고속도 대비 비율 (다운로드, %)	
		다운 로드	업 로드				
100M	KT 엔트리파아	100/100	87	84	2.6	0.01	87
	하나로텔레콤 광랜	100/100	78	71	5.7	0.01	78
	LG파워콤 Xspeed 광랜	100/100	91	88	3.0	0.00	91
50M	KT 프리미엄 VDSL	50/10	35	7	2.7	0.01	70
20M	하나로 프리미엄 HFC	20/0.768	13	0.7	2.7	0.01	65
10M	KT 라이트	10/0.64~10	8.9	5.1	8.4	0.03	89
	하나로 스피드	10/0.64~4	8.9	1.3	13.9	0.09	89
	LG파워콤 Xspeed프라임	10/0.8	9.6	0.8	10.5	0.02	96
	티브로드 파워	10/1	7.8	0.8	12.4	0.04	78
	(주)씨엔앰 맥스	10/1	7.8	0.9	11.0	0.05	78
	CJ케이블넷 헬로우넷 라이트	10/2	9.0	1.8	12.8	0.63	90
	HCN 하이로드	10/1	7.6	1.0	14.1	1.54	76
4M	(주)씨엔앰 스피드	4/0.5	3.9	0.5	11.6	0.13	98

주: 신뢰수준 95%

28)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저 보장속도의 적정 수준을 100Mbps급의 경우 30Mbps, 10Mbps급의 경우 2Mbps로 제시한 바 있음

29) 2008년도 품질평가는 초고속인터넷 7개 사업자의 12개 상품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며, 학계·소비자단체·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품질평가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문 업체와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

3)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³⁰⁾와의 간담회와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방송통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용자의 피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2008년 8월 28일과 12월 10일에 걸쳐 2차례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08년도 통신 이용자 보호 포럼’을 2008년 12월 9일~10일에 개최하여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통신사업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5개 통신사업자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에 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나.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활력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사후규제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특히 결합판매 규제 완화와 VoIP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등이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에는 기존 통신서비스 위주의 조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한정된 조사,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처벌 위주의 위반행위 제재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기에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3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YW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희망제작소,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VoIP,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방송 등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감시의 효과와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매우 긴요한 수단이다. 이와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경품,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원 등 요금 감면 등에 의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등의 경우는 반복되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규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민원동향에 대한 분석과 자체 구축한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방송통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시장 감시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시장의 규제 방안에 대한 사례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장감시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공정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시장 감시 대상을 방송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시장 감시활동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 2건에 불과하였던 방송통신 시장 실태점검을 2008년에는 7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점검·시정조치를 통한 제도개선도 2007년 3건에서 2008년에는 4건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시장 감시를 위하여 실태점검을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른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 단속 등 시장점검 활동을 추진하여 이동전화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시장 상황이 건전화되고 이용자 피해도 상당 부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III-58〉 2008년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 추진 실적

구 분	건수	주요 내용
방송통신시장 실태 점검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시장점검(5월) ○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6, 10월) ○ 무선인터넷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장점검(7월) ○ 전용회선 시장 대형 ISP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9월) ○ 방송시장의 방송프로그램 공급 등 불공정행위 모니터링(10월) ○ VoIP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른 시장점검(12월) ○ 결합판매 시장의 시장점검 및 불공정행위 감시(12월)
실태 점검 · 시정조치를 통한 제도개선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가개통 방지 관련 단말기 개통 이력 SMS 발송 ○ 이동전화 선호번호 부여 관련 업무 개선 ○ 불법 스팸 관련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에 따른 제도개선 ○ 온라인 본인인증 도입 등 이동전화 가입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시장에서도 포털형 콘텐츠의 경우 요금 안내 메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로드형 콘텐츠의 경우 데이터 크기·정보이용료·통화료 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는 등과 같은 이용자 저해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전용회선 시장의 대형 ISP에 의한 불공정행위와 방송시장의 방송프로그램 공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VoIP 번호이동성의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해지 방어·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와 번호이동성 고시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결합판매³¹⁾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유형과 심사기준을 2008년 5월 19일에 고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시장 실태점검·시정조치를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SKT 등 이동통신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과 관련한 이용자 저해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가개통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31) 결합판매란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개통 및 명의 변경 가입자에게 단말기 개통내역 SMS를 발송토록 조치하였다.

〈표 III-59〉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과징금)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유선전화	제재건수	4	17	8	4	6	39
	과 정 금	3	3	3	4	20	33
이동전화	제재건수	26	28	30	15	10	109
	과 정 금	482	624	1,226	225	29	2,586
초고속 인터넷	제재건수	8	68	20	5	10	111
	과 정 금	1	47	26	28	6	108
기타	제재건수	68	27	23	19	2	139
	과 정 금	8	1	2	4	—	15
합계	제재건수	106	140	81	43	28	398
	과 정 금	494	675	1,257	261	55	2,742

이와 함께 선호 번호의 공정한 추첨을 위하여 대상 번호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이동전화 선호번호 부여 관련 업무를 개선하였다. 한편 KT 등 유선전화 3개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스팸 전송 차단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림과 아울러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신규서비스 제공 거부를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였다.

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현재 통신시장에서 각종 결합서비스, VoIP, 부가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출시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 발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해짐은 물론, 인터넷 카페 등 정보매체의 활성화에 따른 집단화 경향으로 인해 민원 분쟁이 빈번해지고 민원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서 다수의 방송통신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어 계약 해지, 설비 제공, 프로그램 공급 등에 대한 사업자들 간의 분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32,188건에서 2007년에는 49,857건으로 연평균 15.7%씩 증가되어 왔다.

〈표 III-60〉 연도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CAGR
방송민원	5,692	6,088	7,216	6,999	7.1%
통신민원	26,496	40,699	36,431	42,858	17.4%
합 계	32,188	46,787	43,647	49,857	15.7%

이렇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통신요금 청구 및 서비스 제공,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있어, 소송보다 신속한 절차인 재정³²⁾ 제도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게 민원(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처리기간 단축일’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의 대표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7월 방송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舊) 방송위원회 방송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승계)]하여 재가동하였고, 2008년 8월, ‘방송통신 민원 통합처리 체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 5일 통신민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008년 9월 3일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 ‘통신민원 능동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12월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용자 피해 구제 활동으로 인해 2008년 통신민원은 2007년 42,858건에 비해 32.5% 감소한 28,932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 등으로 인해 사업

32) 재정(裁定): 분쟁조정제도의 일종. 일반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합의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재정은 재정결정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의 효력이 확정됨

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VoIP와 부가통신, 휴대 인터넷 관련 민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방송민원도 2007년 대비 39.0% 감소하였으나, 위성방송 민원은 유료방송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요금 분쟁 및 위약금 민원이 늘어나 2007년의 큰 폭 상승(1,224건, 118.6%)에 이어 2008년에도 46.7%(1,796건)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제한 등 사업자-이용자간의 재정사건은 2007년의 11건에 비해 60% 증가한 18건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접속 의무 이행 등 사업자간의 재정사건도 전년 대비 33% 증가한 4건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사업자-이용자간 재정처리³³⁾ 기간은 29일로서 2007년의 84일에 대비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표 III-61〉 재정사건 평균 처리일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재정사건 평균 처리일수	131일	73일	84일	29일

〈표 III-62〉 재정사건 처리건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재정사건 처리건수	2건	10건	14건	22건

1) 방송통신 분쟁조정

조정·알선 등을 통한 분쟁조정 제도는 강제적 해결방식에 기초한 기존 소송제도와는 달리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에 기초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33) 2008년도 재정사건은 KTF의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고객 유치 관련 사업자가 임의로 2G 서비스에서 3G 서비스로의 전환가입조치에 따른 손해배상(2008년 1월 17일 접수) 등 22건이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전송망 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에 대해 2008년 2회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2건과 보고 1건 등의 조정을 성립시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시청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CJ tvN의 채널송출 중단’, ‘서대구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관련 조정사례는 플랫폼 사업자와 PP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유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I-63〉 2008년 방송분쟁 조정 현황

사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결과
CJ 미디어–서대구방송 간 프로그램사용료 미지급 관련 분쟁	(주)CJ미디어	(주)서대구방송	조정 성립 ('08. 12. 1)
산내유선방송사–한국전력공사 간 전주사용료 위약금 관련 분쟁	산내유선 방송사	한국전력 공사	조정 성립 ('08. 12. 1)
SkyLife-CJtvN 간 tvN 송출중단 관련 분쟁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주)	(주)CJ미디어	조정 성립 ('08. 7. 10)
CTS–동서디지털방송 간 채널편성 관련 분쟁	(주)CTS	(주)동서 디지털방송	신청 철회

또한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한국PP협회)의 임원진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2회(2008년 8월 14일, 9월 8일)에 걸쳐 개최하였고, 방송 사업자·IPTV 사업자·전기통신 사업자간의 분쟁을 방송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방송법 제35조의 3)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 및 심결지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분쟁 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방송통신 분쟁 이슈와 분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송통신 이슈 리포트’를 매월 발간(2008년 9월 창간~12월호)하였다.

한편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부응하고 분쟁사건의 증가에 대비하여 방송통신 각 부문 별로 이원화된 분쟁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관련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방송통신 분쟁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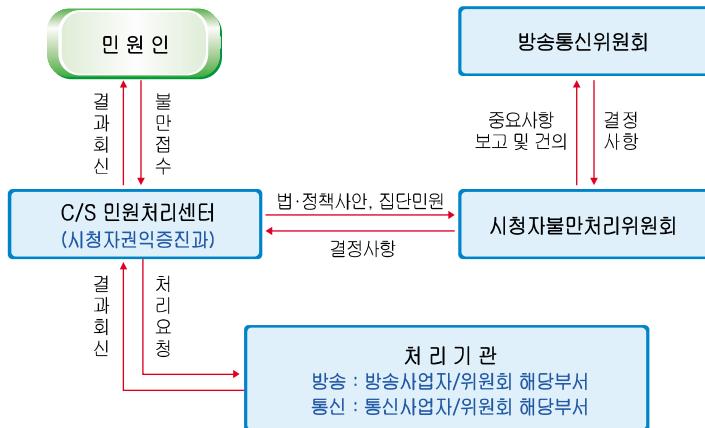
2) 통신 민원처리 시스템 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 통합처리 체계 구축계획’을 2008년 8월 5일에 수립·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송통신 민원서비스의 최초 접점인 CS센터에서 시청자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증진될 수 있도록 (舊)방송위원회와 (舊)정보통신부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여 민원처리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민원처리 프로세스 통합 및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민원통계 분석 기능 강화 등 통신 민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CS센터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과 상담직원 그리고 해당 방송통신 사업자가 동시에 통화 할 수 있는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민원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집단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요령 및 구제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민원예보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민원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아울러 민원사례집과 민원통계 월보를 정기적으로 발간·배포³⁴⁾하고 있다.

[그림 III-15] 방송통신 민원 통합처리 시스템



34)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신 민원동향 분석을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200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2008년 7월 16일에는 유·무선 전화결제³⁵⁾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결제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화결제 서비스 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불량 사업자로 등록하여 전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 8월부터 방송통신 민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신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시스템을 2008년 11월에 구축하였다.

라.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

방송통신 사후규제³⁶⁾는 새로운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정으로는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 저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통신 부문의 경우, 시장에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현행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부문 사업자들은 일반 경쟁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규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방송 부문의 경우, 금지행위 제도 자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방송은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하여 소유 제한 등 진입장벽이 엄격한 규제산업이었으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이 도입되면서 유효한 경쟁기반의 형성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수단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35) 유무선 전화결제란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 및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대금을 이동전화나 유선전화 요금 고지서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대행 서비스

36) 사후규제(금지행위): 지배력 남용, 부당한 차별, 정보 유용, 부당 요금, 이용자 이익 저해, 담합, 부당 염매 등

융합 부문의 경우에도 IPTV만을 불공정 행위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통신·비통신 사업자(장비, 콘텐츠 제공업체) 간의 거래 등에 대한 규제제도와 함께 앞으로 등장할 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사업자들은 대형 법률자문회사 등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방송통신 규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자체도 다수의 역무가 관여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조사관의 전문성과 조사업무의 체계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의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 즉, 그동안은 신고접수 위주의 수동적인 조사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이를 개선하여 조사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기획조사의 추진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과 조사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1)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 개선·보완 및 시정조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부문의 금지행위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을 검토·분석하고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금지행위 사건처리·공표 지침’ 등 조사와 관련된 고시³⁷⁾ 및 훈령³⁸⁾을 2008년 5월에 제정하였다. 금지행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세미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8년 12월 8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사후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사업자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자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신 사업자 간담회를 2008년 10월 1일과 12월 4일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효과적인 사후규제 방안 및 사례 등

37)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2008년 5월 19일) 등 3건

38) 방송통신 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2008년 5월 29일) 등 4건

을 공유하기 위해서 ‘2008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와 연계하여 2008년 10월에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규제기관과의 정책 공조 및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제공 대가에 대한 사전규제 미채택’, ‘요금인가제 완화’ 등의 사전규제 완화와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지행위 제도(공정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개선(안)은 통신시장의 금지행위 유형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과도한 이용대가를 설정하는 행위와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수익을 부당하게 배분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3개월 이하의 신규모집 정지를 시정조치의 유형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방송통신 사업자의 다양한 회계정보에 대해 DB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회계 분석을 통한 선도적 정책 수립과 사후규제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였다.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18건, 이동통신 10건, 개인정보 15건 등, 43건의 방송통신 시장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표 III-64>와 같다.

<표 III-64> 방송통신 시장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단위: 원)

구 분	금지행위			개인정보	합계
	유선통신	이동통신	소계		
시정조치	18건	10건	28건	15건	43건
주 요 조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26억 ○ 제도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29억 ○ 제도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55억 ○ 제도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과태료 ○ 제도개선 등 	—

2) 조사인력 전문기술 교육 실시 및 조사체계 확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실무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제도와 규제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가 초청 강의, 학습 세미나 등을 2008년에 18회 개최하였으며, 이는 2007년의 7회 개최에 비하여 11회나 증가된 것으로 이러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총 270명이 이수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원해결 능력을 높이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조사기법 체계화 연구 등을 통해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방송통신 부문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적 이슈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법행위 사례를 대상으로 ‘금지행위 조사매뉴얼(표준, 유형별 3건)’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금지행위를 규제하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8년 5월부터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통신 사업자 및 포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하여 시장 및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조사체계를 통합·체계화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복조사와 이에 따른 제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0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운영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가.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방송 패러다임이 시청자의 주권의식 신장과 양방향 방송으로 변화됨에 따라 방송편성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시청자의 직접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청자의 주권 의식을 확대하고 시청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시청자 단체의 유해방송 감시, 미디어 교육, 방송 모니터링 및 시청자 캠페인 등에 총 62억원을 지원했다. 이것은 시청자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청자의 의견이 방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방송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표 III-65〉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편수	6	188	1,426	1,880	2,068	2,526	2,775
예산	51	1,217	2,343	2,249	2,656	2,181	2,604

〈표 III-66〉 연도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단체수	24	38	36	36	40	46	56	56
(사업수)	(24)	(38)	(48)	(52)	(55)	(62)	(73)	(80)
예 산	337	640	713	725	748	923	1,031	1,044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크게 시청자 방송참여 프로그램 지원,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 및 시청자 불만 조사와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청자 방송참여 프로그램 지원

최근 디지털 방송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다채널·양방향화로 진화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맞추어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확대하였다. 2008년에 KBS를 비롯하여 지역 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등 총 45개 방송사에 25.7억원을 지원하고, 2,500편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편 위성방송 사업자의 경우 2008년에는 종전대로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시민방송에게 직접 지원하되 제작 지원금은 2007년의 7억원에서 20% 감액된 5.6억원³⁹⁾을 2008년에 집행하도록 하였다. KBS의 경우에는 위성방송 사업자와는 달리 KBS가 자체적으로 공모하여 방송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2008년에는 총 1,106편의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방송되었는 바 방송된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해 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규탄하는 ‘독도·울릉도 탐방’, 태안 기름 유출 이후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다룬 ‘태안 기록’, 그리고 ‘인사동 소개’ 등과 같은 생활정보·문화가 744편(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39) 2009년부터는 지원금을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채택은 비공모제에서 공모제로 전환 추진

등 방송 소수계층에 대한 내용도 88편(7.9%)이나 되었다.

2)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방송환경 조사나 미디어 교육 및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에 총 33개 단체에 5억원을 지원하여 시청자의 건전한 의견을 관련 방송사와 관련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을 전개하였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시청자 권리정책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기능중복을 방지한다는 원칙 하에서 지원사업의 방향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부문이 미디어 교육·방송 모니터링·캠페인·기획사업 부문에서 미디어 교육·방송환경 조사·정책 개발부문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역량 있는 신규 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충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⁴⁰⁾.

지원 부문별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미디어 교육 부문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총 3,651명이 참여하여 135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영상제에서는 179편의 작품을 상영함으로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영상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며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방송환경 부문에서는 시청자의 시각으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과 시청자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당 방송사에 전달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유관기관 및 언론에 배포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책 개발 부문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어린이 시청자의 권리증진 방안을 도출하고, 학부모의 유아프로그램 시청 원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유료방송 서비스의 경쟁 하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노인·장애인·이주여성 등 특수계층에 대한 방송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요구분석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40) 지원자격 요건 중 ‘1년 이상 시청자 권리증진 활동의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의 기준을 삭제하고, 신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단체의 전문성 확보 지표를 추가하고 관련 대학교·학회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 반영

3) 시청자 불만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9월 26일에 시청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내용심의 제외),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등 시청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제재조치, 약관변경 명령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2008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자의 불만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272건 중 매체별로는 위성방송이 1,796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유선방송 1,656건(39%), 지상파방송 400건(9%), 방송채널사용 사업 20건의 순이었다. 일반 국민들이 방송서비스에 갖는 가장 큰 불만으로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요금과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불만 4,272건 중 약 43%(1,8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장애인·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에 총 148억원을 지원했으며⁴¹⁾, 지역별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시청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송 소외계층의 취약한 방송접근권을 해소하고 방송활용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정책적 실천방안 및 제도적 틀은 다소 미흡하였다.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청각장애인수는 1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자막방송 수신기의 보급률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진전과 뉴미디어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 접근하거나 시청자가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41) 2000년~2008년 동안 90.3억원을 지원하여 방송 소외계층에 10.1만 대의 방송수신기 보급

〈표 III-67〉 방송 소외계층 지원 현황(2008년 기준)

구분	지원 현황
방송 수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2008년까지 90.3억원을 지원, 10.1만 대의 방송수신기를 보급 (자막 방송용 3만 대, 화면해설 방송용 1.8만 대, 난청 노인용 5.3만 대)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계층 기준 보급률('08년 누적): 자막방송 수신기 63.2%,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37.4%, 난청노인용 수신기 25.1%
방송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이후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 지원(58.3억원)을 통하여 총 방송시간 대비 장애인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이 2006년에 비해 2008년도에 28.6% 상승 * 지상파 4사 기준('08): 자막방송 92.8%, 수화방송 3.8%, 화면해설방송 5.3%
미디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이후 18.1억원을 지원하여 교재 개발(종합자료집·초등학교 교재, 중학생 교재) 및 미디어 교육 활동 활성화 * 미디어 교육 교재 개발(단행본 8종, 동영상 3종), 학교·저소득층 공부방 등의 교육활동 지원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에 발효됨에 따라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전 부처로 확대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지역방송 사업자 등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일부 제한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중증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을 대상으로 2008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5,000대⁴²⁾,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1,584대, 난청노인용 방송 수신기 10,532대를 보급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26개 사업자 27개 채널), 편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으며, 장애인 미디어 센터 (서울 1개소)의 방송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부산, 광주 2개소)

42) 자막방송 수신기 누적보급대수(보급률)는 2007년 25,087대(12.2%)에서 2008년 30,087대(12.9%)로 증가

를 통하여 장애인의 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시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화면 해설 EBS 수능 방송물’을 2008년 7월에 보급하여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였다.

〈표 III-68〉 2008년도 방송 소외계층 및 미디어 교육 지원 현황

구 분	추진 실적
방송 소외계층 방송수신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막(5,000대)·화면해설(1,584대)·난청노인용(10,532대) 수신기 보급 ○ 시청각 장애학생 대상으로 자막·화면해설 EBS 수능 방송물 4과목 이상 제작·보급(DVD 및 웹방식) ○ 기타 장애인 방송접근권 증진: 방송콘텐츠 보급, 미디어 활용 교실 등
장애인 대상 방송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4사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제작 지원 ○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수화방송 제작 지원 ○ 각 방송사의 장애인 프로그램 방송 홍보 지원
미디어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용 단행본·DVD 동영상 교재 2종, 기개발 교재 4종 재발행 ○ 미디어 교육 아카이브 업데이트 및 운영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미디어 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의 자녀 대상 공부방을 위해 방송기자재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 종독 예방활동 지원

2008년도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의 성과를 살펴보면, 자막방송 수신기(누적 보급대수) 보급률은 2007년의 12%에서 13.1%로 확대되었으며, 자막방송 편성비율은 92.8%, 미디어 교육 수혜자 만족도는 87.2점,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88.2점을 기록하는 등 방송 접근권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운영 방식도 개선되었다.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미디어 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미디어 교육 교재 개발과 지원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수혜자가 확대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표 III-69〉 2008년도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 성과

구 분	2008년 실적	비 고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률 (누적 보급대수)	13.1% (30,087대)	2008년 5,000대, 2007년 6,000대, 2006년 5,000대, 2005년 2,000대 * 2008년 청각장애인 인구 228,952명
자막방송 편성비율	92.8%	KBS 1TV 88.8%, KBS 2TV 100%, MBC 94.2%, SBS 89.7%, EBS 90.6%
미디어 교육 수혜자 만족도	87.2점	12개 지원단체 만족도 평가 평균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용자 만족도(이용자수)	88.2점 (126,572명)	부산센터 89점(이용자 67,310명), 광주센터 87.5점(이용자 59,262명)

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녹색 방송통신 추진

최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2008년 8월 15일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전 부문에서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 추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IT 산업의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산업의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사용량의 절대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제고와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IT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런 IT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OECD와 ITU 등의 국제 기구에서도 ‘IT와 환경’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후속 회의가 진행되는 등 그런 I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IT 분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그런 IT를 의미하는 ‘녹색 방송통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 분야 자체에서 탄소 발생을 절감하기 위한 실천과 함께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방송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탄소 발생을 절감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 방송통신은 방송통신 산업과 타 산업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연구하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송통신 부문 그린 IT 확산’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린 IT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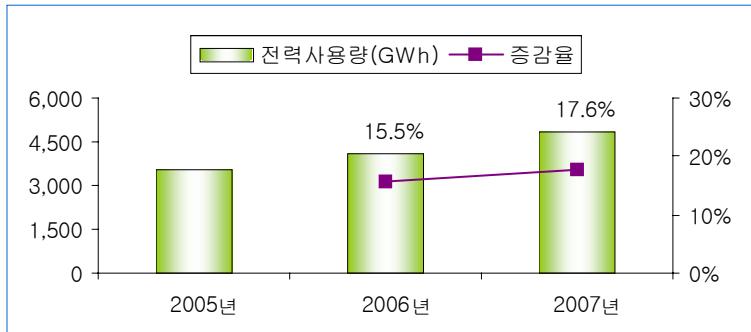
그린 IT T/F팀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알기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방송통신 설비별 전력 사용량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송통신 분야의 최근 3개년도 전력 소비량을 파악하여 방송통신 분야 자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II-70〉 방송통신 분야 전력 소비량 현황(2005~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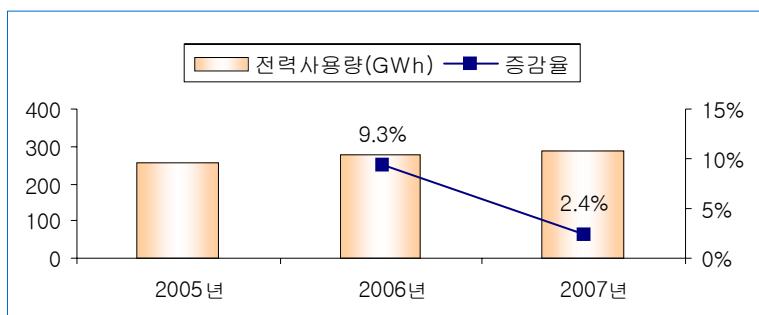
(단위: GWh)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통신분야	유선통신	1,591(41.6%)	1,880(42.7%)	2,028(39.5%)
	이동통신	1,977(51.7%)	2,242(51.0%)	2,819(54.9%)
	소계	3,568(93.3%)	4,122(93.7%)	4,847(94.4%)
방송 분야		255 (6.7%)	279 (6.3%)	286 (5.6%)
합계		3,823(100%)	4,401(100%)	5,133 (100%)

[그림 III-16] 통신 분야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그림 III-17] 방송 분야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2008년 11월에는 녹색 방송통신과 관련된 산업체, 학계, 연구단체 등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모집하여 민·관 합동의 ‘녹색 방송통신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수차례의 자문단 회의를 통해 녹색 방송통신의 추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부산에서 ‘ICT/환경융합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여론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IV. 향후 과제

-
1. 신성장 동력인 미디어 서비스 육성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투자 촉진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제고
 4.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확대

IV. 향후 과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면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산업은 시장 규모가 2008년에 56.9조원, 기기 및 S/W 등 연관 산업의 시장 규모가 234.8조원에 이르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교육(사 이버 교육), 금융(홈뱅킹, 증권의 사이버 트레이딩 등), 산업(전자상거래, 업무전산화 등) 측면에 있어 타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디지털 TV 등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콘텐츠, 유통 인프라 등 연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송통신 융합으로의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중점 추진과제로 첫째, 신성장 동력인 미디어 서비스를 육성하고, 둘째,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하며, 셋째,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면서, 넷째 경쟁력있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 신성장 동력인 미디어 서비스 육성

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금은 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침체된 방송통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IPTV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것이다. IPTV 제공사업에서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하고 저렴한 결합상품(IPTV +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 및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 이

용할 수 있는 요금제(A la carte, 선택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IPTV 서비스의 차별화와 방송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콘텐츠사업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IPTV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 등 공공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IPTV를 활용한 생활혁명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양방향 교육콘텐츠(영어 등)·시청자 참여 드라마·정보 포털 등 매체 융합형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IPTV 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품질관리 지원기술 등 현안 기술⁴³⁾ 및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 방송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에게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하고 디지털 TV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송장비의 디지털화 및 HD 프로그램 제작 등을 적극 유도하고,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보급형 셋탑박스 기술규격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CATV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 장비의 디지털화와 HD 프로그램의 제작 유도를 위해 디지털 방송장비의 관세 감면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용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의 시청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TV 시청행태 조사’를 통하여 디지털 TV 구매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TV 수신설비 실태조사’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신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디지털 전환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TV 공익광고,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

43)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IPTV 단말기의 호환성 확보 기술, 안정적 서비스의 보장 을 위한 체감품질(QoE; Quality of Experience) 관리기술 등을 포함한다.

여 디지털 방송의 비전 및 효과,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중심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아날로그 방송 종료방안 등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연차별 DTV 방송국 구축계획, 기존 DTV 방송국 채널 변경,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기·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방송통신 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의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지급비율(수신료의 25%)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가 받는 콘텐츠 제공대가를 현실화시키고,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기업과 유통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경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콘텐츠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세 PP 등 중소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콘텐츠 제작·가공·유통을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경기도 한류우드에 약 8만m² 규모의 집적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촉진하는 B2B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콘텐츠 관련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기획·창작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전환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바, 방송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도입 시기를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종합편성 PP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 미디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디어 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매체 간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 관련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2월에 소유·겸영 규제 개선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법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사업법은 방송과 통신의 구분 없이 동일 서비스의 경우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및 사업자·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의 서비스 분류, 사업자 인허가,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진흥·규제사항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2. 네트워크 고도화 및 투자 촉진

가. 방송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국가 주도로 통신인프라를 고도화시킴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였으나, 최근 들어 일부 분야에서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추월되고 있으며 인프라의 활용 수준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로 ‘방송통신망 고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가(Giga) 인터넷⁴⁴⁾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4) 고품질, 대용량화되어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소 100Mbps 이상 최대 1Gbps급 인터넷 서비스

3DTV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700여 가구에 Giga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WiBro와 HSDPA 등 이종망간 연동성 기술⁴⁵⁾을 적용·검증하고, IPTV 품질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는 한편 농어촌 BeN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Pv6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 ISP,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IPv6 전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부문, 주요 ISP 백본망별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나.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분배, 시장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이용규제 개선, 회수·재배치를 통한 주파수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여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이동통신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하여 신규 무선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주파수 할당방법, 할당대가, 용도, 기술방식, 할당조건,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따라 800MHz~900MHz 대역에서 회수하는 우량 주파수(40MHz폭)와 2.1GHz 대역 잔여 주파수(40MHz폭)를 할당할 것이며, 이와 함께 방송통신업계 등 관계기관의 주파수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700MHz대역 여유 주파수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무선 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비면허·소출력 주파수를 보급하여 주파수가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효율·친환경 전파이용 환경을

45) WiBro와 HSDPA망 사이의 데이터 전송 등 서로 다른 통신망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동기술로 VCC(Voice Call Continuity),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등이 있음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전파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하여(2009년~2012년) 전국의 전파잡음 등급, 전자파 노출량,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국내 전파환경 정보를 총망라한 ‘전파자원지도(3D Wave Map)’를 작성할 것이다.

다.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세대 핵심 네트워크인 광가입자망(FTTH)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계기 설치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및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품질 경쟁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큰 콘텐츠 분야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확대도록 유도하고, 이동통신사-CP간 정보이용료의 수익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WiBro 음성번호 부여를 위한 고시 개정 등의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 기지국 공용화 등 WiBro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WiBro 기반의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을 위해 원천·상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WiBro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전국망 및 음영지역 커버리지 확보와 서비스 품질의 안정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망 투자 실적의 점검을 강화하고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통신투자 확대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사업자 선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함과 함께 WiBro 장비업체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로드쇼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국가 WiBro 서비스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3G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장비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지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3G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평가 지역을 외곽 지역으로 더욱 확대하고 평가 결과의 대국민 제공 등을 도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망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품질 개선 등을 유도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 체감 품질을 점차 높여나가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3. 방송통신 이용자 권리 제고

가. 가계의 방송통신 요금 부담 경감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적 요금 인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는 재판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인가받은 상품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신고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다양하고 저렴한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간소한 인가절차가 적용되는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에 대해서 TV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유료방송 요금감면 확대 및 그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및 제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관을 개정하여 필요한 감면대상 및 절차를 명문화하고,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구역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의 연계를 추

진하고 감면대상 선정 및 금액,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2010년 이후에는 유료방송의 연도별 요금감면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다.

나. 방송통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장애인의 방송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대상을 케이블TV 등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뉴스전문채널 사업자 중심으로 자막방송의 비중을 1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⁴⁶⁾.

또한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소수계층을 소재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KBS 등 지상파 방송 및 뉴미디어(SO, 위성방송)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영어 FM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용주파수가 확보되는 광역시(대구·대전·울산) 단위까지 영어FM 방송을 도입하기로 한 ‘영어 FM 도입 기본계획(2008년 5월)’에 따라, 주파수를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 방송국 허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어 FM 방송의 사업권은 지방자체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에 부여할 것이다. 향후에는 영어 FM의 도입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다인종·다문화 시대에서의 국가 발전을 위한 방송매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것이다.

다. 인터넷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방송통신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역기능의 해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복합화·다양화되는 인터넷 침해 사고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46) 2009년 상반기 중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총 17,500대를 조기 보급할 예정이다(자막방송 7,500 대, 화면해설 5,000대, 난청노인용 5,000대).

를 고도화하고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TV와 인터넷전화 등 융합 서비스에 대한 해킹 예방 및 피해 복구 기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의 해킹 실험환경을 구축·운영하고 ‘침해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플달기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윤리캠페인을 전개하고 TV 공익광고, 신문 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본인확인제 대상자를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까지 확대⁴⁷⁾하여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할 예정이다.

라.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 등 컨버전스 환경에 맞는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서비스별 제한경쟁에서 통합시장의 전면 경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 활동을 강화하여 이동전화 부당요금 부과(무선인터넷 과·오납 등), 초고속 인터넷 해지 제한, 위약금 부당 부과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나 다중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정립하도록 지원하여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결합상품, IPTV 등 신규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신규시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

47) 2009년도 대상을 138개 사업자, 153개 사이트로 확대(2008년도 33개 사업자, 37개 사이트)할 계획이다.

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사후 피해 위주의 이용자 보호 활동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WiBro 등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⁴⁸⁾를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품질평가를 IPTV 등에까지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품질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알림기능과 휴대폰 SMS 안내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4.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하여 주요 진출대상국가와의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해외 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경쟁력을 가진 WiBro, DMB, IPTV 및 한류콘텐츠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설정하여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되 주요 거점국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채널로서 방송통신사업자,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여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WiBro의 경우 중남미 등 거점국가 대상으로 로드쇼 및 비즈니스 포럼을 연중 8회 개최하여 대상 국가의 서비스 채택을 지원⁴⁹⁾하고 WiBro 기술이 4세대 이동통신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DMB는 현재보다 채널이 2배로 늘어나는 차세대 지상파 DMB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방송을 통해 기술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상파 DMB 시범방송망 구축을 지원하여 해외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48)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사실을 SMS로 통보하고 가입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현재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만 적용하고 있음

49) 2008년 12월까지 국내 업체가 우즈베키스탄, 미국, 일본 등 12개국에 장비를 수출했으며, 전세계 30여개 국가에서 WiBro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임

IPTV는 국내에서 검증된 첨단 IPTV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폐루 등 해외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로드쇼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방송콘텐츠는 중국, 일본 등에 편중된 수출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규 시장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연중 6회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방송프로그램 국제 공동제작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 롤

1.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3.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현황
4. 방송 및 통신 관련 주요 통계
5. 2008년도 규제개혁 과제 및 정부입법 추진 현황
6. 2008년도 회계 결산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8.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9.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행사

1. 방송통신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	
기 회 조 정 실	기획재정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책과 계획의 총괄 및 조직·정원관리 ○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세입·세출 및 결산
	창의혁신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 및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 성과관리·정부업무평가·행정제도 개선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및 법제 선진화 업무 ○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업무
	국제협력 기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 ○ WTO, FTA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국제기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 ○ 방송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
	의안조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 ○ 위원회의 회의안전 접수 및 검토
	정보전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 ○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상계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보안업무 및 재난관리
	정책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 ○ 중장기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및 평가
방 송 통 신 융 합 정 책 실	융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비전 및 전략
	방송통신 진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 및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 ○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 ○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술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
	전파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 ○ 전파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정책
	전파감리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및 방송통신, 정보기기 인증정책
	방송위성 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 ○ 방송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및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구 분	주요 업무
방 송 통 신 융 합 정 책 실	주파수 정책과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방송운영과 ○ 방송광고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디지털 전환과 ○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화에 관한 정책 수립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신환경 개선 및 대국민 홍보
	편성정책과 ○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에 관한 정책 수립 ○ 외주제작에 관한 정책 수립
	평가분석과 ○ 방송평가에 관한 정책 수립 ○ 우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상 및 제작 지원
방 송 정 책 국	방송정책 기획과 ○ 방송서비스 정책 총괄 ○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및 공영방송 정책
	지상파방송과 ○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 ○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뉴미디어과 ○ 뉴미디어·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채널사용 방송과 ○ 방송채널사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지역방송팀 ○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방송발전 성과 평가
통 신 정 책 국	통신정책 기획과 ○ 통신서비스 정책 총괄 ○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정책
	통신경쟁 정책과 ○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 및 제도 개선
	통신이용 제도과 ○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개선 ○ 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및 이용제도
	통신자원 정책과 ○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이 용 자 네 트 워 크 국	조사기획 총괄과 ○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 ○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조사과 ○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치결과 처리 ○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통신이용자 보호과 ○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 ○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및 조정

구 분	주요 업무
이용자네트워크국	시청자권익증진과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관리
	심결지원팀 ○ 분쟁조정 및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건 심결보좌 ○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개정
	방송환경개선팀 ○ 방송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 ○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
	네트워크기획과 ○ 네트워크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 ○ 네트워크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인터넷정책과 ○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네트워크안전과 ○ 네트워크상의 서비스 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 ○ 네트워크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개인정보보호과 ○ 네트워크망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 ○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
	네트워크윤리팀 ○ 네트워크상에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및 관련법령 제·개정 ○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대변인실 ○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및 언론 브리핑 지원 ○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감사팀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진정의 조사·처리
운영지원과	○ 인사,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 의견 및 청사의 관리 및 방호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분야	법률명	주요 내용	연혁
융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 사무조직 ○ 위원회의 소관사무, 운영방법 및 심의위원회 설치 	'08.2.29 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분류(IPTV 제공·콘텐츠 사업자) ○ 진입규제, 사업권역, 소유규제 	'08.1.17 제정, '08.2.29 개정
방송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승인·재승인 	'00.1.12 제정, '08.12.31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 및 출자 ○ 임원의 임명, 이사회 구성 	'00.1.12 제정, '08.12.31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구성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근거 	'98.12.26 제정, '08.2.29 개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 저소득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08.3.28 제정
통신	전기통신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 통신재난 관리 	'91.8.10 제정, '08.3.2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시장진입, 경쟁촉진·공정경쟁 제도 ○ 통신이용자 보호제도 	'91.8.10 제정, '08.2.29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업의 등록, 설계의 기술기준 ○ 공사의 분리 발주제, 하도급의 제한 	'71.1.22 제정, '09.3.25 개정
	정보화촉진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대역통합통신망 구축 촉진 ○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95.8.4 제정, '08.6.13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계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제, 불법 스팸 전송 금지 	'86.5.12 제정, '08.6.13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분류, 시장 진입 제도 ○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 정보 이용 	'05.1.27 제정, '08.2.29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주소자원의 사용·관리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04.1.29 제정, '08.2.29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협조 	'03.12.27 제정, '08.2.29 개정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 절차 ○ 무선국 허가·검사 등 무선국 이용절차 	'61.12.30 제정, '08.6.13 개정

3.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 근거	설립 목적 · 주요 기능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이병순	방송법 제43조 1항	국가기간방송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인 실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옥경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구관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	횡중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2조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 제도 · 기술을 연구 개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박승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체계 구축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 이용촉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정진우	전파법 제66조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 진흥 및 인력 양성 사업과 정부 수탁 업무 처리
정보통신국제협력 진흥원	원장	공석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 2	정보화 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및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4. 방송 및 통신 관련 주요 통계

가. 방송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 3Q
방송통신산업 GDP 비중(%)	12.3	13.8	15.0	16.2	16.9	17.8
전체 경제 성장률(%)	3.1	4.7	4.2	5.1	5.0	3.8
방송통신산업 성장률(%)	14.2	17.5	13.5	13.5	9.5	7.3
경제성장 기여도(%p)	1.6	2.2	1.9	2.0	1.5	1.4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	△1.2	3.8	5.7	7.8	7.4	4.6
방송통신산업 설비투자 증가율(%)	△4.8	0.8	11.1	8.5	9.3	4.7
방송통신산업 비중(%)	38.2	37.2	39.0	39.0	39.7	40.0
전체 산업 고용자 수(만명)	1,242	1,281	1,311	1,355	1,389	—
방송통신산업 고용자 수(비중)	139 (12.2%)	137 (10.7%)	143 (10.9%)	146 (10.8%)	150 (10.8%)	—
전체 수출액(억\$)	1,938	2,538	2,844	3,255	3,715	3,289
방송통신산업 수출(비중)	705 (36.4%)	937 (36.9%)	1,023 (36.0%)	1,133 (34.8%)	1,251 (33.7%)	1,313 (39.9%)
주요 품목	반도체	196	270	320	373	393
	이동전화 단말기	169	241	258	253	287
	디스플레이패널	17	44	101	168	218
	디지털TV	36	59	61	67	61
	PC	69	70	42	34	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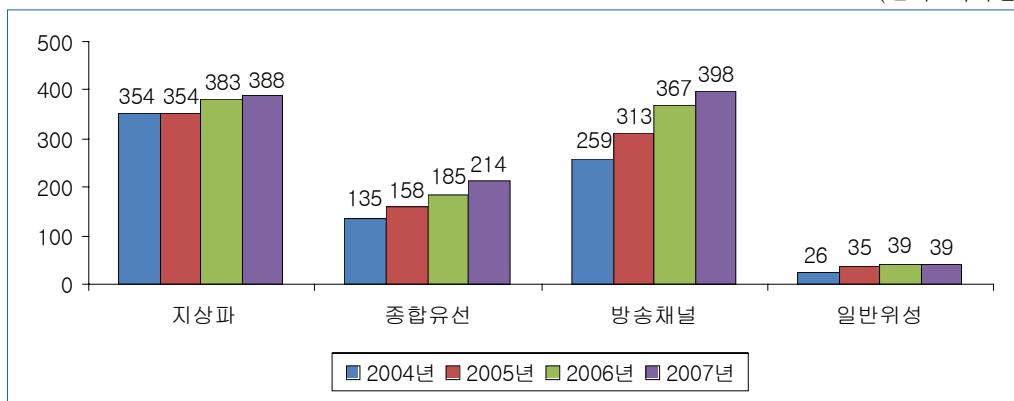
주: 방송통신산업은 정보통신·방송 관련 서비스/기기/콘텐츠 산업을 총칭

출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무역협회 등

나. 방송 시장 규모

□ 방송 시장 성장 추세

(단위: 백억원)



주: 방송시장 규모(매출액)는 수신료, 광고, 기타 방송수입(협찬, 프로그램 판매 수입 등) 등 방송서비스 매출과 방송서비스 이외의 기타사업수입(인터넷접속사업, 부동산 임대, 교재판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세부 현황(2007년)

구 분	사업자 수	종사자(명)	유료가입자(만명)	방송시장 규모(원)	방송서비스 매출액(원)
지상파 방송	44	13,761	—	3조 8,815억	3조 5,062억
종합유선방송	103	5,050	1,453	2조 1,358억	1조 4,702억
방송채널사용	188	9,102	—	3조 9,843억	2조 7,612억
위성DMB	1	226	127	1,197억	1,165억
지상파DMB	6	136	—	86억	75억
위성방송	1	287	215	3,874억	3,574억
중계유선방송	115	351	20	169억	169억원
합 계	458	28,913	1,815	10조 5,344억	8조 2,359억

주: 1. 방송서비스 매출액은 전체 방송시장 규모에서 인터넷접속사업수입, 부동산 임대, 교재판매 등 기타사업수입을 제외한 금액

2. 지상파 DMB의 종사자, 매출액은 지상파계열의 DMB 서비스를 제외하고 산출된 통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 계	15,179,121	16,032,739	16,189,749	16,886,067	17,211,586
종합유선	13,012,991	13,876,533	14,067,681	14,533,965	14,749,097
유료가입	12,624,289	13,612,356	13,765,713	14,250,169	14,478,970
무료가입	388,702	264,177	301,968	283,796	270,127
중계유선	513,875	300,966	172,877	200,220	202,418
일반위성방송	1,652,255	1,855,240	1,949,191	2,151,882	2,26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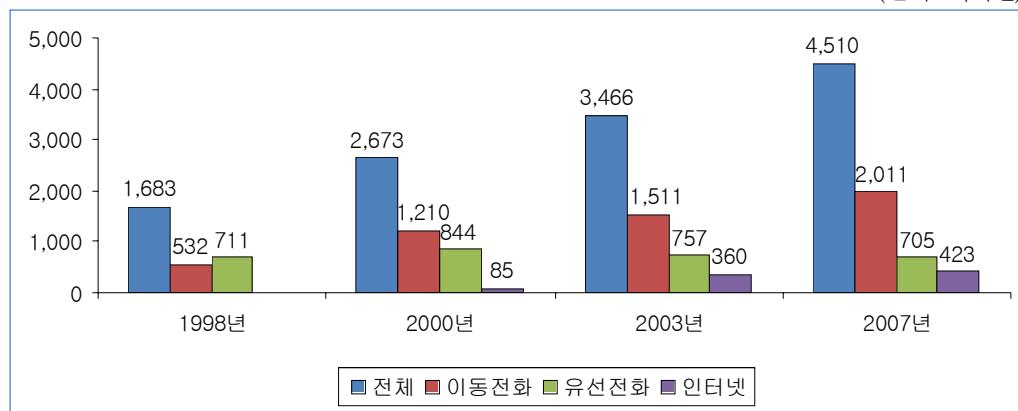
주: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수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시설(단자)을 설치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단수 수신자는 물론 2대 이상의 TV에 수신시설이 설치된 복수 수신 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08. 12), '20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다. 통신 시장 규모

□ 통신 시장 성장 추세

(단위: 백억원)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세부 현황(2007년)

	구 분	매출액 (백억원)	비중 (매출액)	사업자수	가입자수 (만명)
기간	유선전화	705	15.6%	—	—
	시내	534	11.8%	3	2,213
	시외	80	1.8%	5	—
	국제	91	2.0%	5	—
	이동전화	2,011	44.6%	3	4,560
	인터넷	423	9.4%	전국 지역 114	1,547
	전용회선	262	5.8%	17	—
	기 타	38	0.8%	—	—
	소 계	3,439	76.2%	—	—
별 정		213	4.7%	236	—
부 가		858	19.0%	2,557	—
합 계		4,510	100.0%	—	—

- 주: 1. 사업자수 및 가입자수: 2008년 기준
 2. 시내전화 매출액: 시내전화 + 가입자접속 + 공중전화 + 번호안내 + 지능망 + ISDN + VoIP 포함
 3. 별정 · 부가서비스는 통계조사가 가능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서비스별 가입자 수

(단위: 천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내전화	22,871	22,920	23,119	23,130	22,132
KT	21,457	21,353	21,289	20,918	19,866
하나로	1,413	1,521	1,745	2,031	1,935
데이콤	—	46	85	181	330
이동전화	36,586	38,342	40,197	43,498	45,607
SKT	18,783	19,530	20,271	21,968	23,032
KTF	11,729	12,302	12,914	13,721	14,365
LGT	6,074	6,510	7,012	7,809	8,210
무선후출	45	42	43	39	41
TRS	311	323	321	333	353
무선데이터통신	111	111	97	100	91
GM-PCS	4	4	5	4	4
무선인터넷가입자	35,016	37,202	38,894	41,598	42,740

- 주: 1. KT: 일반전화(사업용 비포함), 집단전화, DID, ISDN을 합산한 수치임
 2. 하나로텔레콤: 일반전화(사업용 비포함), 구내통신, ISDN을 합산한 수치임
 3. 데이콤: 일반실선(일반1회선, 일반2회선), 중계선: DID/DOD겸용(채널수), DOD 전용(채널수)
 4. DID전용 중계선은 가입자에서 제외함(KT, 하나로, 데이콤 공통)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

○ 가입자 수

(단위: 천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가입자	11,921	12,191	14,043	14,710	15,475
KT	6,078	6,242	6,353	6,516	6,712
SK브로드밴드	2,749	2,773	3,613	3,658	3,544
두루넷	1,288	837	—	—	—
온세통신	391	353	220	—	—
드림라인	134	100	28	2	1
LG데이콤	206	213	112	68	29
LG파워콤	—	262	1,204	1,721	2,182
부가통신	857	1,155	—	—	—
종합유선방송(SO)	—	—	2,262	2,507	2,786
중계유선방송(RO)	—	—	15	16	13
전송망(NO)	—	—	55	58	50
별정통신	218	257	180	164	158

주: SK브로드밴드의 경우 2007년까지는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수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서비스별 가입자 수

(단위: 명)

구 分	xDSL	HFC	LAN	FTTH	위성	계
합 계 (비 중)	3,718,135 (24.0%)	5,085,348 (32.9%)	4,933,229 (31.9%)	1,737,367 (11.2%)	852 (0.0%)	15,474,931 (100.0%)
KT	3,373,949		2,085,493	1,251,244	852	6,711,538
SK브로드밴드	266,962	1,623,864	1,166,936	485,907	—	3,543,669
드림라인	2	231	184	—	—	417
LG데이콤	677	6,892	21,020	—	—	28,589
LG파워콤	—	896,492	1,285,870	—	—	2,182,362
종합유선방송	52,980	2,514,252	219,044	—	—	2,786,276
중계유선방송	1,445	5,498	6,113	76	—	13,132
전송망	4,448	34,361	11,526	140	—	50,475
별정통신	17,672	3,758	137,043	—	—	158,47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번호이동자 수

○ 시내전화

(단위: 명, %)

구분	KT			SK브로드밴드(SKB)			LG데이콤(LGD)			총계
	SKB→	LGD→	소계	KT→	LGD→	소계	KT→	SKB→	소계	
2004년	9,756	—	9,756	173,310	—	173,310	151	50	201	183,267
2005년	78,007	803	78,810	180,219	34	180,253	8,130	983	9,113	268,176
2006년	182,947	3,576	186,523	337,951	359	338,310	14,261	230	14,491	539,324
2007년	208,087	3,310	211,397	421,133	342	421,475	51,647	8,415	60,062	692,934
2008년	111,712	6,312	118,024	198,918	902	199,820	118,660	28,610	147,270	465,114
점유율	27.3	0.6	27.9	61.3	0.1	61.4	8.9	1.8	10.7	100.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이동전화

(단위: 명, %)

구분	S K T				K T F				L G T			총계
	KTF→	LGT→	SKT→	소계	SKT→	LGT→	KTF→	소계	SKT→	KTF→	소계	
2004년	567,413	—	—	567,413	1,271,072	—	—	1,271,072	857,077	242,499	1,099,576	2,938,061
2005년	1,487,395	684,036	—	2,171,431	1,486,698	592,752	—	2,079,450	676,200	645,609	1,321,809	5,572,690
2006년	2,047,481	790,755	9,623	2,847,859	2,076,644	760,201	2,545	2,839,390	826,715	814,118	1,640,833	7,328,082
2007년	2,310,945	1,085,890	511,142	3,907,977	2,291,249	907,587	876,402	4,075,238	1,076,813	1,129,751	2,206,564	10,189,779
2008년	2,450,004	611,713	1,916,057	4,977,774	2,430,715	1,004,816	1,382,725	4,818,256	611,085	1,081,796	1,692,881	11,488,911
점유율	23.6	8.5	6.5	38.6	25.5	8.7	6.0	40.2	10.8	10.4	21.2	100.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5. 2008년도 규제개혁 과제 및 정부입법 추진 현황

2008년도 규제개혁 과제

구 분	규제개혁 추진과제	법령·고시·지침 등
완료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관련 규제개선	지침 개정
	3 WCDMA에서의 USIM Lock 해제	고시 제정
	4 유선설비설치 승인제도 개선	고시 개정
	5 M&A 인가를 받을 경우 주파수 양수·임대 승인 면제	지침 제정
	6 외국방송 재전송 승인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규칙
	7 유선방송분야 과도한 사전적 기술규제 개선	고시 개정
	8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제도 개선	고시 개정
	9 대기업에 대한 미디어 소유규제 제한 완화 (대기업 기준 자산규모 상향 조정)	방송법 시행령
	10 SO간 및 PP와 SO간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 완화	방송법 시행령
	11 무선국 개설을 위한 사전허가 완화	전파법 시행령
	12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법률 개정중	13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14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15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승인 완화	전기통신사업법
	16 임원결격사유 규제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17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송법
	18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전파법
	19 대기업에 대한 미디어 소유규제 제한 완화	방송법
	20 SO 및 PP사업자에 대한 겸영제한 완화	방송법
	21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방송법
	22 간접광고(PPL) 규제 완화	방송법

□ 2008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법안명	국회 제출일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08. 12. 19 (미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 ○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방송통신 진흥 및 인력양성 등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 ○ 방송통신 재난관리
전파법	'09. 1. 20 (미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8. 11. 28 (미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관련 사항의 통합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권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09. 2. 24 (미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도 개선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재판매) 제도 도입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
방송법	'09. 1. 23 (미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 방송광고 관련 심의규정 제정 · 공표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관리위원회 폐지 ○ 방송광고 관련 자료의 기록 · 보존 의무화 ○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08. 11. 28 (문방위 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주소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폐지 ○ 도메인이름 등록 설명제 도입 및 등록 제한

6. 2008년도 회계 결산

□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세 입	계	676,415	700,124	590,872	84.4
	일반회계	436,989	436,989	349,021	79.9
	방발기금	239,426	263,135	241,851	91.9
세 출	계	476,458	497,328	468,575	88.1
	일반회계	237,032	257,902	226,724	87.9
	방발기금	239,426	239,426	241,851	88.3

- 주: 1. 세입 수납율이 낮은 이유는 조직개편 시('08. 2. 29) 예산 미이체, 폐업 및 재력부족에 의한 벌금 수납감소 등임
 2. 예산액은 연초 조직개편 시('08. 2. 29) 소관업무에 따라 이체 받은 금액이고, 예산현액은 정보통신 부문 조직개편('08. 7. 3)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20,870백만원을 이체 받아 증액됨

□ 방송발전기금

(1) 재정상태(대차대조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A)	2007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395,269	359,748	35,521	9.9
부 채	97	27	70	259.3
자 본	395,172	359,721	35,451	9.9

(2) 손익현황(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分	2008년(A)	2007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수 익	165,737	179,460	Δ13,723	Δ7.6
비 용	138,195	150,680	Δ12,485	Δ8.3
당기순익	27,542	28,780	Δ1,238	Δ4.3

□ 프로그램별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 출 액
합 계	497,327,639,080	468,574,849,860
060장(분야) 문화 및 관광	252,333,977,540	254,758,941,040
061관(부문) 문화예술	252,333,977,540	254,758,941,040
1000항 방송콘텐츠활성화	79,209,000,000	77,356,913,670
1100항 방송콘텐츠활성화(기금, 응자)	2,000,000,000	478,000,000
1200항 시청자복지증진	31,471,953,000	24,710,142,980
1300항 방송기반강화	22,105,273,000	20,420,135,490
1400항 방송기반구축(기금, 응자)	14,000,000,000	14,000,000,000
1500항 방송교류협력활성화	9,104,973,000	5,449,772,050
1600항 기관단체운영지원	807,000,000	797,619,630
7000항 방송정책행정지원	32,086,978,540	17,213,073,720
9700항 여유자금운용	61,548,800,000	94,333,283,500
130장(분야) 통신	244,993,661,540	213,815,908,820
131관(부문) 정보통신	244,993,661,540	213,815,908,820
1100항 첨단인프라구축	14,136,000,000	14,136,000,000
1200항 U-Korea 기반조성	3,345,000,000	3,284,557,850
1400항 정보화역기능방지	28,631,460,000	28,603,160,000
2100항 통신서비스고도화	20,804,993,800	19,989,371,430
2200항 전파방송산업경쟁력강화	5,694,738,200	5,529,406,310
2300항 전파관리고도화	30,140,568,590	29,267,676,530
2400항 전파연구기반확충	11,485,742,960	10,066,361,330
3200항 IT산업기반조성	138,313,000	120,628,500
4100항 IT산업해외진출지원	4,216,670,000	4,052,000,000
4200항 글로벌IT협력강화	11,031,400,000	10,967,210,200
7100항 정보통신행정지원	103,197,774,990	87,799,536,670
8000항 회계간거래	12,171,000,000	0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1차	3.26(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제2차	4.2(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3차	4.16(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
		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차	4.21(월)	의결	방송발전기금 고시율에 관한 건-(주)와이티엔라디오
			전파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5차	4.29(화)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결원에 관한 사항
제6차	5.2(금)	의결	SKT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건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도입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건
제7차	5.7(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및 고시 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에 관한 사항
제8차	5.9(금)	의결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건
제9차	5.16(금)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건-(주)참티브이 등 2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위성휴대통신 주파수 할당공고(안)에 관한 건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제10차	5.22(목)	의결	WCDMA 단말기 잠금설정(USIM Lock)해제를 위한 관련 고시 제정(안) 처리에 관한 건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에 관한 건
제11차	5.28(수)	의결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법제처 심사요청안에 관한 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에 관한 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제정에 관한 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12차	5.30(수)	의결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 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건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건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제13차	6.4(수)	의결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온미디어 등 4개사
제14차	6.20(월)	의결	2008년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에 관한 건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15차	6.24(화)	의결	하나로텔레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하나로텔레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회 구성방안에 관한 건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건
		보고	2008년도 디지털방송전환 융자사업 계획(안)에 관한 건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제16차	6.27(금)	의결	2008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
			한국케이블TV 전북방송의 사업개시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건
			2009년도 예산(기금포함) 요구(안)에 관한 건
			2007년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온미디어 등 4개사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에 관한 건
			방송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 절차에 관한 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고시)개정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16차	6.27(금)	의결	티유미디어(주)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
제17차	7.3(목)	의결	초고속 인터넷 및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에 관한 건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FM) 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주)계룡건설의 (주)대전문화방송 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
			2008년 조사연구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08년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보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관한 사항
제18차	7.8(화)	의결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800MHz 주파수 의무 공동이용(로밍)에 관한 건
			2008년 조사연구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08년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제19차	7.15(화)	의결	2007년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건 – 온미디어 등 4개사
			LG데이콤 인터넷전화 및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LG데이콤 전국대표번호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SKT, KT 간 차신금지(080)서비스 관련 망 이용대가 과소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LGT와 KT 간 차신금지(080)서비스 관련 망 이용대가 과소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SKT 티링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한국인포데이터(주)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통신심의 관련 제재조치 처분절차에 관한 건
제20차	7.18(금)	의결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20차	7.18(금)	의결	SKT의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	
			규제개혁 심사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에 관한 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허가·회계·설비·고시 제정에 관한 건	
			방송통신기기 형식감정·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에 관한 건	
			서울시 영어 FM 방송국 개설 허가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방송통신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민원 통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제21차	7.23(수)	의결	규제개혁 심사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에 관한 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허가·회계·설비·고시 제정에 관한 건	
			방송통신기기 형식감정·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에 관한 건	
			서울시 영어 FM 방송국 개설 허가에 관한 건	
			국민관심행사 고시에 관한 건	
			방송심의 관련 재심절차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제22차	7.25(금)		방송통신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의결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에 관한 건		
		SKT의 T-Ring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재)불교방송 등 5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재)오리온시네마워크 등 2개사		
		2008년도 방송벌전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23차	7.29(화)	의결	SKT의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인가 및 방송사업자 최다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건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개편 후속 고시 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주)GS강남방송 등 5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건-(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제24차	8.7(목)	의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허가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위성DMB비주얼라디오 서비스 도입을 위한 무선설비규칙(고시)개정에 관한 건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SKT의 T-Ring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재)불교방송 등 2개사
		보고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제25차	8.14(목)	의결	공동체라디오방송 시험사업 연장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쿠키미디어(주) 등 3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주)오리온시네마워크 등 2개사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관련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보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제26차	8.20(수)	의결	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쿠키미디어(주) 등 2개사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에 관한 건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제27차	8.25(월)	의결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위성방송국 개설허가에 관한 건 KBS 방송송출 사고 재발방지 대책 승인에 관한 건 KT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KT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27차	8.25(월)	의결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LG파워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28차	9.5(금)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건
		보고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사항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제29차	9.8(월)	의결	인터넷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제30차	9.12(금)	의결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웰빙다이어트티브이(주) 등 6개사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주)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조건 부여에 관한 건—초고속인터넷 9개 사업자
제31차	9.25(목)	의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주)베리아이비의 (주)온 세텔레콤 주식취득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심 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관한 건 2009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KT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브로드밴드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에 관한 건 LG데이콤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긴급안전 상정절차에 관한 사항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의결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주)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LG데이콤-세종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 제공 협정체결에 대한 제정 건
			(주)경남일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32차	10.1(수)	의결	(주)쌍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소유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건
			(주)강원민방의 방송법 제8조 3항 위반행위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주)강원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주)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사
		보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제33차	10.10(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설치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승인, 등록에 관한 건-(주)농수산홈쇼핑 등 8개사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CNN International 등 22개 외국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화동유선방송사 등 2개사
제34차	10.24(금)	의결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변경에 관한 건-동부유선방송사 등 5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건
			무선국허가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전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한 건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 승인, 등록에 관한 건-(주)농수산홈쇼핑 등 6개사
			광주권 신규 영어 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공의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에 관한 건
제35차	10.29(수)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에 관한 건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BBC 월드서비스
			2008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8개 MSO 및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개인정보유용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티브로드한빛방송 등 8개사 13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이중처벌 조항 삭제, 증빙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 관련
		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변경허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마련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기준 신설 관련
			주파수회수, 재배치 계획(안)에 관한 사항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36차	11.5(금)	의결	SKT의 (舊)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 관련 농어촌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승인에 관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관한 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침해사고 정보제공 의무자 관련 고시 제정에 관한 건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및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주)티브로드전주방송의 (주)티브로드수원방송 및 (주)티브로드중부방송 합병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인가 및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승인에 관한 건-(주)큐릭스의(주)큐릭스서대문방송 주식취득
			중요한 전기통신설비(고시) 개정에 관한 건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정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주)티브로드중부 방송 등 5개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한국방송공사 등 6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신안유선방송사 등 8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등 3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주)웨딩플러스 등 3개사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CNN Headline News 등 8개 외국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건
제37차	11.14(금)	의결	방송분쟁 관련 조정안 제시에 관한 건
			8개 MSO 및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건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건
			200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하나방송 등 총 33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신규 영어 FM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에 관한 건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CJ미디어 등 11건
		보고	전파법 개정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관한 사항
제38차	11.20(목)	의결	제재조치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 처리에 관한 건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39차	11.24(월)	의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관한 건
		보고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사항—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현결정에 따른 규정 정비 등
제40차	11.26(수)	의결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아이티브이경인방송 등 3개사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제41차	12.3(수)	의결	BabyFirst 재송신 승인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TV홈쇼핑 중소기업 지원 관련 권고사항 이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42차	12.9(화)	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에 관한 건
			부산권 신규 영어 FM 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07년 연간, '08년 1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 사업자 과태료 및 시정명령처분에 관한 건—(주)케이시엔티브이 등 8개사 10건
			KT SMS 관련 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KT, SK브로드밴드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제43차	12.10(수)	의결	LG데이콤—세종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내관)이용대가 알선에 관한 사항
제44차	12.11(목)	의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수정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재판매 도입, 약관인가제 개선, 허가제도 개선 등
			이동전화 단말기의 표준 플랫폼 규격준수에 관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
			2008년~2009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관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
			전파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주파수경매제 도입근거 마련 등
			전파정책심의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10Ghz 대 물체감지 센서용 주파수 용도지정 등에 관한 건
			한-EU FTA 협상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에스비에스드라마플러스(주) 등 2개사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44차	12.11(목)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 윤용채널 및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대구케이블방송(주)등 17개사
			변경허가 절차위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처분에 관한 건 - 강원방송
제45차	12.17(수)	의결	KT 주요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건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고시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고시)개정에 관한 건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건
			(주)청주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분납요청 승인에 관한 건
			KT SMS 관련 SKT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
		보고	2009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시상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제46차	12.22(월)	의결	디지털TV 채널배치 계획(안)에 관한 건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안)에 관한 건
			2007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결과에 따른 주파수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에 관한 건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 법인 합병에 관한 건 -(주)씨엔앰, (주)에이치씨엔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 한국에이치디방송(주) 등 4개사
			통신사업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주)온미디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보고
제47차	12.24(수)	의결	WiBro 음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번호부여 방안에 관한 건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안)에 관한 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고시에 관한 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건
제48차	12.30(화)	의결	3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정에 관한 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	방송통신 기반 고도화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우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공화국,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네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장관과 대표들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008년 6월 17일과 18일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혁신과 투자 그리고 경쟁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규제 환경을 통하여 인터넷 경제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천명한다. 우리는 민간부문, 시민단체, 인터넷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인터넷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나아가 필요 하다면 국제공조를 통하여 인터넷 경제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도록 하여 인터넷 경제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인터넷 경제가 더욱 확대되면 민주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표현의 자유, 개인의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경제의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우리는 ‘전자 상거래에 관한 1998년 OECD 장관 회의’가 초기 인터넷 경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음을 인식하며, 2003년과 2005년에 개최된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의 결과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경제, 사회 및 문화 전 영역의 활동을 망라하는 인터넷 경제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전을 공유한다.

- 고용, 생산성, 교육, 의료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및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
- 기업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보다 긴밀한 글로벌 협력을 도모한다.

- 시민 참여에 있어서 의견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투명성, 책임의식, 프라이버시 및 신뢰를 제고하는 새로운 형태를 가능케 한다.
-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와 그 사용자들에 적용되는 보안문화 의식을 보강한다.
-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 국제적 과학협력, 창의성 및 혁신을 위해 주요 플랫폼을 개발한다.
-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끊김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활동,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창출한다.
- 수십억 인구, 기계 및 개체를 연결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는 글로벌 정보사회를 증진한다.

우리는 법, 정책, 자율 규제 및 소비자 권리 강화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다음 과제를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 인터넷 접속 및 활용을 전세계로 확산시킨다.
- 인터넷 기반의 혁신, 경쟁, 그리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킨다.
- 핵심 정보인프라를 보호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에 대응한다.
- 온라인환경에서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한다.
-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한다.
- 개개인 특히 소외계층과 기타 취약 집단을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환경을 보장한다.
- 국제적 사회·윤리 규범을 중시하고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하고 책임있는 인터넷의 사용을 장려한다.
- 인프라 투자, 초고속 접속, 그리고 혁신적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장려하는 융합에 대하여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는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 a)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기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한다.

-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 인터넷의 개방성, 분권화, 역동성이라는 속성과 이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능케 하고 혁신, 호환성, 참여 및 접근의 용이성에 기여하는 기술 표준의 개발을 지지한다.
 - 대용량 정보 및 통신 인프라의 개발과 국내 및 국경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투자와 경쟁을 장려한다.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각국의 실질적인 보급범위와 이용의 극대화를 달성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공공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인터넷 접속과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장려한다.
 - 지속적인 IPv4 주소자원의 고갈을 감안하여 특히 민간부문의 IPv4 주소대량이용 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새로운 단계의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를 시의적절하게 채택함으로써 이의 도입을 장려한다.
 -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단말기, 그리고 콘텐츠에의 연결, 접근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과 비용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b)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 활용 및 적용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증진 한다.
-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연구, 혁신, 기업가 정신 및 기업혁신을 장려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 과학 관련 데이터 및 문화 유산에 대한 작업 등의 공공부문 정보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장려한다.
 - 대학, 정부, 공공 연구기관, 사용자와 기업이 혁신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공조하고, 실험적인 인터넷 설비를 공유하여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창작물을 생성,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혜택이 제작자와 사용자 및 경제 전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접근방

식으로 디지털 무단복제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배포 및 활용에 있어서 제작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인정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 인터넷과 연관된 정보통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및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배양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을 강화한다.

c)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신뢰성 및 보안을 강화한다.

- 국내외 핵심 정보인프라를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우리 경제 및 사회의 중대되는 수요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 시스템 및 기기의 복원력과 보안성을 강화한다.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예방, 보호, 정보 공유, 대응, 영업 지속성 및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단계로서 국내 및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활동을 줄인다.
- 디지털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상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상거래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 적절하게 배상하는 등 공정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며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어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및 인터넷 기술 전문가 집단이 협력을 증진한다.
-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장려한다.

d)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폭넓은 접근 기회가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장애인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인식한다.

- 인터넷 경제의 성공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주민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 능력, 교육, 기술 수준이 상이한 사람들을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욱 폭넓게 포용하고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고유의 콘텐츠 제작과 다국어 번역을 촉진하고 모든 공동체가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 인터넷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도입을 촉진한다.
- 사이버 보안 증진, 스팸 근절,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정부와 법 집행 당국의 국가간 협력을 증진한다.
-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변화 대처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우리는 OECD 정책권고문인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책 형성’을 환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인터넷 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하는 미래의 도전과제 및 기회와 본 선언문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본 선언문에서 도달한 결정을 이행하고 또한 적절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OECD가 본 선언문에 명시된 목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 인터넷 경제의 미래 발전상 즉 i) 혁신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공헌, ii) 가상 세계, 센서 기반 네트워크 및 사회적 네트워킹 플랫폼과 같은 최신 인터넷 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규제 원칙, 지침, 기타 방안,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 인터넷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위협 근절, 국가간 교류 증진, 정보 접근성 확대와 같은 영역에서 인터넷 경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재자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의 역할을 검토한다.
- 인터넷의 사용 행태 변화 및 경제 성과와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고, 시민과 기업, 그리고 관련 기관이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접속, 사용 행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을 개선 한다.
- 기술, 시장, 이용자의 사용 행태가 변화하고 디지털 신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OECD가 소비자 보호 및 권리 강화, 개인 프라이버시와 보안 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방안을 평가한다.
- 융합된 통신 네트워크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지침이 되는 OECD의 방안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전자 정부 및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된 도전과제와 모범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 분야 간 연구를 계속한다.
- 보다 효율적인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방안과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 본 선언문과 OECD 정책권고문인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책 형성’을 G8,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모든 유관 국제단체 및 국제기구에 배부한다.
-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과 같은 인터넷 기술 전문가 집단, 민간부문, 시민단체들과 협력적인 관계와 상호 공조를 강화한다.
- 본 선언문 채택 후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 시 본 선언문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적 단계에서 이루어진 발전사항을 검토한다.

9.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행사

- ▶ 위원장, 상임위원 취임식(3. 26)
-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식(3. 26)
-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 역대 정통부장관 간담회(4. 7)
- ▶ MIPTV/Milia 2008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모전(4. 10)
-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6. 17~18)
- ▶ 역대 방송위원장 간담회(7. 16)
-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표단 간담회(7. 16)
- ▶ 한국지역방송협회 대표단 간담회(7. 17)
- ▶ 통신사업자 CEO 간담회(8. 21)
- ▶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8. 29)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4차 이동통신표준화회의(10. 8)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 9)
- ▶ 우즈베키스탄 방문(10. 17)
- ▶ 제4차 방송통신장관회의/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2008(10. 30)
- ▶ 아랍에미리트 국가미디어위원회 방문(11. 2)
- ▶ 월드DMB포럼 의장 면담(11. 7)
- ▶ Digiworld Summit 2008(11. 19)
- ▶ 제3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11. 21)
- ▶ 콜롬비아 하원의원 면담(11. 25)
- ▶ 전파연구소의 전자파내성 시험시설
- ▶ 전파연구소의 태양전파 수신안테나
- ▶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 운용실 전경
- ▶ 중앙전파관리소의 전파환경 현지측정 활동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취임식을 개최하고 있다(3. 26).



▶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상임위원, 이경자 상임위원, 이병기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이 취임식 직후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3. 26).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 최시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역대 정통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4. 7).

* 앞줄 좌로부터 송언종 장관, 최영철 장관, 최광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 이대순 장관, 오 명 장관, 윤동윤 장관,
뒷줄 좌로부터 형인근 상임위원, 노준형 장관, 진대제 장관, 안병엽 장관, 양승택 장관, 이석체 장관,
이상철 장관, 이병기 상임위원



▶ 이경자 상임위원이 프랑스에서 개최된 MIPTV/Milia 2008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모전(Content 360)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4. 10).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막식 후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위원장, 양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주요 참가국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6. 17).



▶ OECD 장관회의 참가국 장관 및 수석대표가 모인 정부수석대표회의에서는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되었던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사항을 최종 조율하고 이를 구현하는 서울선언문을 최종 승인하였다(6. 18).



▶ 최시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역대 방송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7. 16).

* 앞줄 좌로부터 김정기 위원장, 최시중 위원장, 조창현 위원장, 노성대 위원장
뒷줄 좌로부터 형태근 상임위원, 강대인 위원장, 이경자 상임위원, 송도균 부위원장



▶ 최시중 위원장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7. 16).



▶ 한국지역방송협회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지역방송 현안과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7. 17).



▶ 최시중 위원장이 통신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8. 21).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 + KOREA 통신장관회의에서 형태근 상임위원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8. 29).



▶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4차 이동통신표준화회의(WP5D)에서 이병기 상임 위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10. 8).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의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10. 9).



▶ 최시중 위원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압둘라 아리포프(Abdulla N. Aripov) 정보통신부 총리와 함께 WiBro를 통해 국내 관계자와 화상통화를 시연하고 있다(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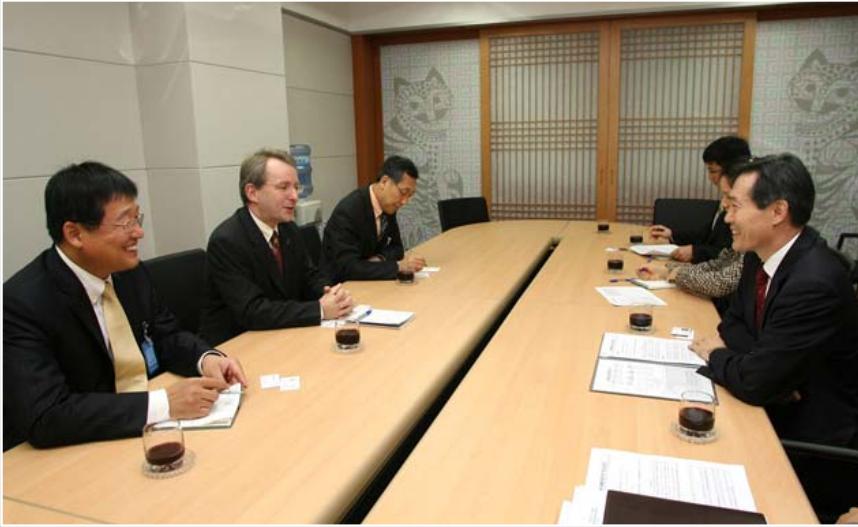
▶ 제4차 방송통신장관회의(10. 30)에 참가한 9개국 장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터키, 한국, 파라과이, 과테말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2008 개회식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10. 30).



▶ 이경자 상임위원이 이브라힘 알 아베드(Ibrahim Al Abed) UAE 국가미디어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 후 악수를 하고 있다(11. 2).



▶ 이병기 상임위원이 쿤틴 하워드(Quentin Howard) 월드DMB포럼 의장과 지상파DMB 세계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1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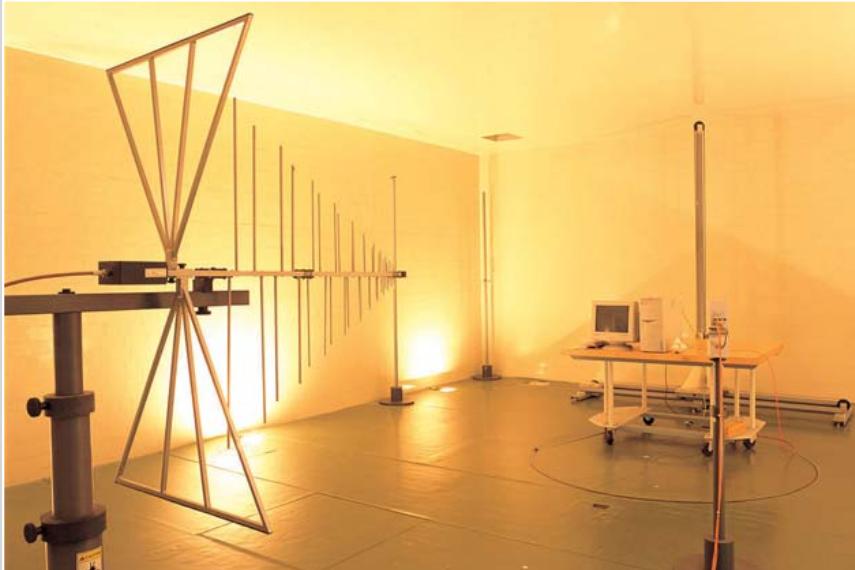
▶ 송도균 부위원장이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개최된 DigiWorld Summit 2008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11. 19).



▶ 제3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수상자와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1. 21).



▶ 형태근 상임위원이 콜롬비아의 로드리게스 핀존(Rodriguez Ciro Antonio) 하원의원 일행을 접견하며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 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11. 25).



▶ 전파연구소의 전자파내성 시험시설



▶ 전파연구소의 태양전파 수신안테나



▶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 운용실 전경



▶ 중앙전파관리소의 전파환경 현지측정 활동

방송통신위원회 2008 연차보고서

발 행 일 2009년 3월 23일

발 행 인 최 시 종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세종로100번지)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처 인성문화

비매품

